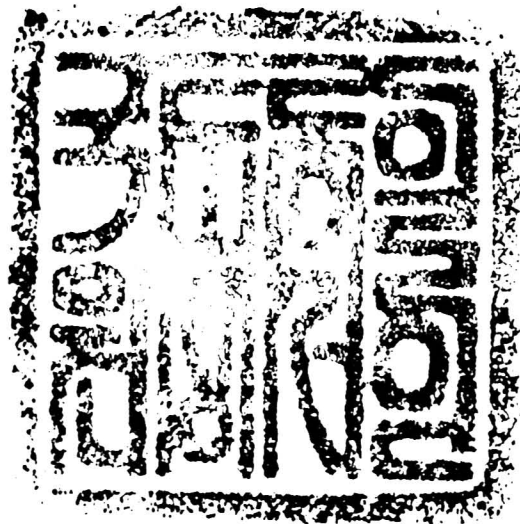


국통조 89-5-44

北韓의人權

-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同 發刊資料는 美國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와 『Asia Watch』共同으로 作成한 1988년판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題名의 報告書를 北韓 人權實態 研究의 參考資料로 活用토록하기 위해 原文 그대로 翻譯한 것임.

目 次

概要 및 建議事項	1
머 리 말	11
第 1 章 序 論	13
第 2 章 歷史的 背景	29
第 3 章 國際法的 義務	52
第 4 章 自由와 平等	53
第 5 章 生存權	82
第 6 章 拷問과 非人道的 處遇	95
第 7 章 刑事訴訟 및 裁判節次의 公正性	99
第 8 章 拘禁 및 投獄	115
第 9 章 私生活의 秘密	136
第 10 章 移 動	141
第 11 章 家 族	147
第 12 章 財產權	154
第 13 章 宗 教	158
第 14 章 表現의 自由	174
第 15 章 集會와 結社의 自由	186
第 16 章 參政權과 選舉權	189
第 17 章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基本權	200
第 18 章 教 育	232
第 19 章 文 化	239
第 20 章 國際秩序에 대한 權利	244
第 21 章 權利의 制限	247

概要 및 建議事項

1. 報告書 概要

북한은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과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그리고 「戰爭犠生者를 위한 제네바 協定」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전세계와 그들의 주민들에게 基本人權의 尊重을 보장하였다.

북한의 人權尊重에 대한 공약의 일환으로서 북한 정부는 國際調查活動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권 단체나 관측자들에게 문호를 폐쇄 함으로써 조사할 외면하여 왔다. 이와 같은 制限된 접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북한의 人權活動에 대한 잠정적인 結論과 改善을 건의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왔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그들 住民의 基本人權과 自由를 박탈하기위한 包括的인 制度를 설정하여 왔다. 그들은 국경과 주민들의 주변에 공포의 벽을 구축함으로써 이 제도를 유지하였고 주민들이 그들의 權利를 認識하거나 國家的으로 또한 國際的으로 이러한 權利를 주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게 만들었다.

북한 방문을 허용받은 외국인은 거의 없었고 외국 여행을 허

용받은 북한 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북한 방문을 허용받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당국에서 지정한 장소를 엄격한 監視속에서 訪問할 수 있었고 여타 장소의 방문은 거절 당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통상 외국 방문객이나 평양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관들과 社會的, 政治的 問題를 討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마저 이러한 문제에 관한 토의를 꺼리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들의 생활, 의견, 감정 및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밀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個性이나 自發性 또는 社交는 거의 없는것 같으며 개인적이고 심미적인 즐거움은 철저히 統制되어 있다.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라디오는 官營 방송만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정부가 모든 TV와 라디오 방송 및 잡지와 신문을 통제하고 있다.

정치적 감시는 직장이나 이웃간 또는 20세대로 형성되어 있는 최소단위의 集團이나 家族에까지 손을 뻗고 있으며 정부의 통제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政治的·經濟的·社會的·宗敎的 단체는 존재할 수 없다.

북한 정부는 1948년 9월 8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헌법이 공포된이래 김일성의 1인 통치하에 놓여 있다.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북한의 改正憲法에 의해 金日成은 1972年 12월 28일 초대 人民共和國 主席으로

취임 하였고 그는 그후 勞動黨員이 97%를 점유하고 있는 북한 最高人民會議에 의해 계속 主席자리에 피선되어 왔다.

북한 정부에 의하면 유권자 100%가 投票에 參加 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모든 유권자는 單一候補에 투표하고 있다. 最高人民會議은 매년 1회내지 2회 정도 개최되며 黨中央人民委員會가 제의한 안건을 否決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執行權 외에도 주석은 法令을 포고하고 法廷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判事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金日成과 후계자인 그의 아들 金正日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들의 政策에 순응하도록 강요 당하고 있으며, 북한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金日成과 그의 가족들을 숭배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북한에서 金日成 숭배는 원칙이며 宗教化 되어 있다. 사회건설, 예술작품, 건축설계 및 공공시설 등은 金日成 父子의 업적이며 그들의 지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선전된다.

북한의 전 주민은 金日成 父子에 대한 忠誠度에 따라 분류된다. 주민들의 사회분류 계급은 주거, 양곡배급, 취업 및 의료 혜택 심지어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등 그들의 生存에 관계되는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사람은 平壤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선발된 사람 중에서도 충성도에 따라 차량 및

주요 가구의 지원과 專用 休養施設 사용 등 여러가지 특혜를 받고 있는 반면에 忠誠度가 약하거나 不誠實 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平壤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國內 旅行 역시 엄격한 감시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밖의 사람들은 부족한 식량, 보건시설, 주택 및 의류 등의 악조건에서 훨씬 낮은 수준의 생활을 감수 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오랜시간 일 하여야 한다. 노동자와 학생들은 自願해서 대형 국가건설공사나 농장노동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정부 사업에 참여 하여야 하며 政治學習에도 참가하여야 한다.

불평을 하거나 國家施策에 순응하지 않은 주민들은 산간 오지로 추방당해 중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政府施策에 反感을 품고 있는 주민들은 체포, 구타, 학대, 투옥, 강제노동 그리고 식량배급의 중지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북한에도 刑法과 法院組織法 및 刑事訴訟法 등이 존재하며 官選辯護士制度가 있으나 國家保衛部는 反政府 괴의자를 다룰때 이러한 기관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다. 많은 사람들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옥되거나 法的 制裁를 받는다. 심지어 1970년대에는 정부가 범법자들을 군중 앞에서 총살을 시킨일도 있었다.

2. 정부에 대한 건의

우리들은 북한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가. 북한 정부는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과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그리고 「世界人權宣言」을 만방에 공포하고 이와 같은 기구가 결정한 의도에 따를 것을 선언 할 것.

나. 이러한 권리를 조장할 수 있도록 獨立性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임기를 지닌 法官制度,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法律專門家,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을 독자적으로 調査할 수 있는 節次, 自由言論, 후보자에 대한 진정한 선택이 가능한 自由選舉制度 등의 제도를 확립할 것. 死刑이 요구되는 수많은 범죄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刑事的 處罰을 遡及 適用할 수 있는 범죄등 刑法과 刑事訴訟法에 허점이 있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더 곤란한 문제는 이러한 法條項이 특히 정치적인 반대파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정부는 刑法과 訴訟法을 실질적으로 적용 시킬 것.

다. 북한 당국은 一方的으로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정부를 반대하는 비폭력 행위자나 정치적 批判者들을 투옥해서는 안되며 이들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장기간 감금, 고문, 학대, 굶식중단 하는 것과 비인간적인 구금 환경

등을 中止, 改善할 것.

라. 忠誠度에 의거한 인민들의 等級 分類制度를 철폐하고 必要性이나 能力 또는 국가 성장 계획등에 입각한 適當한 資源配分原則을 받아들일것.

마. 여행의 자유, 외국방송 청취 허용, 편지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할 것.

바. 국제적인 인권 기구를 인정하고 그뜻에 따를 것. 북한 정부는 「國際勞動機構」에 가입하였으므로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휴직의 권리, 연소자의 노동 制限들을 인정하고, 「集團殺害禁止協約」, 「國際人種差別禁止協定」 「難民保護協定 및 議定書」 「女性差別禁止協定」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과 「拷問禁止協定」등을 인정 할 것.

3. 國際機構에 대한 建議

본 연구는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나 著者들은 국제사회에 의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실제로 근래 金正日을 후계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人權問題가 다시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측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의 人權問題에 관한 情報 獲得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측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韓國語를 구사하는 研究家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즉 중국, 일본, 모스크바, 북유럽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韓人들 :

호주, 오스트리아, 홍콩,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그리고 기타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의 實業人들 ;

平壤을 방문한 여행자와 언론인들 ;

북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하였던 國際機構 要員들 ;

북한 사람과 일을 같이 했거나 공부 하였던 중국 사람들 ;

平壤에 거주한 바 있는 외교관들 ;

북한과 접촉을 갖고 있는 남한 사람들 ;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

그리고 북한에 대한 情報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체계적인 인터뷰가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북한의 發刊物을 번역할 수 있는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에 능통한 자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많은 일본 文獻資料가 있으나 영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이용가치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본 연구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와 더욱 더 많은 양의 자료 및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情報·資料를 수집하므로서 북한의 生活相을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연구가들이나 인권기구는 본 報告書에 수록된 기록들을 參照하여 이 사실들을 다시 確認·修正 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現狀을 최초로 포괄적으로 수록한 것이나 본 연구 보고서가 最終적인 작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본 연구 보고서가 발간됨에 따라 북한 정부는 다른 나라와 經색된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포함한 각계 인사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정보의 입수가 가능해 질 것 같다.

또한 平壤을 방문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전에 방문하였던 人들이 북한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만 방문할 수 있었다는 事實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그들의 社會實相을 솔직히 公開할 의사가 있다면 訪問을 自由化 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관련 기관과 정부 당국은 입수된 북한에 관한 정보를 相互 交換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관련 기관과 정부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므로서 情報源의 노출을 우려한 나머지 모든 정보를 死藏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관한 可用

한 정보를 制限 또는 왜곡하므로서 宣傳的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및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북한과의 관계 또는 그들의 利害 關係의 악화를 우려하여 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다. 심지어 같은 국가기관인 외무부, 국방부, 정보사업부 등 간에도 좁은 시각에서 기인되는 猜忌와 不信으로 인해 그들 자체에서 입수한 정보를 死藏시키고 있다. 그러나 신중한 정보 교환은 북한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관련기관, 정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인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인권위원회 위원과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위원들은 북한 대표들에게 북한의 人權實態에 관한 철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서는 그러한 질문에 관한 主題들을 提示하고 있다.

북한은 「UN經濟社會理事會」의 결의 728호, 1235호, 1503호에 의해 효력이 인정된 UN人權委員會에서 정한 人權 節次 및 「小數人種의 保護와 差別禁止를 위한 UN小委員會」, 고문에 관한 UN의 특별보고관, 자의적 처벌에 관한 UN특별보고관, 종교적 박해에 대한 UN특별보고관 등, 인권의 총체적 침해상태를 계속적으로 보고하는 정

부간 조사제도에 복종하여야 한다.

「UN經濟社會理事會」의 결의문과 기타 인권문제 관련 여러 위원회의 권한으로 북한을 調査對象國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인권과 관련이 있는 연구가와 국제기구는 중요한 인권문제 조사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특수 조사 대상국은 ‘알바니아’, ‘말라위’ 및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이다.

머 리 말

인권 남용으로 희생된 개개인의 곤궁에 대한 주의 환기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노력 이외에 국제적으로 인권 향상을 시도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방법은 특수 국가의 인권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文書化하여 발간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여러 단체들의 그러한 국가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축적되어 소규모의 도서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도서관에는 과거에 북한에 관한 문헌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물론 북한문헌의 不在는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작성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들의 목적은 보고서 작성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요한 이유는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다.

폐쇄정책 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지난 수년동안-뉴욕 타임즈에 “金日成主席의 영도하에 성취한 위대한 과업”이라는 양면 광고문을 게재한 시기와 남한에서 개최 되었던 올림픽 공동주최를 주장하였던 시기 사이-국제적인 ‘이미지’ 부각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인권문제에 관한 기록이 그나라의 ‘이미지’

부각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는 오늘날 적어도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것 처럼 假裝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人權尊重假裝과 실태에 있어서 커다란 상호 모순을 노출하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 문서화된 국가 보고서는 이러한 모순에 대한 주의를 喚氣시키고 있다. 그러한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정부의 인권존중 가장과 실태의 모순을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를 출간함에 있어서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 인권위원회’와 ‘아시아인권조사기구’는 공히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이므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탐지하기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어렵다. 그러나 우리들은 본 보고서가 북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은 미친다면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진전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북한의 폐쇄사회가 하루 속히 개방되기를, 최소한의 틈이라도 생기기를 희망한다.

1988. 8.

아시아 인권조사기구

Aryeh Neier

第1章 序 論

1. 目 的

우리는 人權問題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회를 진단하려는 목적하에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많은 여러 인권 기관들은 정보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北韓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인권 기관의 신뢰성은 세계 모든 국가에 인권 기준을 대대적으로 적용시키는 능력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北韓과 같은 國家의 인권 상황에 抗議를 제기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 하였었다.

우리들은 본 연구를 낙관적인 측면에서 시작하였고 北韓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많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가 이제 완성되기는 하였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증거를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暫定的인 結論을 내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다음 항에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 하였으나

우리들은 북한 입국을 거부 당하였고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前北韓 居住者와 외국 여행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기대하였던 만큼 광범위하지 못했고 오래된 것이었으며 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린 결론은 건전하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최신 정보에 입각한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本 報告書가 修正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본 연구서가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現在 北韓에 만연되어 있는 심각한 人權 蹂躪 事例를 파헤치는데 力點을 두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비밀은폐정책에 대하여 그들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다.

2. 調査方法

가. 障礙要素

우리들은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봉착하였다. 첫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상황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판단 下에 북한의 인권에 대

해 무관심하다는 것이었다.

저명한 人權問題 指導者의 한사람은 우리에게 북한에서는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주민들은 항상 심한 억압에 놓여 있기 때문에 反體制 人士가 있을 수도 없고 그문제로 투옥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연구에 흥미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이 극도로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은 국제 인권 규약에 대한 존경심을 고무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에 인격 존중 현상이 尠無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권 억압을 공개하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와 유사하게 북한의 人權 狀況이 다른 국가와 비슷하다고 믿고 있는 아시아계 학자들의 뜻하지 않은 반응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人權 狀況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이미 인정한 바 있는 국제 규약에 역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평가하는데 있다.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과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을 수락한 바 있으며 북한 정부는 상기 두 규약과 관련, 국제 인권기관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들은 또한 인권문제 조사 과정에서 많은 방해요

소가 있으리라고 예상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엄청난 報復에 대한 위협 때문에 각자가 사실 보고를 두려워하는 寒圍氣 :

제 14 장에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북한은 형법으로 人權蹂躪 事例를 외부에 전파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이나 정책은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부터 직접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할 만큼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平壤을 訪問하였던 많은 인사와 외교관들은 북한 주민들이 외국인과의 대화를 극도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과 격리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사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단지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국가 선전을 앵무새처럼 답하고 있다.

2) 人權規約에 대한 인식 또는 기본 인권은 존중 되어야 한다는 기대의 결여 :

제 14 장에서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정부가 원하지 않는 국제 인권에 관한 사항을 외부로 부터 認知하거나 주민들이 그러한 정보에 접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 53 조에 의하면 “인민들은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시위에 대한 자유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민들은 모르고 있으며 당국의 특별허가에 의해서만 이러한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

3) 人權蹂躪 事例에 대한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司法權 결여 :

제 12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독립된 司法府나 법률 전문가가 북한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변호사나 판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 인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異論을 제기하는 것을 겁내고 있다.

4) 人權問題를 다루는 국내 기관의 결여 :

북한에는 人權問題 專擔 機構가 없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관한 정보나 人權蹂躪 事例에 대한 발간물도 없는 실정이다. (제 14 장 참조)

5) 人權問題에 관한 지방 보도매체의 보도 불능 :

우리들은 지난 수년동안 북한의 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보도 매체들이 간접적으로 간간히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신

문을 비롯하여 라디오등 모든 보도 매체는 정부 당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平壤 당국은 외국 언론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몇몇 言論人들이 北韓을 여행하는 기회를 얻기는 했으나 삼엄한 감시를 받았었다. (제 14 장 참조)

6) 人權問題에 관한 情報의 낮은 신뢰성 :

북한 정부만이 정보의 提供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신뢰성이 없는 한결같은 자체 칭찬만을 들 수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訪問者들은 거짓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허위의 진술이나 자료 또는 설명만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987年 平壤에서 개최되었던 非同盟國 회의에 참가하였던 중남미 대표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商品이 가득히 진열된 상점에 안내 되었는데,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시간에 종료되어 그 대표들이 다시 그 상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北韓住民들의 出入이 統制되어 있는 그 상점에 진열되었던 많은 상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訪問者는 가전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전형적인 아파트에 안내된 일이 있었는데 그 방문객은 그 많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 키가 큰 스칸디나비아 방문객이 金日成과 같이 기념 촬영을 하였는데 신문에 보도된 사진에는 金日成이 방문객보

다 키가 크게 조작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였다. 많은 방문객들은 北韓 안내자의 설명이 불합리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안내자들은 명백한 증거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시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南韓 역시 체계적 형태로 北韓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자신들이 외부에 제공한 不正確한 統計資料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보고를 마치 독자적 보고자료인 것처럼 다시 인용하는 등으로 不正確한 資料를 유포하는데 열심이다. 결과적으로 南韓이 제공하는 직·간접 자료는 모두 재검토 되어야 한다.

7) 人權問題 調査者들의 언어 미숙 :

다수의 人權機關은 한반도의 人權蹂躪을 조사 할 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사요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南韓은 비교적 외국 여행자나 言論人 및 人權問題 調査要員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장애 문제는 극복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人權問題 調査要員의 부족은 조사 능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8) 외국과의 通信 連繫 (전화, 우편, 상업목적 여행)
의 결여 :

제 10 장과 14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北韓은 대부분의 國際人權機關과 國際的 言論媒體가 있는 서방국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平壤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관은 주로 사회주의국가와 세 3 세계 국가의 대표들이다. 다른 訪問者들은 가끔 당국의 안내에 따라 정부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정된 곳만을 여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근래에 상업목적 여행으로 北韓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北韓 政府와의 사업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北韓에 관한 상황은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다. 또한 北韓과의 교신은 정부 조사기관에 의해 감시받고 있는 것 같다.

9) 難民이나 北韓 脫出者에 대한 신뢰도 :

난민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그들이 北韓을 脫出한 사실을 계속 正當化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정보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1953년 한국동란 종식 이후 南韓으로 귀순한 사람의 수는 약 1,000명 정도 된다. 南韓은 귀순자들을 2, 3주 내지 장기적으로 2년정도 격리 수용하여 그들의 歸順動機 및 間諜與否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歸順者들은 이 수용기간 동안에 사상적으로 교육되는 수가 있으므로 그들로 부터 입수된 증거자

료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싱가포르 및 제 3 국을 통해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사실 조사단의 北韓 派遣 不能 :

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어느 國際人權機關도 북한에 사실 조사단을 보낼 수 없다. 「아시아地域人權監視機構 (ASIA WATCH) 」와 「미네소타 國際人權法律委員會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는 지난 2 년동안 북한 방문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북한은 우리들의 북한 입국허가 신청서와 유엔 상주 북한 외교관을 통한 구두 신청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북한은 학자, 언론인, 교회 지도자 및 한국계 미국인등 많은 사람들 (그들중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미 면접 하였음) 을 자신들이 선택하여 초청하였다. 그러나 상기 방문자들은 철저한 통제를 받았으며 그들이 본 북한을 찬양하는 논편을 쓰도록 권유 당했다. 학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북한 생활에 대한 否定的인 描寫가 그들의 재입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떤 訪問者와 아시아界 學者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편견으로 인해 그들이 작성한 북한에 관한 報告書의 신빙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나. 조사과정

이러한 장애요소로 인해 국제 人權機構가 북한에 관한 실상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다른 여러 인권조사자와는 달리 북한 문제만을 다루는 학자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장애 요소를 극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 1) 본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법률가를 영입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우리들은 전에 南·北韓 問題에 관련이 없었거나 편견도 없고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法律家를 찾아낼 수 있었다.
- 2) 우리들은 북한에 관한 2차 정보를 대량 입수하였고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정보의 대부분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는 韓國語와 日本語로 되어 있었다. 그외 독어, 소련어, 스웨덴어 및 기타 여러 나라 언어로 작성된 자료도 있었다.
- 3) 우리는 外國放送公報機關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과 언론사로 부터 북한 방송 청취 허가를 받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신 정보를 입수하였다.

- 4) 우리들은 100 여명의 학자와 기타 정보를 지녔음직한 潛在的 情報源에 우리가 이러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우리들은 이들로 부터 많은 서면 남신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들과 다른 여러 2次 情報源과의 面接에 成功하였다.
- 5) 우리들은 북한의 人權事業에 관한 북한 발행의 報告書를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 정부는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과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에 의거한 보고서를 「UN人權委員會」와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委員會」에 제출하고 있다.
- 6) 우리들은 중국, 덴마크,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스웨덴, 소련등과 같은 국가를 방문하거나 해당 정보를 그곳으로 부터 입수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약 8,000 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한 바 있다. 이 한국계 일본인들이 북한에 관한 실질적인 情報源이다. 극소수의 學者와 人權機關이 이들과 組織的으로 면접하여 왔고 우리들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일본을 수차에 걸쳐 다녀 왔다. 중국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한국인 마을이 있으며, 우리들은 그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정

보자원이 필요하였다.

7) 우리들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과 북한에 살다가 지금은 그곳을 떠난 외국인들과 면접하였다. 우리들은 또한 일본, 싱가포르 기타 국가를 통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찾아 다녔다. 그들은 남한으로 직접 탈출한 사람들 보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들과의 면접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質問 보다 주로 經驗, 보고 느낀것, 日常生活 그리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焦點을 두었다. 여기에서 입수된 정보는 세밀하게 다른 정보와 비교 검토하였다. 면접을 통해서 우리들은 면접 대상자가 좀 더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通譯官이나 다른 立會人을 배석시키지 아니하였다. 부록 4 에 면접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진술자의 성명은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인적사항은 극비에 부쳤다.
(제 10 장, '나' 항 참조)

8) 우리들은 「世界人權宣言」에서 제시되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분석을 하였다. 「世界人權宣言」은 報告書를 작성하는데 있어 2개의 國際人權規約들 보다 더 간편한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世界人權宣言의 기본적 권리는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국제규약」과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이 두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규정에 실제적인 규정들을 부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 두 규약에 가입해 있다.

9) 이 보고서에 수록된 각 장은 北韓憲法, 기타法律 및 北韓에서 發表된 權利에 관한 공식 성명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여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용문은 독자로 하여금 북한의 공식 발표문이 우리들이 제시한 사실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우리들은 대부분의 주해와 정보 제공자의 신분을 그들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생략하고 國際人權調查團 報告書의 형식을 채택 작성하였다. 또한 우리들은 情報 提供員(學者, 事業家, 外交官등)의 북한 접촉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신분노출을 피하였다. 특히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2차 자료를 인용하였다. 참고문헌에는 공개된 주요 정보의 1차 및 2차 자료를 인용 수록하였다. 단지 약간의 참고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다른 사실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판단한 사실들은 우리가 수집한 情報의

正確性과 一貫性을 면접이나 참고 문헌에 열거된 1차 및 2차 자료에 의해 지지하고 있다.

- 11) 본 보고서는 북한의 최신 인권 유린 기록이라고 할 수 없으나 과거 수년동안 북한에서 일어났던 인권 유린의 유형을 사실대로 나열한 것이다. 본 보고서의 조사는 1988년 1월에 완료하였으나 어떤 정보는 1988년 10월까지 수집된 것도 포함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최근의 人權蹂躪 事例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참고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최근의 사례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한 사례들을 본 보고서에 총망라 하기 전에 우리는 과거의 人權蹂躪 事例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정보를 확인하였다. 그러한 확증 정보는 최신 문서에서 발굴하였고 外交官, 事業家 및 여행자들로 부터 입수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지난 15년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괄목할 만큼 변화하지 않았다고 믿는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한 虐待類型은 과거로 부터 198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수감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정보는 없다. 북한의 역사를 통해 계속 되는 이러한 상

황은 북한 정부가 모든 권한이 지도자에게 집중된 一人支配體制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情報를 入手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였다고 본다. 만약 착오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비밀의 베일속에 가리고 있는 北韓당국의 잘못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결론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질 수 있다.

12) 우리는 본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초고를 발송하여 그들의 회답과 논평을 요구하였다. 부록 1에 북한에 발송한 초고와 서신내용 및 뉴욕 소재 國際聯合의 北韓大使로부터 받은 회신내용을 수록하였다. 회신내용을 보면 본 초고는 “虛僞와 捏造에 가득차 있으며” 北韓에서의 人權蹂躪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북한은 “가장 발전된 국가로서 인류의 주권과 존엄성을 무엇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만약 우리가 본 報告書를 發刊하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고 위협하였다. 그들은 답신을 통해 본 보고서에 수록된 특정 사항에 대한 평가를 송두리채 거부한 것이다. 얼마후 북한대사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북한 답신의 수령 여부와 본 보고서의 발간 여부를

문의하여 왔다. 우리들은 그 보좌관에게 대사의 서신은 수령하였으나 상세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不充分的 答信이라고 하였다. 북한 대사는 두번째 편지(부록 1)를 보내 왔으나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항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고 전체적으로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130 만명 정도이다. 韓民族은 동아시아인이나 중앙아시아인과 구분이 되어 있다. 그들의 뿌리는 서기전 3000 년,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민족특유의 순수성과 固有의 言語 및 文化를 자부하고 있다.

韓國語는 알타이-터키어군 내에 분류되어 있으며 원래는 漢字로 표기하였다. 15 세기에 접어들어 표음문자가 개발되었다. 그동안 言語의 形態가 많이 변화하였으나 현재 南韓에서는 이 두가지 형태를 혼용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漢字가 거의 사라졌으며 표음문자(한글)만이 남아있다. 北韓은 대부분의 옛 言語의 흔적과 傳統을 말살하였다.

3. 歷 史

- 韓國의 歷史는 5개 시대로 구분된다.-

가. 韓民族과 文明의 기원

人類가 한반도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0 년전인 구석기 시대로 推定된다. 그러나 권위 있는 史料에 의하면 韓民族의 출현은 서기전 2,000 - 3,000 년인 신석기시대로 推定된다. 이시대에 여러 부족중에서 최초로 형성된 政治體制가 고조선이다. 기원전 4 세기에 수립된 이 國家는 대동강과 현재 中國의 산둥 반도에 이르는 영토를 지배하였다. 고조선은 본래 農耕

第2章 歷史的 背景

1. 地形 및 氣候

北韓은 한반도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22,370 *km*²이고 크기는 美國의 미시시피주와 비슷하다. 지형은 울퉁불퉁한 편이고 국토의 80%가 산맥과 고지로 형성되어 있다. 산과 황야는 농경물 생산과 人口 膨脹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石炭, 鐵鑛石, 텅스텐, 납, 구리, 亞鉛, 망간, 黑鉛, 石灰石 및 대량의 금과 은 등과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산간지방은 또한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고지에는 목축과 과수재배에 적합한 지대가 많다.

북위 38°와 48°에 이르는 북한땅에는 4계절의 구분이 명확하다. 여름철의 기온은 섭씨 18° - 24°이다. 습도가 높고 연간 강우량의 50%는 102 *mm*에 달한다. 7월에는 태풍이 많고 겨울철은 메마르고 혹한이 계속되며 기온은 섭씨 -5.5°에서 -17.7°에 이른다.

2. 人口 및 言語

北韓의 人口는 한반도 전체의 약 1/3에 달하는 2,000만 명 정도다. 북한에서 가장 큰 도시는 平壤이며 人口는 약

130 만명 정도이다. 韓民族은 동아시아인이나 중앙아시아인과 구분이 되어 있다. 그들의 뿌리는 서기전 3000 년,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민족특유의 순수성과 固有의 言語 및 文化를 자부하고 있다.

韓國語는 알타이-터키어군 내에 분류되어 있으며 원래는 漢字로 표기하였다. 15 세기에 접어들어 표음문자가 개발되었다. 그동안 言語의 形態가 많이 변화하였으나 현재 南韓에서는 이 두가지 형태를 혼용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漢字가 거의 사라졌으며 표음문자(한글)만이 남아있다. 北韓은 대부분의 옛 言語의 흔적과 傳統을 말살하였다.

3. 歷 史

- 韓國의 歷史는 5개 시대로 구분된다.-

가. 韓民族과 文明의 기원

人類가 한반도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0 년전인 구석기 시대로 推定된다. 그러나 권위 있는 史料에 의하면 韓民族의 출현은 서기전 2,000 - 3,000 년인 신석기시대로 推定된다. 이시대에 여러 부족중에서 최초로 형성된 政治體制가 고조선이다. 기원전 4 세기에 수립된 이 國家는 대동강과 현재 中國의 산둥 반도에 이르는 영토를 지배하였다. 고조선은 본래 農耕

社會였으며 후에 다른 遊牧民族의 部族聯盟體인 부여로 대치 되었다.

부여는 私有財産, 노예 및 部族長 統治制度를 채택하였다. 수개의 왕국이 한반도에 출현하게 되는 4세기까지 部族聯盟體制가 유지되었다. 14세기 말엽, 이조가 한반도를 統一하기까지 이들 왕국은 서로가 무력 충돌을 일삼아 왔다. 첫번째 왕국은 고구려였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남부를 지배하였던 고구려 부족들은 國內 부족간의 충돌과 中國과의 戰鬥등으로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군의 야영지와 비슷한 社會組織을 開發하였다.

지배부족들은 군사훈련을 계속하였고 權力機關은 마치 군의 통수 계통과 같았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노예 취급을 받았고 귀족들은 平和時代에 화려한 生活을 영위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 파기가 신라로 하여금 고구려를 과멸로 몰아넣게 하였다.

668년에 신라가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통합하였다. 신라시대때 韓國文明은 점차적으로 儒敎, 數學, 天文學 및 醫學을 수용하였다. 그후 2세기 동안 佛敎가 절정에 달했다. 932년에 북방 부족이었던 고려가 신라를 멸망시켰다. 고려는 中國의 관료 政治 및 봉건제도의 影響을 크게 받아 학자 관료들로 構成된 엘리트로 階級社會制度를 채택하였다. 고려 指導層은 군사원조 및 印刷와도 자기 製作 技術向上 부분에 있어서 中國에 크게 의존

하였다.

韓國人들은 오늘날에도 옛 왕국시대에 대한 자부심과 傳統을 자랑하고 있다. 平壤에서 발견되고 있는 최근 歷史冊은 中國과의 戰爭 또는 社會構造 形態에 따라 각 왕국을 비판 또는 찬양하고 있다.

나. 李朝時代 (朝鮮朝 : 1392 - 1910)

이 왕조는 서울을 수도로 정하고 옛 朝鮮王朝에 이어 국호를 「朝鮮」(고요한 아침)이라고 호칭하였다. 이 왕조는 政府와 軍隊制度를 만들었으며 이 制度들은 國家를 통합할 수 있게 했을뿐 아니라 19세기까지 中國과 日本의 침략을 막을 수 있게했다. 조선조 말엽 수십년동안 조선조의 指導層은 당파 분쟁에 휘말려 그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中國과 日本 및 西方國家로부터의 軍事的 經濟的 壓力은 내전을 야기시켰고 2개의 國際戰爭을 치르게 되었다. 中·日戰爭(1894-1895)과 러·일戰爭(1904-1905)과 같은 兩大國際戰爭을 겪게되었다. 이조 600년의 統治는 韓國의 文明과 民族一體性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만을 간단하게 여기에 기술하고자 한다.

1) 政治組織

이왕조의 統治者들은 中國의 고도로 發達된 중앙집권 관료체제를 채택하고 그들의 必要에 따라 조정하였다. 이왕조 체제는 德望과 教養을 검비하고 儒敎思想을 숭배하는 왕에 의거 統治되었으며 그는 또한 군의 통수권자로서 軍事力을 장악하였다. 관료체제는 일련의 경쟁시험에 합격한 학자나 관리들로 구성되었다. 학자들은 문인과 무인 集團으로 구분되었고 이는 兩班으로 알려져 있다.

양반들은 엘리트로서 政治權力, 부 및 土地를 독점하였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法 위에 군림하였다. 대부분의 양반들은 居住地를 서울에 두기를 원했으며 서울은 그들에 의해 점유되었다. 그들은 또한 지주계급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시에는 은퇴하여 그들의 土地가 있는 시골에 은거할 수 있었다.

2) 社會組織

이왕조의 社會階級制度는 엄격히 유지되었다. 지위나 權力의 상승수단으로 教育的 業績을 중시하는 儒敎的 압력에도 불구하고, 朝鮮은 血統中心의 歸屬的 階級制度를 유지했다. 社會階級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혼인은 禁止되었으며 양반 밑에는 中人, 常民, 賤民 階級이 있었다.

중인들은 주로 技術者, 通譯官, 양반들의 庶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특수한 고정계층으로 組織되었다. 고급 정부관리로 採用될 수 있는 기회인 과거에 應試할 수 없으며 給料은 地方 長官이 정하였다.

상민 階級에는 농민, 상인, 장인과 같은 一般大衆이 포함된다. 農民들은 지주가 아니며 소작인들이다. 이 階級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國家에 대하여 勞動力과 稅金의 提供 및 군복무이외에도 매년 6일간의 國家에 대한 勞動奉仕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사실상 이들은 道路工事, 王陵 및 요새構築工事, 炭鑛등에 동원되었다.

賤民은 最下位 階級에 속한다. 이들 대부분은 政府 또는 個人의 노예이며 15세기에 그들의 수는 總人口 200만의 약 17%가 되는 35만명 정도였다.

社會組織의 기본 단위는 家族으로서 最年長 男子들의 절대적인 權限에 의거 지배되었다. 家族의 모든 構成員은 철저한 社會階級制度和 言行規範에 따라 行動하였다. 예를들어, 法律이 衣服形態(服飾)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불효자식은 家長의 임의적인 罰을 받았다. 같은 姓을 갖고있는 家族들의 수가 擴大되어 하나의 큰 集團을 形成하게 되었다.

그들 자체의 規則을 갖고 있었으며 그 規則은 宗親會, 教育施設, 宗教禮式 및 宗室基金등에 관한 規定

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척계보는 통상 4대조와 8촌을 포함하였다. 분가한 家族의 경우 그들은 宗家에 대한 義務를 갖게 되며 私生活, 個體性 또는 자기 自身만을 위한다는 개념이 희박하였다.

3) 經 濟

儒敎的인 傳統은 검소와 근면을 강조하는 農民經濟 양식을 신봉하였다. 政府는 상업과 교역에 대해서도 儒敎的인 편견을 내세우고 있었다. 商業은 분별없이 利益을 추구하고 토지와 유리된 직업으로 간주되었다. 이왕조 시대에는 個人經濟의 發展을 저지하기 위해 산업종사자에게 과다한 稅金을 부과하거나 보수를 統制하고 모든 교역을 國家가 獨占하였다. 結果的으로 經濟投資는 억제되었고 개인의 經濟的 創造性은 무시되었다. 이왕조는 근본적으로 經濟流通過程에서 物物交換方式을 채택하였고 교환매체는 주로 쌀과 옷감이었다.

4) 法

이왕조는 1485년 中國 明朝가 제정한 律令制度에 기초를 두고 自體法을 制定하였다. 그동안 이 법이 여러번 개정 및 수정되었으나 이 法令은 1910년 까지 適用되었다. 이 법은 法院 組織에 의해 管理되었다. 國家는 法院을 道德과 倫理의 유지 및 政策執行을 위해 사용하였다. 中國에서는 道德的 설득이 法的制度보

다 선호되었다. 그러나 韓國의 法律學者와 統治者들은 法執行 機關을 國家政策推進機構로 사용하였다.

國家는 이렇게 하여 住民들의 社會生活을 엄격한 處罰을 내세워 통제하였다. 예를 들어 祖父母에게 불손한 말을 사용한 자는 60세와 1년간의 중노동형에 처해졌다. 임금과 그의 자문요원들은 社會와 政府는 타락과 부패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신의 개시설에 입각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社會的 混亂을 방지하기 위해 法令은 國民들이 社會體制에 순종하도록하는 制度的 裝置로 보고 있었다.¹⁾

20세기에 접어들면서 日本 「顧問」들이 現代的인

-
- 1) 北韓指導層은 北韓社會에 부패와 타락의 위협이 있고, 이 부패의 원인은 道德觀念의 不足에 기인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3월의 勞動新聞 기사에 의하면 “革命的인 관점에서 道德觀을 改造하기 위한 鬭爭이 熱誠的으로 進行되지 않는다면 퇴폐적인 道德이 되살아나 社會 全般에 蔓延될 것이며 이는 人民들의 思想과 意識 教養에 큰 障礙가 될 것이다” 라고 警告하였다.

이러한 옛날의 資本主義的인 個人主義 利益追求 및 부패가 되살아 난다는 공포감은 1966-76 사이에 있었던 中共의 文化大革命 시기에 도 있었다. 儒敎的인 世界觀은, 歷史는 만약 道德과 법적인 제재가 허술하면 주기적으로 최악의 狀況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이다.

法과 憲法概念을 이 왕조에 浸透시켰다. 1895년 7월 7일 14개항의 憲法을 공포함으로써 政府의 形態를 바꾸었다. 이 憲法은 1889년에 제정된 日本憲法의 影響을 받았다. 이 憲法에 의하면 독재체제가 합법화 되었고 人權과 立法部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日本 改革者들은 法院體制를 認定하였고 서울에 高等法院을 設立하였다. 조약에 의한 貿易港을 위해 특별 법정이 設置되었으며 이 貿易港에서는 교역에 종사하는 外國人과 그들의 고용인 그리고 이들과의 교역에 관여하고 있는 왕족들에게는 國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부터 15년후에 韓國은 日本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은 韓國人을 위한 獨立된 사법체제를 確立하는데 큰 效果가 없었다.

5) 人權의 概念

이 왕조의 법은 義務와 責任은 강조하였고 權利와 自由는 무시하였다. 법의 目的은 社會的 和合과 安定을 증진시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발적이고 특이한 意見이나 正統에 어긋나는 행위는 社會的 混亂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었다. 모든 國民은 엄격한 階級制度에 順應하고 孝誠에 대한 엄격한 慣行에 順從하며 家族, 氏族 및 國家를 支持하는 儀式的인 慣行

에 따라야 한다.

이만우 教授는 韓國人과 아시아인들의 세계관은 合理的이며 個人主義的이고 自由主義的인 세계관에 相反되는 샤마니즘적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教授에 의하면 샤마니즘을 신봉하는 사람은 個人權利를 向上시키지 않았으며 아시아인들의 概念은 義務에 집착하고 있고 이기적이고 야비한 사람만이 그의 權利를 주장한다고 하였다.

南韓의 知識人들은 韓國傳統에 民主的인 要素와 人權概念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儒敎理念은 자의적이고 非倫理的인 統治者를 몰아내는 것에 대해 正當性을 부여했다. 또 儒敎는 住民의 福祉向上에 積極的인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부정의(不正義)에 반항하는 것을 合理化했다. 學者들은 한때 엄격한 儒敎文化에 影響을 받았던 日本, 中國, 臺灣, 香港 및 韓國 등에서 民主的인 人權運動 先驅者들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천도교(19세기 중반에 創設되었음) 信者들은 平等主義를 주장하였고 양반계급에 대항하는 軍중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초반에 韓國의 기독교 전향자들은 平等, 自由 및 正義를 支持하기 시작했다.

다. 日本의 植民統治 (1910-1945)

日本 植民統治者들은 韓國이 農産物을 商業化시키지 않았으며 産業化 政策을 實施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았다. 日本 植民統治 政府는 日本의 고위급 軍장성을 행정 총수로 韓國에 파견, 이 왕조 정권을 總督府로 대치하였다. 이들 統治者의 役割은 經濟的, 法的, 教育的, 社會的 改革을 통해 韓國을 日本의 經濟圈內에 統合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韓國經濟를 商業化 내지는 近代化 시키기 위한 企業主로 생각하고 있었다.

日本은 政策決定, 政策立案 등에 관한 모든 權力을 독점함으로써 그들의 目的達成을 推進하였다. 總督은 그들 자체의 법을 制定하였고 日本 법학자와 행정가들을 동원하여 司法機關을 통제하였다. 日本 植民統治者는 韓國의 鐵道, 道路, 港口 등을 포함한 鐵鋼, 化學工業, 水力發電 등 中工業 분야에 대한 産業化를 위해 可用한 資本의 거의 80%를 投資하였으나 韓國人들로 構成되는 企業의 創設은 거부하였다. 韓國은 日本의 冒險的 資本者들보다 25%나 높은 利潤率을 내야만 하도록 되었다. 結果的으로 韓國의 發展은 外國이 통제하고 經濟支援을 하는 強力한 關稅제도에 依存하게 되었다.

日本은 韓國人 産業社會의 形成을 저지하면서 지주들이 지방 주민을 계속 통제하도록 하였고 한국땅을 그

들 본국 消費者들의 쌀과 農産物의 공급원으로 이용하였다. 1931년 日本의 中國 侵略 지원책으로 農産物 生産을 독려하기위해 지방 지주들에게 무자비한 壓力을 가했다. 1930년대 農民들의 쌀 消費量은 1912-1916년 수준의 반에 불과하였다. 세계 제2차대전 말엽에 쌀생산이 풍부하였던 韓國地域에 영양실조 사태가 만연하였고, 특히 植民地 國家가 設立한 産業 下部構造의 惠澤을 받지 못하였던 시골은 참혹하였다.

總督은 독자적인 商業社會의 출현을 저지하였고 傳統的인 政治體制의 發展을 막았다. 韓國社會는 기본적으로 工業과 農業에 종사하고 있는 親日協力者, 民族主義者, 海外居住者등 3가지 政治的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法, 軍隊, 警察 및 地方行政部の 傳統的인 經濟와 政治指導 體制를 바꾸어 놓으려는 日本의 努力에 동조하고 있었던자를 日本이나 韓國 民族主義者들은 반역자 또는 社會的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자로 보고 있었다.

民族主義者는 改革者, 급진파 및 共產主義者로 구성되어 있었다. 1920년대 이후 日本의 압박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공개적인 반대 행위는 거의 사라졌다. 세재 유형에 속하고 있던 집단은 강제징용 당한자 또는 海外로 逃避한 者였다. 1944년까지 全人口의 20%인 약 420만명이 韓國을 떠났다. 약 250만명은 日本의 炭鑛, 造船所 또는 시골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주

로 이북 出身者인 150 만명이 中國으로 逃避하였고 또한 20 만명이 蘇聯으로 피난함으로써 北韓의 全體的인 人口 減少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植民統治는 一方的인 國家經濟施策을 폈고 기술관료와 企業社會의 形성을 방지하였다.

식민통치는 또한 政治指導 體制에 커다란 틈을 만들었다. 어떤 해설자는 植民統治는 大衆의 合法的인 支持를 받는 傳統的인 指導者의 出現이나 지도체제의 形성을 어렵게 하였고 더구나 강한 統一獨立國家를 建設하는데 있어서 出身, 理念, 抱負가 서로 다른 政治 희망생들의 상호협력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라. 韓國의 分斷과 動亂 (1945 - 1953)

1945년 日本이 聯合軍에 降伏함으로써 韓國은 日本의 統治에서 해방되었다. 해방은 누가 韓國을 統治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야기시켰다. 韓國은 分斷된 상태에서 그 問題가 解決되지 않고 있다.

1945년 美國과 蘇聯은 38線이남지역은 미국이, 이북은 蘇聯이 日本軍의 降伏을 받기로 합의 하였다. 1945년 말엽 美·蘇·英 外務長官은 한반도의 統一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동신탁통치 하에 두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대부분의 韓國人들

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신탁통치는 실현되지 못했다.

1947년 美國은 韓國問題를 유엔에 上程하였다. 1948년 유엔은 한반도 전역에 總選舉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와같이 유엔의 南北韓 統一이 무위로 끝나자 南韓에 大韓民國, 北韓에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라는 政治的 및 軍事的으로 對立되는 2개 적대국가가 탄생하였다.

1948년 9월 8일, 北韓은 그들의 憲法을 공포하였다. 북한 憲法 103 조에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수도를 서울에 둔다”라고 되어 있었다.

1972년 改正憲法 條項에는 한반도 分斷의 現實이 반영되어 平壤을 수도로 지정하였다. 최초로 北韓은 한반도 전체 國民들을 代表하는 合法的인 權利는 美國의 지원을 받고 있는 韓國이 아니고 北韓이라고 주장하였다. 北韓은 전에 南韓에서만 실시되었던 地域的 選舉대신 南北韓 總選을 주장하였다. 어느 역사학자들은 대부분의 韓國사람들이 南北韓 總選을 支持하였으나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한다. 韓國戰爭前, 1945년부터 1950년 6월 25일 기간동안 약 10만명에 달하는 공산당원과 民族主義者들이 南韓에서 美國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韓國政府와 反政府 勢力간의 충돌로 목숨을 잃었다.

1950년 - 53년의 韓國動亂 期間동안 南北韓은 分斷國家의 統一을 모색하였다. 北韓은 한반도에서 美國의 存

在를 除去하려고 하였다. 國際聯合軍의 韓國進駐와 蘇聯의 經濟 및 軍事支援을 받은 中共軍의 韓國動亂 개입이 國際戰爭으로 비화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38선상에 設置된 임시막사가 있는 板門店에서 休戰協定이 조인되었다. 동란으로 인해 南韓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며 수많은 시설물이(특히 北韓은 더 심하였다) 파괴되었다. 平壤과 서울은 조각이 나다시피 하였고 특히 평양을 비롯한 北韓은 美軍의 심한 暴擊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 北韓에는 약 1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死亡하였고 50만명에 달하는 軍人들이 戰死하였으며 약 300만명의 難民이 發生하였다. 南韓에서는 약 15만명이 死亡하였고 25만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만명이 실종하였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現在 大韓民國은 110 내지 140만에 달하는 豫備軍과 60만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총 60만 내지 83만 8천에 달하는 정규군과 23만 내지 50만에 달하는 地上 豫備軍을 보유하고 있다.

美國은 여전히 4만명 정도의 지상군을 南韓에 주둔시키고 있다. 1950년대 후반 中共部隊와 고문단이 北韓을 떠난후에도 北韓은 蘇聯과 中共의 經濟的, 軍事的 지원에 계속 크게 依存해오고 있다.

平和會談과 기타 접촉이 板門店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休戰線에서 적대 행위와 여러挑發行爲가 發生하고 있다. 大韓民國은 北韓의 계속적인 테러, 폭파, 기습 및 休戰線 일대의 지하터널 발굴행위등에 대하여 비난을 가하여 왔다. 1986년 8월에 북한의 祖國平和統一委員會는 1986년 상반기 7개월 동안 大韓民國이 20,400건에 달하는 여러가지 休戰協定 위반을 범했다고 비난하였다. 1953년 이후의 총 위반 건수는 440,000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마.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樹立 (1948 — 現在)

1) 金日成의 執權

金日成의 性格과 權力 및 權威는 北韓 全體를 휩쓸었고 金日成의 役割을 미화시키고 있는 수정주의 見解에 一致하도록 韓國現代史를 수정하였다. 金日成의 主體사상이 그들 선전의 核心을 이루었다. 主體사상에 의하면 獨創的이며 위대한 領導者 金日成이 日本·美國 및 전세계 帝國主義者들과의 鬪爭을 일으키고 계속 指導해온 것으로 되어있다. 위대한 영웅이 탄생한 것이다. 그는 1912년 4월 15일에 出生하였고 中學校때 「資本論」을 읽었으며 1920년대에 최초로 독자적으로 組織된 朝鮮共產黨을 창건하였으며 日本 統治에 대항하기 위해 일단의 遊擊隊를 指揮하여 韓國을 성공

적으로 解放시켰다. 이 업적은 中國이나 蘇聯의 지원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때로는 여전히 갈등이 표면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의 裏面을 살펴보면 그의 등장과 權力掌握過程을 알수있다. 어떤 歷史資料에 의하면 젊은시대의 金日成을 政治적으로 獨立된 韓國의 國수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카라 피노 교수와 이만우 교수는 滿州地方에 있었던 韓國의 民族主義 遊擊隊 活動狀況에 관한 日本의 報告書에는 金日成의 活動이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저명한 韓國 歷史學者 부르스커밍스는 1937 - 1941년 동안 金日成의 遊擊隊에 대한 日本의 反遊擊隊 活動作戰記錄을 發見하였다. 日本의 이 作戰은 수개월 동안 전개되었으며 일본군 15만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金日成의 革命經歷은 1932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36년 이후 그는 일본군에 한번도 잡히지 않았고, 分派主義·背信·同僚들의 피살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도 끝내 살아남았으며 韓國民族主義와 자신을 긴밀히 일치시켰다는 사실들 때문에 뛰어난 政治指導者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의 전면적인 토벌작전으로 인해 金日成과 약 300명으로 구성된 遊擊隊는 만주국경 山林地域으로 쫓겨났으며 1941년경에 그들은 蘇聯 카바롭스크 지방으

로까지 쫓겨났다. 그의 韓國 民族主義와의 일체화와 蘇聯의 지원으로 그는 蘇聯이 北韓을 점령한후 政治的 指導者로 부상하였다. 소련군은 金日成이 부각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으며 金日成이 人民軍과 朝鮮勞動黨을 設立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48년 9월 朝鮮 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 정식으로 창건되었을때 金日성은 政府, 黨 및 軍의 통수자가 되었다.

2) 肅 清

北韓 신정부의 指導體制는 ① 비공산주의자, ② 國內 共產主義者, ③ 소련계 韓國人, ④ 연안파 또는 중공파, ⑤ 中國에서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까지 遊擊活動에 종사하였던 소위 갑산파등 5개파로 구성되었다. 金日成派는 地方의 지지기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그는 政敵을 체계적으로 肅清하기 위해 만주에서 터득한 당파분쟁의 經驗을 活用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경까지 非共產主義 民族主義者들의 指導層은 暗殺, 逮捕, 拉致 및 政治的인 억압수단에 의해 거의 무력화 되었다.

肅清은 반소 음모라는 구실로 정당화 되었다. 북한 5도 위원회 指導者였던 조만식과 같은 저명지도자는 1947년에 逮捕되었고 韓國動亂 기간중에 暗殺되었다.

金日成은 또한 蘇聯 및 중공계 韓國人들을 부추겨 지방의 民族主義者들을 除去하였다.

韓國動亂 期間 및 후에 北韓에 주둔하였던 中共軍 事 및 經濟 고문단들은 그의 傳記와 韓國動亂에 관한 공식적인 北韓歷史 記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金日成을 위해 여러모로 많은 協助를 제공하였다. 韓國動亂後의 復舊事業은 中共의 고문단, 노동력 및 경제원조 없이는 불가능 하였다. 中共은 金日成의 韓國動亂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재건에 부적절한 損傷을 주지 않고 그가 반체제 인사들을 제거하는데 완충적인 役割을 제공하였다. 1945년부터 1953년 년간 총인구의 약 25%가 넘는 반체제 인사와 젊은 사람들이 南韓으로 移住하였다.

韓國動亂은 金日成에게 非甲山派 共產主義者들을 肅清하는데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현재 蘇聯에 亡命하고 있는 전 勞動黨 간부의 말에 의하면 거의 90%가 넘는 소련과 출신 장성들이 死刑당하였거나 소련으로 亡命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치는 確認할 수는 없으나 이들에 대한 肅清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의문은 거의 없다. 연안파 또는 중공파 출신 장성들도 이와 유사한 운명을 맞았다.

非甲山派 요원에 대한 肅清이 政府 및 당내부에서 나란히 일어났다. 北韓의 최초 각료 22명중 17명이

死刑, 暗殺, 또는 肅清 당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체 당원의 3/4에 해당되는 45만에서 60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이 당규약 위반으로 處罰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甲山派 내부에서 군실력자와 당간부들간의 暗鬪가 擴大되었으며 金日成은 이를 이용 대대적인 肅清을 실시하였다.

1968년경에는 전체 지방당 후보자들의 2/3에 달하는 당원들이 殺害, 拘禁 또는 降等되었다. 金日成의 肅清은 軍 指揮官에까지 미쳤다.

1972년에 개정된 憲法에 의하여 集團 指導體制에서 金日成의 1인독재체제로 바뀌었다. 당의 총서기, 국가주석, 인민군 총사령관, 사회의 아버지, 「主體」라는 단하나의 許容된 理念의 창시자로 金日成은 그 자신을 北韓에서 최고의 指導者 자리로 올려놓았다.

1976년대 이후 金日成은 계속적인 肅清을 통해 불신분자들을 除去하므로써 그의 統治權을 強化시켰다. 이러한 계속적인 肅清은 독자적인 核心勢力을 除去함으로써 金日成의 後繼者로 내정된 金正日的 자리를 合法化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족벌체제에 반대하여 肅清된 당원들은 투옥되거나 지방으로 추방되었으며 그들 중에는 5명의 前 政治局서기, 인민군 총참모副長, 2명의 부총리 및 국가보위부장등이 있었다.

3) 經濟開發

北韓의 經濟政策은 스탈린의 産業政策과 모택동의 農業政策을 모방하고 있다. 北韓은 鑛業, 林業, 化工業과 같은 資源開發産業에 역점을 두고 輕工業과 消費物資生産보다 重工業에 치중하였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공식통계에 의하면 年間 15%의 刮目할만한 産業成長을 이루고 있는것으로 되어있다. 빈약한 管理와 不完全한 品質檢査가 병목현상을 빚어내기는 하였으나 戰爭으로 폐허가 되었던 國家가 주요 工業勢力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 工業의 공헌도는 國民所得의 70%를 차지하였다. 총인구의 약 41%가 農業, 林業 및 漁業에 종사하고 있다.

經濟發展은 勞動者들의 집단동원, 消費物資 生産의 통제 및 군대식 集團 勞動運動을 통해 이루어졌다. 재정적인 보상 대신에 순수한 意志, 愛國心, 金日成에 대한 忠誠 및 革命的인 道德性이 강조되어 왔다.

北韓社會는 일간, 주간, 월간 및 年間 할당량을 수행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이 組織은 복잡한 秘密警察 組織網의 보조아래 엄한 규율과 자기 희생을 강요한다. 北韓의 勞動者들은 불평없이 가혹한 作業에 종사함으로써만이 자신의 身邊安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實質的으로 北韓 住民들은 金日成 政

府에 忠誠을 다할 뿐만 아니라 生産目標을 초과달성하고 이웃의 어떤 잘못도 당국에 告發함으로써 그 忠誠心을 내보이도록 요구받고 있다.

北韓의 土地政策에 의거 政府는 전 日本人들의 財産과 南韓으로 挑避한 사람들의 토지를 國유화 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대부분의 경우 暴力을 사용하지않고 달성하였다. 結果的으로 化學肥料의 사용, 토지개간 및 농부들의 집단동원등이 주효하여 莫大한 수확을 거두었다. 그러나 食糧配給制度를 適用하여 消費를 억제하고 수확에서 거두어 들인 많은 양의 農産物을 輸出을 위해 저장하였다.

1950년 및 60년대 蘇聯과 中共으로부터 받은 경제원조는 北韓의 經濟復興에 근본적인 활력소가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원조는 급격히 감소되었고 전년도에 비해 현저한 경제침체 현상을 일으켰다. 近來 북한의 어느 地域에서는 영양실조 상태와 기근까지 겹치고 있다고 어느 관측자는 말하고 있다. 관측자의 말에 의하면 北韓의 經濟困窮現像은 주로 生産品의 낮은 질에서 비롯되어 이것이 수출을 제한하고 이로 인한 海外代金支拂을 困難하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金正日을 비롯한 政府 指導者들은 外國 交易에 대한 經濟開放과 外國의 影響力이 고도의 技術과 經濟向上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주체사상의 變化와 重工業에 대한 강조가 必要하다. 어떤 분석가는 北韓이 또한 참혹한 政治體制의 개선에 눈을 돌리게 될것을 希望하고있다. 北韓은 外國과의 貿易에서 赤字運營을 하고있다. 北韓은 비시장 經濟에 있어서 유리한 均衡을 유지하고 있으나 市場經濟(일본과 구라과)에 있어서는 赤字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87년의 北韓 수출고는 17억불(미화)에 달하고 있는 반면 輸入은 24억불에 달하고 있다. 輸出商品은 水産物, 쌀, 옷감과 重石, 운모, 시멘트, 마그네시아와 같은 鑛物商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주종 수입상품은 原油, 機械類, 裝備, 밀, 鐵鋼 및 纖維製品들이다. 北韓은 구라과와 日本銀行에 10억불(미화) 이상의 外債을 안고 있다. 北韓의 수입상품에 대한 代金決濟는 現金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第3章 國際法的 義務

1981년 북한은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社會的·經濟的·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및 1949년의 「전쟁희생자를 위한 제네바 협정」을 받아 들이고 「전쟁에 관한 罪 및 人類에 관한 범죄의 法的制限 부식용 협정」을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北韓은 기타 어떤 국제 인권 기구도 인준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강제 노동 규정의 철폐, 結社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보호 등을 포함한 國際勞動機構의 160개 國際勞動規約條項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北韓은 또한 1977년의 「제네바 협정」에 의한 2개 의정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 협정」(124개국 인준), 「集團殺害 防止와 처벌에 관한 협정」(97개국 인준), 「인종차별의 처벌과 억제에 관한 국제협정」(86개국 인준),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금지협정」(94개국 인준), 「난민보호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101개국 인준), 「고문과 잔악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비인한 처우 및 처벌에 관한 협정」(28개국 인준) 과 「노예제도 철폐에 관한 부가협정」 등을 인준하지 않고 있다.

第4章 自由와 平等

世界 人權 宣言

제 1 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尊嚴
性과 權利를 갖는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理性과 양
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兄弟愛의 정신으로 행동
하여야 한다.

제 2 조 : 모든 사람은 종족, 피부색, 성별, 언문·종교·정치상
기타 의견, 民族的 혹은 社會的 出身, 재산, 가문 혹
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차별을 받음
이 없이 본 선언에 규정된 모든 權利와 自由를 향
유할 權利를 가진다. 뿐만아니라 각자가 속해있는 지
역이 독립지역이거나 신탁통치지역이거나 비자치지역
이거나 혹은 主權의 制限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
론하고 그 정치상, 관할상, 혹은 국제상 지위에 있
어 하등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法律앞에 하나의
人間으로 인정받을 權利를 가진다.

제 7 조 : 모든 사람은 法앞에서 평등하고, 아무런 차별없이 동
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
은 이 선언에 위반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
등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차별대우에 선동되지 않

도복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序 論

북한 헌법 제 51 조에 의하면 “공민은 政治, 經濟, 文化 등 國家 社會生活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權利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제 62 조에는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國家는 산전 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國家는 女性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社會에 進出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 條項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는 불평등한 權利와 義務를 嚴格한 制度를 통해 인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간의 지위, 특권, 양곡배급, 여행의 기회, 직업, 보건시설과 교육기관의 이용, 정치 및 일반범죄 처벌 등 인민들의 社會的 分類 형태에 따른 복잡한 규정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制度는 북한 전역에 널리 적용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개인 생활이나 안전은 이 體制에 의해 통제 됨으로써 많은 不平等을 양산하고 있다.

인민들은 각종 독립 감시기관에 의해 수집된 정보에 의거 변경되는 그들의 分類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는 權限이 없다. 결과는 당의 사회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라 할 수 있다.²

2. 朝鮮王朝와 日本 統治는 이와 같은 엄격한 분류제도에 대한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유교적 形而上學 사상과 社會的 慣習에 根據를 두고 있다. 한국의 지식인과 指導者들이 새로운 儒敎를 이조시대 (1392년 創建) 때 채택하였을 때 그들은 사회계급론을 定立하였다. 중국의 사상에 의하면 인간의 行實은 일반적이며 不變의 法이 반영된 것이다. 올바른 社會的 行實을 통해 사람은 하늘과 유대할 수 있다. 올바른 社會關係는 個人的 幸福이나 利得을 向上시키는 매개물이 아니며 자연적인 화합을 保存하는 전체적 집단으로 개인을 통합시키는 수단이었다. 이 형이상학적인 분석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지위를 擔當하고 있는 엄격한 계급사회 제도를 정당화 하였다. 사람들은 그들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의해 규정되고, 잘 규정된 계급과 신분체계에 통합된다.

일본은 1910년 조선왕조를 정복하였고 그들 자체의 規律를 만들었다. 일본 식민통치자들은 고유의 사회계급 제도를 그들의 똑같이 성립된 다른 제도로 바꾸어 놓았다. 소련군이 1945년 평양에 진주하였을때 그들은 황폐되고 무질서 하고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北韓社會를 보았다. 소련군의 支援아래 김일성은 나뭇대로의 독자적인 계층을 서서히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마르크스 思想體制의 경험을 갖고 있던 政治家들은 조선 노동당원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신유교 선조들처럼 김일성

본 4장의 첫 부분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분류한 지위와 계급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2. 住民의 階層分類

1958년초 김일성은 모든 北韓 住民들을 3개 계층 51 부류로 細分하는 計劃을 세웠다. 51개 부류는 정부에 의해 공개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1980년대에는 階層分類에 대한 정책 시행은 감소되었다.

각 개인의 지위는 國家에 대한 忠誠心과 國家에 奉仕할 수 있는 能力, 계급적인 배경(한 가족의 배경은 지난 3대까지 포함)과 출생지(한반도 북반부 출신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설정된다. 입수된 情報에 의하면 북한은 우선 전인민을 3개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즉 핵심계층, 동요계층 및 적대계층이다. 여러 資料에 의하면 모든 住民은 그들의 계층을 표시하는 배지를 달도록 되어 있고 배지에는 김일성의 사진이 들어 있다고 한다.

-
- 식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전과를 위한 관리자가 되었다. 새 制度는 개인에게 자신의 私的 慾求를 억압하고 지도층의 요구와 일제가 되도록 상압하는 능력에 있어 보다 嚴格하고 더 상요적이며 냉혹한 점에 있어 과거의 계급체제와 다른것으로 보인다.

핵심계층은 3개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중 가장 높은 부류에 속하고 있는 사람은 김일성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이다. 다음 부류는 총인구의 1%가 해당되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속해 있으며 그 아래는 총인구의 1/4에 해당하는 政府에 대한 忠誠的인 추종자가 포함된다.

김일성 및 그의 가족과 친척에게는 막대한 權力과 特權이 부여되어 있다. 김일성 및 그의 家族과 친척들에게는 특히 김일성이 樹立한 계층제도 속에서 광범위한 특혜가 부여되어 있으며 피동치자에 대한 平等, 差別 및 책임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김정일은 15,000권이 넘는 외국 필름을 소지하고 있다.³

3. 김정일이 소장하고 있는 필름은 50 m가 넘는 지하땅굴에 保管되어 있으며 7,000여편의 西洋映畵를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특히 간첩드라마, 서부극, 폭력, 공포 및 桃色映畵를 좋아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중의 하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출연한 「Butterfield 8」이라고 한다. 그는 映畵를 통해 서부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본주의자들이 계급의식과 계급투쟁의식을 파괴하기 위해 영화를 製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가끔 영화에 나오는 의상에 영향을 받아 한때 그의 간부들에게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金日成 父子는 자신들의 성품과 통치를 찬양하는 낭비적인 建設事業을 지시해왔는데 파리에 있는 개선문 보다 規模가 큰 개선문을 비롯하여 수만개의 동상과 사진제작이 그 실례이다.

엘리트급 指導者數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주로 평양에 살면서 고도로 발달된 보건기구, 호화주택, 특수학교, 개인식당(중국, 일본, 소련음식 전문점)을 이용할 수 있고 모피와 최신행을 따른 따뜻한 의류등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消費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收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政治的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개인선화를 가질 수 있고 外國出版物을 구독할 수 있으며 외국 방송을 징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여행도 허용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엘리트들은 당에서 허용하는 선전 영화나 가극 관람에 제한을 받지 않고있다.

예를 들어 노동당 첩보 기관에 근무한 바 있는 한 國民的 영웅은 그가 비록 핵심계층의 하위 부류에 속하고는 있었으나 엘리트로서의 특전과 권위를 누렸다고 하였다. 그 결과 그의 생활형태는 北韓의 보통 國民들에 비해 호화스러웠다. 그는 평양의 특수 地域에서 살았으며 보통 住民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냉장고, 칼라텔레비전 및 욕실을 갖추고 방이 5개가 있는 주택에서 살았으며 벤츠 승용차를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평양의 電

力 不足現象에도 불구하고 그는 電力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에게 할당되는 양곡은 거의가 백미 (北韓 住民들이 가장 선망하고 있는 양곡)였으며 그의 가족은 쌀 50 과 밀 50의 비율로 혼합된 양곡을 배급받는다고 하였다.— 입수된 情報에 의하면 보통가정은 쌀 30%, 옥수수 70%의 혼합양곡이 할당된다고 함.— 그의 쌀 배급량은 그가 소모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1일 800g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한달에 8kg에 달하는 쇠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식용유 등 一般住民들이 구경도 못하는 특수 식량을 받는다고 하였다. 一般住民들은 그들의 양곡을 유상으로 배급 받고 있으나 그는 무상 배급을 받고 있으며 엘리트가 아닌 住民들에게는 酒類구입이 금지되고 있으나 그는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항공 조종사도 이와 유사한 權力과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 같다. 귀순한 한 조종사에 의하면 그가 받은 양곡은 혼합곡이 아닌 백미였으며 大量의 肉類와 부식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항공기에 가설된 라디오를 통해 外國放送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열차 이용시 1등석에 승차할 수 있었고 엘리트의 한사람으로서 일반적인 규정과 제재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핵심계층중 충성적인 추종자는 政府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주민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총인구의 1/4 인 약 500 만명에 달한다.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이 틈난 職業에 종사하고 있으며 軍, 黨 또는 政府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가용한 情報資料에 의하면 이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외교관이나 공공기관, 공장 농협 단위조합의 고위간부 및 기술자, 의사, 운동선수, 배우등과 같은 專門職業人과 革命家나 전쟁영웅의 후손들이라고 한다.

동요계층은 두번째 계층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권력층이 신뢰를 하기 어려운 관리들로 構成되고 있다. 총인구의 절반이 이 계층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계층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위기상황에서 그들의 忠誠心이 의심스러운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전에 商業이나 專門職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분히 충성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하급 기관요원, 기술자, 일반노동자, 농부, 사무직원 및 간호원이나 선생과 같은 하급 專門職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극도로 제한된 수입과 양곡배급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부부가 그들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같이 일해야 한다. 그들의 教育水準은 빈약하고 불충분한 보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들은 작은 마을과 시골에 살고 있으며 평양에 살 수 없고 특별인가 없이는 평양으로 여행하지 못한다. 인터뷰 결과 그들은 국가 보위부에 의해

嚴格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作業量 達成, 政治學習 參與, 반성회 및 김일성 부자와 당에 대한 충성을 계속 강요당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번째 계층은 적대 계층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政府에 반대하거나 政治 및 社會制度에 불만이 있거나 충성심이 결여된 배상을 갖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分類의 원인은 그들이 과거 상류사회의 地主, 資本主義者, 西歐化 지식인, 일제시대의 관리, 宗教指導者들의 자손이나 그들의 가족이 남한으로 탈출한 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거나 고된 勞動에 從事하고 있다. 外國人들이 그들을 만나기가 힘들며 北韓 보도매체에서도 그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않기 때문에 그들의 수를 추정하기는 힘들다. 總人口의 20%인 약 400 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술할 바와 같이 계층제도는 여러 부류에 세분되며 1958년부터 1980년 사이 약 51개 부류로 세분되었다. (부록 2 참조)

國家 보위부는 住民들이 당과 군부에 침투하여 反黨, 反革命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인간들을 계층별로 분류 하였다. 이러한 부류중 어떤 부분은 퇴색하였고 그들에 대한 政策推進이 둔화 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생활과 신분에는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자가 속하고 있는 부류는 법제도, 양곡할당, 여행허가 등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평양을 방문한바 있는 한국계 일본인과 선 北韓 官吏들에 의하면 김정일이 1980년에 南韓과 海外에서 北韓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 하였고, 이러한 중성심에 관한 조사 결과 일부 중복되는 부류도 있었으나 13개의 새로운 부류가 생겨 총 64개 부류로 구분되었다고 하였다.

○ 13개 추가 부류는 다음과 같다.

- (1) 남한 政府 當局에 적대행위를 한 후 北韓으로 귀순한 자
- (2) 南韓에서 北韓으로 歸順한 者
- (3) 北韓으로 歸順한 南韓 어부
- (4) 다른 나라로부터 北韓으로 歸順한 者
- (5) 外國에서 北韓으로 밀입국한 者
- (6) 刑務所에서 석방된 간첩
- (7) 한국 동란시 인민군에 편입된 남한 출신자
- (8) 건설단에서 복무하였던 자
- (9) 중국에서 귀순한 자
- (10) 소련에서 귀순한 자
- (11) 중국계 주민
- (12) 일본계 주민
- (13) 해외에서 귀환한 자

住民들은 각자 자신이 핵심, 적대 또는 동요계층중 어디에 속해 있는 가를 알고 있으나 각자가 속해 있는 부

류는 保管機關만이 알고 있다. 住民들은 자기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權利나 문의 절차가 없다. 더구나 국가 보위부는 일방적으로 住民들이 소속되고 있는 부류를 변경할 수도 있다.

3. 不公平한 法の 適用

피고소인들의 소속 계층과 부류는 북한의 재판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강간, 강도 및 殺人과 같은 一般犯罪에 대한 처벌은 비록 北韓 刑法에 편파적인 처벌이 규정상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범법자의 소속 계층과 부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엘리트들은 그들의 범법행위가 특히 하위계층에 속해 있는 주민들에 대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가벼운 處罰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적대 계층에 속해 있는 농부가 소를 不法的으로도 도살 하였다면 15~20년형을 받는다. 이러한 犯法行爲는 一般的인 犯罪에 속하나 北韓에서는 政治的 經濟犯으로 간주된다. 공식 서류를 취급할 수 있었던 전 北韓의 住民에 의하면 그 농부는 소를 단순히 도살한 것이 아니라 선반적인 경제계획 사업을 파괴한 것으로 된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저명한 학자에 의하면 만약 농부가 핵심 계층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그의 범법 행위는 一般 犯罪로 간주되어 1년반 정도의 형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엘리트들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소속 부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정통한 情報에 접할 수 있는 한 선北韓 官吏에 의하면 평양외국어 학교에서 5명의 학생이 고발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犯法行爲는 같았으나 處罰은 그들 배경에 따라 달랐다고 하였다. 입수된 情報에 의하면 그들 중 첫번째는 그 학교 영어학과 학생장이었으며 상당히 높은 계층의 背景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경고로 끝났고 두번째 및 세번째 학생은 첫번째 학생보다 낮은 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퇴학을 당했다고 한다. 다섯번째 學生에 대한 處罰은 알려지지 않았다.

政治犯들 역시 그들의 소속 계층과 國家에 대한 봉사 척도에 따라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엘리트들은 구금중에도 봉급을 계속 받으며 평균 이상의 양곡 배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후에 그들은 석방되어 官職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예로 한 남한 출신인 영화 감독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구금을 당하였으나 김성일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이유로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4등급식⁴ (Level-Four Rat-

4. 4등급식 (Level-Four Rations)은 하루에 두 그릇 정도의 쌀밥양을 말한다. 그의 脫出 기도가 발각되자 4개월 동안 1등급식 (Level-One Rations)으로 減量되었다. 1등급식은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기에 不充分한 量이었다.

ions) 을 받았으며 重勞動이 면제되는 특수 죄수들이 수 용되어 있는 감방에 감금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위 계층 소속 죄수들은 불리한 환경속에서 복역하고 있다고 하였다.

4. 糧穀配給

勞動者들에게 할당되는 양곡의 양은 두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첫째, 많은 活動力이 요구되는 작업이나 주요한 일에 從事하는 자는 하루에 800g 또는 그 이상의 양곡 배급을 받는다. 두번째,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계층에 따라 12 등급으로 구분된 양곡을 받는다고 한다. 北韓은 이러한 등급의 양곡 배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그 중 가장 높은 2개 등급은 김일성의 家族과 특수 외빈을 위해 설정되어 있다. 세번째 높은 10 등급은 각료급 이상의 당 고위 간부들에게 할당되며 '10호 상점'을 통해 제공된다. 수감자에게 割當되는 최하위 등급은 하루에 200g 이하이다. 北韓 當局은 1등급에 해당되는 양곡 수령자는 생명유지에 훨씬 미달되는 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아 그들이 사망할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의도적인 처사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 居住하고 있는 한 北韓 사람은 대부분의 수

감죄수들은 2년⁵ 이내에 아사한다고 하였다. 양곡 배급 제도에 대해서는 제17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5. 北送僑胞

1959년부터 1982년 사이에 6,637명의 일본인 처를 포함하여 총 93,000명의 일본 居住 韓國人이 북송되었다. 北韓의 民族主義에 입각한 간청과 밝은 장래의 보장 약속에 힘입어 일본에 있었던 많은 韓國人들이 그들의 일본인 처와 자식들을 대동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북한 政府는 일본인 처(6,637명중 1,828명은 일본 市民權 所有)들이 2, 3년에 한번씩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하있었다. 그러나 일본에 돌아간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그 중에는 소식조차 단절된 사람도 있었다. 家族들을 北韓으로 보낸 일본 거주 韓國人들은 그들의 家族들이 동요 계층 또는 적대 계층으로 分類되어 있다고 하였다. 북송 家族들이 北韓에 도착하자 '형제들'을

5. 北韓의 보안당국 간부는 北韓 刑務所의 참혹성을 폭로한 바 있다. 우리들이 접견한 대부분의 北韓 出身者들은 하위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이 집을 떠나 행방불명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위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은 형무소에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형편없는 식량과 의류 및 주택이었고 대부분은 重勞動에 시달려야 했다. 北韓 관리들은 귀환 농포를 별시적인 어조로 '귀포'라고 불렀다. 귀환자들은 별시와 경멸적인 대접을 받았다. 이러한 푸대접으로 인해 歸還者들은 정신 착란증에 걸렸고 자살한자도 있었다고 한다. 어떤 歸還者는 중국이나 소련으로 도피하려고 하였으나 그들 대부분은 체포당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공개 處刑을(총살) 받았다고 한다.

北韓에서 유출된 歸還者들의 직접 보고나 편지에 의하면 그들은 절망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숨은 쉬고 있으나 시체와 같다.

우리들은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모든 自由를 박탈 당하고 있다...

내가 다른 도로 가고 싶을 때는 소속되어 있는 농협 시험소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허가를 얻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 생활은 마치 지옥같다. 옥수수와 밀로 쏘 죽은 버찰가지 못하였다. 어떤 때는 물만 마시고 작업장에 나갈 때도 있었다. 나는 노예와 같은 生活을 강요 당하고 있다. ... 그래서 나는 풀, 뱀, 개구리 등을 먹으려고 하였다. ... 나는 처음에 설사병에 걸리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예사로 여기고 있다. ...”

이러한 편지 내용의 情報은 日本人이 北韓에 있는 친척들을 잠시 방문하기 위해 만나서 확인 되었다. 또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그들의 北韓에 살고 있는 있는 친척들이 이와 비슷한 환경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歸還者들이 만약 탁월한 政治的인 背景을 갖고 있거나 政府에 돈이나 물건을 제공 하였을 때는 좀 더 나은 生活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많은 친척들은 그들의 친척을 保護하기 위해 송금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트럭, 엔진, 경공업용 機械類 및 장비들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헌납' 行爲가 北韓에 있는 친척들이 좀 더 나은 職場과 심지어는 평양에 住宅을 얻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歸還者 중 한사람은 그의 國家에 대한 재정적인 헌납으로 最高人民會議 代의원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6. 평 양

수도 평양은 北韓의 社會階級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北韓은 오늘의 평양을 '공원속의 도시'라고 선전하고

있다. 평양이라는 이름은 어구적 해설로 ‘버드나무의 수도’가 된다. 평양은 김일성의 이상적인 도시 개념에 의거 건설된 것이다.

韓國 動亂時 완전히 폐허화 된 평양은 김일성 부자의 ‘전영적인 도시’ 建設을 위한 機會를 부여 하였다. 大規模的인 建設工事を 통해 그들은 미래의 共產的 都市의 표본을 만들었던 것이다. 北韓의 모든 보도 매체는 김일성 부자의 이러한 업적을 부각 시키기 위해 定規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2월 북한 공산당 기관지는 김정일의 따뜻한 사랑속에 평양에 공산주의의 이상적 거리인 창광 거리와 기타 많은 近代的인 거리 그리고 서비스 시설, 문화 및 공공보건 시설 등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 하였다.

김일성과 소련에서 教育 받은 建築者들은 평양시의 建設 責任을 지고 있다. 혁명을 지도한 김일성의 大規模 기념 통상의 건립을 위해 막대한 돈이 투입되었다. 평양에는 항일 투쟁과 共產主義 革命에 관한 김일성의 업적이 전시된 웅대한 박물관이 있고 목욕시설, 수영장 및 數個의 체육관이 있는 大規模의 종합 체육관이 있다. 30-40 km의 길이와 80-200 m에 이르는 폭을 갖고 있는 지하철이 있다. 15-20개의 大規模 지하철역은 찬란한 크리스탈 샹데리아로 장식되어 있다. 시내에는 넓은 도로가 있으며 간선도로의 중앙은 김일성과 그의 측근자들의 전용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⁶

평양은 그 모습이 전통적인 한국 도시와는 달리 시베리아의 도시에 가깝다. 건축 구조는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한 호주 방문객은 평양시를 가리켜 “다른 아시아 地域의 都市와는 달리 동떨어진 색채와 소음이 없는 직박하고 외진 유명 都市이며 겨울철 야경은 무시무시할 만큼 얼어붙은 명소”라고 묘사 하였다.

평양은 또한 北韓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 대기 오염문제나 먼지가 없다. 많은 訪問者와 歸順者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시로 들어오는 차량은 교외에 있는 세차장에서 언제나 세차를 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다. 평양의 도로는 撒水 트럭이 定規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여자들이 계속 거리를 쓸며 눈을 치우고 있다.

평양을 訪問하는 대부분의 外國人들은 시내의 청결함과 사치스러운 꽃의 진열 및 市民들의 건강한 모습에 놀란다. 그러나 평양시에도 어두운 민은 있다. 떨어진 곳에는 엘리트들을 시종드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1984년 평양을 訪問한 外國人이 안내원의 눈을 피해 시가지를 돌아보았는데 불품 없고 초췌한 모습을 하

6. 北韓 社會의 획일주의적 통제를 반영하듯이 交通 警察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車輛의 運行을 위해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

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1985년 한 이집트 기자가 평양을 방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 하였다.

“평양에서 나는 第2次 大戦以後 그대로 방치된 낡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는 농부들이 마치 무서운 상화발로 그들의 목이 둘러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 … 아이들은 땅바닥에서 흙장난 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조용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여자들은 길바닥에서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나는 잠시동안 마술에 걸린 부락으로 온것 같은 느낌이였다. 그때 나의 젊은 통역이 황급히 나를 잡아 당기는 바람에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는 놀라움과 경악감에 휩싸였다. … 저녁 9시 평양은 적막하고 자신의 손바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세계로 변하였다.”고 하였고 이 사실은 다른 訪問者로부터도 確認되었다.

평양은 엘리트들의 세계이다. 그들은 根本적으로 保健, 文化, 社會奉仕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 北韓 政府는 政府官吏, 당간부, 군부시휘관, 외국 귀민들을 위해 수천대의 차량을 구입하였다. 이 차량의 운전사들은 다른 평양시민과 달라 시외를 나갈때 특수통행증이 필요 없다. 고위 엘리트들은 특수 保健 施設에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一般的으로 대단히 안락한 生活을 누리고 있다.

김일성과 그의 감시관은 평양시 전체를 면밀히 감시하

고 있다. 사복을 입은 軍人과 保安警察들이 길복에 서서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평양시의 人口 規模는 嚴格히 통제되고 있다. 平壤市 人口는 전체의 6%에 해당하는 130만 정도이다. 보고에 의하면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만이 살 수 있고 2~3년 마다 불구자, 연로자, 과부, 병약자들과 같은 身體的 결함이 있는 자는 다른 곳으로 추방된다.

모든 社會 活動은 통제되어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고 교통은 버스나 지하철로 국한되어 있다. 訪問者들은 안내자 없이 시내를 걸어 다닐 수 없다. 그러나 어떤 訪問者는 안내자의 눈을 피해 몰래 시내구경을 했다. 住民들은 일정한 地域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탁아소, 학교, 병원, 상점, 이발소, 시장과 같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집단거주 단지내에 있다. 각자의 職場이 團地內에 있는 곳도 있다. 一般 住民들에게 허용된 왕래는 가정과 직장이며 이 역시 政府가 定한 通路를 사용해야 하고 만약 規定通路를 이탈하면 체포당할 수도 있다. 그 이외의 地域에 대한 여행은 특수 허가를 받도록 政府가 規定하고 있다.

7. 여성의 지위

北韓 政府는 執權 이래 여성들의 法的 지위를 개정 하였다. 1946년 7월 30일 공포된 「男女平等權 法令」은 아래와 같다.

- 제 1 조. 女性은 經濟, 文化, 社會 및 정치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權利를 갖는다.
- 제 2 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國家 上位 機關에 대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에 대한 權利를 갖는다.
- 제 3 조. 女性은 職場과 급여 및 사회보장과 教育에 대하여 男性과 동등한 權利를 갖는다.
- 제 4 조. 女性은 男性과 같이 자유 결혼에 대한 權利를 갖는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속박과 강압된 결혼을 금지한다.
- 제 5 조.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女性 역시 男性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인 이혼을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이혼한 남편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소송과 자녀 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의 결정에 따른다.
- 제 6 조. 女性의 結婚 연령은 만 17세 또는 그 이상으로 하고 남성은 만 18세로 한다.
- 제 7 조. 중세기의 봉건적인 인습에 의한 一夫多妻制나 배

우자 또는 첩으로 맞기 위한 부녀자의 매매와 같은 女性들의 人權 침해는 금지한다. 공식 또는 비공식 매음행위와 기생 고용 세도는 금지한다. 위 事項을 위반하는 자는 法에 의해 處罰된다.

제 8 조. 女性은 男子와 같이 土地와 같은 재산을 상속받는 權利와 이혼시 土地를 포함한 財產 分配에 대한 權利를 갖는다.

제 9 조. 이 法の 선포로 女性에 대한 일상의 法令은 무효로 한다.

이 法은 女性들을 勞動力으로 흡수하기 위한 目的으로 制定한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이상을 가진 법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女性들의 政治的 지위는 향상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가사업무에도 변화가 없었다. 1977년 平壤에 있는 북조선 여성연맹의 대표자들을 면담한 바 있는 어느 학자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女性의 지위는 대략 3 가지 형태의 상호 연계된 강압적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物資의 大量生産, 둘째는 人口 증식, 셋째는 長期的 奉仕 (대개 독신으로 군에 복무) 등이나 이는 상호 모순된 점이 많다. 이러한 目標達成을 위해 北韓 政府는 대부분의 성년 여성들을 생산부서에 동원하고 있고 수많은 유치원과 이에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결혼이 늦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식 (피임과 임신중절 수술은 어려움) 을 장려하고 있다. 남

성들의 군복무 의무는 막중한 반면에 女性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과 희생을 상요 당하고 있다”

하러데이(Halliday)라는 학자가 北韓 女性과의 인터뷰에서 北韓의 社會相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는 “女性들의 지위는 生活水準, 教育 및 保健施設의 이용,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생활에 대한 희망 그리고 각종 직업에 대한 종사 등 많은 분야에서 양상 되었고 매춘 행위는 근절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한 바와 같이 女性에 대한 平等과 自由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女性들은 男性들보다 고된 일을 하고 있으나 불공평한 임금과 수입을 감수하고 있으며 남성들의 政治的 지배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北韓 社會는 아직까지 남존여비 풍습이 남아 있다. 김일성 교시의 어느 부분에서 그는 평등을 부르짖으면서도 남자들이 責任져야 할 과업 달성의 지체나 과오에 대하여 여성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하였다. 축첩제도는 해소 되었으나 “北韓 政權의 嚴格한 晚婚制度는 婚前情事마저 금지하고 있으나 성적 욕구를 말살하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16세부터 30세까지의 민간 勞動力의 90%는 女性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그 연령층의 남성들이 대부분 군에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女性들의 國家에 대한 奉仕期間은 약 14년에 이르고 있으나 남성들은 군에서 세대한 후 職場에서 女性보다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나 教育機關, 의료기관, 운동 및 문화 활동과 같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職業을 제외하고는 女性들이 최상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저명한 北韓問題 논설가들의 평에 의하면 女性들은 부여된 作業量과 성격에 상응하는 임금과 승진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많은 女性들이 社會 및 政治活動 분야에 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北韓 社會에서 國家的으로 명성이 있는 여성지도자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나마 그들 중 반수 정도가 북한 지도자들과 혈연 관계에 있거나 그들에게 출가한 여성들이다. 1970년대 당의 정치국원 34명중 여성은 정경희 뿐이었으며 당 서기국 여성은 허정숙 뿐이었다. 당중앙 위원회는 전체 249명중 5%에 해당하는 13명이 여성이었다. 이는 1960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숫자이다. 이들중 3명은 그들의 남편의 지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김성애는 김일성의 처이고 허정숙은 고위관료의 처였으며 황옥환은 최용건(사망)의 처였다. 이들 여성들이 女性問題를 독점하여 다스렸다. 그외 김정숙이나 김신숙은 김일성의 친척이다.

단지 노년층 세대의 몇몇 女性만이 계속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그중 가장 이름이 난 女性은 허정숙인데, 그녀는 고위관료의 딸로서 법무상을 지낸바 있다. 그녀는 5개 국어에

능숙하고 많은 教育을 받았다. 이에 반해 세새대의 여성들은 이들과는 달리 政治的 명성을 얻지 못했다. 一般的으로 北韓의 중·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이 아니며 여자들은 남자들과 다른 교과목을 공부한다. 남녀 공통과목으로는 음악, 예술, 문화 및 체육중 일부분이 해당된다.

취미와 공작도 남녀별로 구분된다. 세새대의 女性들은 국제 분세나 외국어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겨우 30명 정도의 女性이 1970년 이래 非社會主義 國家를 여행하였다. 해외 여행을 허가 받은 女性들은 대부분 남성들의 안내를 받고 모든 行動을 감시 받는다. 이러한 해외 여행은 모두가 女性 活動에 關한 것이며 國際問題에 關한 여행은 일체 허용받지 못한다.

北韓의 보통 女性들의 生活은 극도로 고달프고 힘들다. 김일성은 “女性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숙명이다.”라고 선언하였다. 北韓의 女性 동맹은 北韓 社會에서 女性들이 해야할 일은 “女性들은 당연히 요리를 해야 하며 이 일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해 왔던 일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도시 女性들은 그들의 일과를 남성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난다. 다음은 대표적인 일과표이다.

시 간	일 과
오전 5:30	주부 기상, 불을 끈다.
오전 6:00	남자 기상
오전 6:00-7:00	가족 기상, 세수, 옷을 입고, 식사. 주부는 아이들 등교 준비
오전 7:00	부모들은 직장으로 출근, 주부는 이 웃 상점에서 저녁 식사를 위한 식 품 주문
오전 8:00- 오후 1:00	작 업
오후 1:00- 4:00	점심식사, 심부름, 낮잠, 가끔 의무적 인 행사 참여
오후 4:00-5:00	작 업
또는 6:00	
오후 6:00-8:00	주부 저녁 준비
오후 8:00-10:00	정치학습 및 자아비판 모임 참가
오후 10:00-11:00	주부 귀가, 세탁 및 청소

男子들은 家事일을 돌보지 않는 대신 女子는 장시간의 정치학습을 매일 저녁에 받는다. 특히 女子들은 자기의 발언이 家族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政治學習에 대한 공포심이 크다. 男子들도 政治學習에 참여는 하나 여자들의 공포심이 더 크다.

이와 같이 짝짜인 일주일중 6일간의 일과는 몹시 괴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여자들은 병에 자주 걸리며 빈

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 歸順한 한 女性에 의하면 대부분의 女性들은 매력적인 몸매를 갖추기 위해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긴장, 과도한 勞動 및 영양실조로 인해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만약 휴식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職場에 나가지 않으면 規定된 양과 배급량에서 하루 600~300g이 감소 되므로 체력 유지와 영양섭취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김일성과 당은 모든 사람의 婚前 순결을 강조하고 있다. 婚前情事나 간통은 투옥이나 처형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전에 北韓에 거주하였던 한 女性은 1950년 김일성이 모든 未婚母와 結婚하지 않고 情事を 즐기고 있는 女性들은 그들 상대 남자의 신원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그 결과 그 여자들의 애인이나 사생아의 아버지는 투옥되었고 어린이는 고아원에 수용되었다고 하였다. 사생아의 아버지는 군에 끌려가기도 하였다. 1970년대엔 이러한 불륜관계를 은폐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자들은 가끔 임신한 未婚女를 살해하기도 하였다. 1970년 중반에 이러한 살인사건이 社會의 큰 問題로 대두되자 김정일은 政策을 바꾸어 女子들이 애인들의 신원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어떤 경우 女子들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女性들은 또 다른 社會的 制裁를 받는다. 한 住民이 최근 외국 손님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女性들의 바지 착용

과 흡인은 금지 (집이나 工場 밖) 되어 있다고 하였다. 文化的 요인으로 인해 많은 女性들이 어떤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나 北韓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에 刑務所에 복역한 바 있는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1970년에 한 女性이 흡인하는 것이 세 번 적발되어 투옥되었다고 하였다. 女性들의 유수 역시 금지되어 있다. 女性들은 法規, 風習 및 그들의 일상 生活에 대한 금기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 사실상 모든 증거로 보아 女性의 지위에 대한 당의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문을 제기한 女性이나 그녀의 家族들에게 가혹한 處罰이 내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8. 불구자와 社會的 差別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구자나 기형자는 平壤에서 살지 못한다. 訪北 外國人들은 그러한 사람을 목격한 바 없다고 하였으며 최근에 歸順한 사람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그들의 불구형태에 의해 分類되며 시골의 특정 지역에 거주지가 제한 된다고 한다. 北韓은 또한 불구자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하여 주고 같이 일하도록 하며 배우자는 출퇴근을 도우며 훈련을 받을때 보좌하는 任務가 부

여된다.

신체적인 특징에 따른 嚴格한 차별대우가 北韓에서 성행되고 있다. 情報資料에 의하면 곱추는 함경남도 깊숙한 산골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으며 그 수는 감소 일로에 있고 현재 약 30쌍이 남아 있다고 한다. 北韓政府의 명확한 目標은 그들을 조용히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北韓 社會에 대한 관측은 平壤의 공식 경로와 시범 농장에 국한 되고 있다.

北韓을 訪問하였던 사람은 北韓 社會에는 불구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비슷한 신체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北韓 當局이 「새 朝鮮」이라는 인상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외래인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第5章 生存權

제 3 조 : 사람은 누구나 生命 및 身體의 自由와 安全을 누릴 權利를 가진다.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제 6 조는 死刑의 제한과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世界人權宣言條項을 詳細하게 규정하고 있다.

“死刑執行制度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國家는 犯法行爲에 대한 법적인 집행 테두리내에서 가장 악랄한 犯罪에 대해서만 死刑을 선고하여야 하며 현 규약 조항에 違背되어서는 안된다… 死刑言渡를 받은 사람은 特赦와 減刑을 요청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1. 北韓 刑事訴訟法の 死刑條項

北韓의 法은 어느정도 이러한 國際基準에 따른 條項을 내포하고 있다. 北韓의 刑事訴訟法 제 275 조에 의하면 死刑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承認을 얻은후에만 執行할 수 있다. 또한 刑法 제 30 조에는 “犯罪行爲 당시 18 세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死刑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北韓 憲法 95 條에 의하면 “朝鮮民主主

義 人民共和國 主席은 特赦權을 행사한다”고 되어있고 憲法 103條에 의하면 中央人民委員會는 대사를 행사할 수 있는 權限이 부여되고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死刑囚에게 惠澤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刑事訴訟法에서도 特赦와 赦免이 明示되어 있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일은 北韓의 법은 이러한 基準을 이탈하고 있다.

「가장 악랄한 犯罪」에 대해서만 死刑執行을 하게끔 死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北韓憲法의 약 47개 조항이 어떤 경우에는 死刑을 宣告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법은 犯法者를 여섯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1) 國家主權 적대에 관한 罪, 2) 國家管理 侵害에 관한 罪, 3) 國家所有·社會 및 協同團體所有 侵害에 관한 罪, 4) 인신 침해에 관한 罪, 5) 공민의 財產侵害에 대한 犯罪, 6) 군 사상 犯罪 등이다.

刑法의 47개 조항중 어떤것은 單純히 犯法行爲를 하였다는 理由만으로도 死刑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나머지 조항은 수감교화 目的의 勞動 또는 罰金等에 대한 거부 등 社會環境을 惡化시킨다는 理由로 死刑이 執行된다. 刑法 제 47조에는 「당해 犯罪의 社會的 위험성에 관한 問題는 매개 犯罪事件에 있어서 解決하여야 할 基本的 問題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死刑에 처할 수 있는 여섯가지 社會的 위험요인을 明示하고 있다.

1) 人民民主主義 制度를 전복하려 하거나 帝國主義 지

- 배와 資本家 政權을 樹立할 目的으로 하는 犯罪
- 2) 반복 또는 여러번 혹은 職業的으로 범한 犯罪
 - 3) 集團 또는 작당에 의한 犯罪
 - 4) 탐욕 기타 비열한 동기에서 범한 犯罪
 - 5) 특히 잔악한 暴行 또는 잔악한 위계로서 범한 犯罪
 - 6)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보호아래 있는 자 또는 年齡 기타의 事情에 의하여 특히 無援상태에 있는자에 대한 犯罪

가. 國家主權에 대한 犯罪

國家主權敵對에 관한 犯罪는 11개 죄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1개 죄목을 除外한 모든 죄목은 가중처벌조건이 없더라도 死刑에 처할 수 있다. 이 죄목들은 다음과 같다.

- 1) 武裝 暴動 (65 조),
- 2) 外國 또는 外國에 있는 社會的 集團으로 하여금 共和國에 대한 무장간섭 기타의 적대적 行爲 특히 共和國 國家財産의 강점, 外交關係의 斷絶, 共和國과 締結한 조약의 파기등에 이르게 한 자 (66 조)
- 3) 反國家的 目的으로 共和國과 敵對的 關係에 있는 外國 또는 代表者와 연락한 자 (67 조)

- 4) 祖國에 대한 反逆者 (68 조)
- 5) 테러행위자 (72 조)
- 6) 國家에 害를 끼칠 目的으로 國家의 産業, 運輸, 商業, 貨幣流通, 信用制度를 破壞시키는 행위 또는 종전의 소유세를 侵害하는자 (74 조)
- 7) 人民主權을 褫奪, 褻瀆, 약화 또는 反國家的 犯罪을 행하도록 宣傳 선동을 한자 (76, 78 조)
- 8) 間諜行爲 (71 조)
- 9) 日本 기타 帝國主義 지배 밑에서 朝鮮 人民의 自由를 積極적으로 迫害 彈壓한 者 (79 조)

나. 國家管理 侵害에 관한 罪

國家管理에 대한 8개 죄목이 死刑에 처해진다.

- 1) 國家機關, 個人機關 및 공민에 대한 침입 강탈에 參加 하거나 鐵道를 파괴하는 행위 (82 조)
- 2) 兇惡적 소동 또는 비법적 행위를 강요하는 자 (83 조)
- 3) 貨幣, 國家有價證券의 偽造 (84 조)
- 4) 총기 절취 (88 조)

5) 鐵道 파괴 (89 조)

6) 일반 航空 運輸機關員의 職務上 義務를 위반하여 航空機를 損傷 파괴하거나 인명에 손상을 주는 事故를 發生시키는 結果를 유발한 자 (92 조)

7) 民族的 또는 宗教的 불화나 증오를 일으키게 할 宣傳 선동 또는 그러한 內容의 書類를 산포하거나 작성 보관한 자

나. 國家所有, 社會 및 協同團體 所有 侵害에 관한 罪

刑法 제 106 조에 의하면 國家所有, 社會 및 協同團體 所有 侵害에 관한 犯罪行爲 즉 “國家, 社會團體, 協同團體의 倉庫, 기관기업소에서 또는 鐵道 運輸 혹은 水上運輸 도중의 貨물을 연속적으로 또는 組織的 集團에 의하여 또는 특히 大量的으로 약취한자”는 死刑 및 모든 財産沒收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라. 人身侵害에 관한 罪

刑法 제 112 조에 의하면 사람을 殺害한자가 다음의 各號에 該當하는 者로서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死刑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탐욕, 질투 기타 비열한 동기에서 범한 때

- 2) 殺人 또는 중상해의 전과를 가진자가 범한 때
- 3) 多數의 인명에 危險을 줄 方法 또는 殘虐한 手段을 사용한 때
- 4) 다른 중한 犯罪을 감출 目的에서 범한 때
- 5) 被害者가 直系尊屬인 때
- 6) 被害者를 扶養 看護할 義務를 가진자가 범한 때
- 7) 被害者의 無援狀態를 利用하여 범한 때

마. 公民의 財産 侵害에 관한 罪

他人의 財物을 강탈한 자의 범행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死刑에 처한다고 규정짓고 있다.(150 조)

바. 軍사상 犯罪

최고 死刑에 처할 수 있는 軍사상 犯罪는 24개 조항이 있으며, 이러한 行爲가 加重處罰條件에 該當하거나 이적행위를 構成하거나, 전시하에서 일어날 때 死刑에 해당한다.

- 1) 部下가 직속상관의 軍무상 命命을 또는 하급이 상급의 軍무상 命命을 執行하지 않을 때 (266 조)

- 2) 군무상 義務를 執行하는 자에게 反抗을 한 때
(267 조)
- 3) 군무상 義務를 執行하고 있는자를 강요하여 그義務를 違反하게 한 때 (268 조)
- 4) 전사 및 하사관이 許可없이 6시간을 넘는 期間 外出한 경우 (272, 274 조)
- 5) 24시간을 넘는 無許可 外出 (273, 274 조)
- 6) 하급군관, 상급군관 및 고급군관이 部隊 또는 服務場所를 離脫 또는 脫出 (275, 276, 277 조)
- 7) 任命 또는 轉勤命令을 받은자 혹은 出張 또는 휴가중에 있는자가 正當한 事由없이 指定期間에 就任 또는 歸任하지 않은 경우 (278 조)
- 8) 財物을 奪取하거나 기타의 目的으로 武器를 휴대하고 脫出한 경우 (279 조)
- 9) 자기의 身體를 損傷시켜 군무의 執行을 기피한 경우 (280 조)
- 10) 戰鬥場所에서 도주하거나 戰鬥狀態에서 부대 또는 복무장소를 許可없이 이탈한 경우 (281 조)
- 11) 軍服, 기타 軍裝品の 不法讓渡, 抵當 또는 貸與한 경

우 (282 조)

12) 衛兵 勤務規程 및 그 細則違反 (284 조)

13) 軍官이 직권남용 또는 월권행위를 하였을 때 (286 조)

14) 指揮官이 적을 방조할 目的으로 委任된 指揮權을 포기할때 (290 조)

15) 指揮官이 적을 방조할 目的으로 退却時 戰爭 遂行 手段을 파괴 또는 사용 불능케하여야 할 適當한 對策을 취하지 않을 경우 (291 조)

16) 指揮官이 적을 방조할 目的으로 戰鬥 進行에 대한 命令을 違反한 경우 (292 조)

17) 敵에게 포로가될 環境에 처하지 않은자가 포로되거나 전투시에 武器使用을 거부 또는 敵편에 넘어간 경우 (293 조)

18) 沈沒하는 함정을 방기하는 함장 (294 조)

19) 國家的 또는 軍事的 秘密을 누설하거나 機密文書를 분실한 경우 (295 조)

20) 戰鬥 任務遂行 結果에 관하여 허위 報告를 한 경우 (297 조)

21) 戰死者 또는 戰傷者의 소지품을 盜取한 경우 (300조)

2. 刑의 執行·死刑 및 暗殺

가. 公開處刑

北韓의 死刑執行統計에 관한 正確한 情報은 入手하기 어렵다. 과거 北韓의 壓제가 심하였던 시기에 死刑執行이 盛行하였다고 한다. 예를들어 1958-1960사이 9,000명이 黨으로부터 肅清되어 裁判에 의거 殺害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반당분자, 종파주의자, 유해분자 및 反革命분자”로 기소되었다. 최소한 과거에 金日成 統治下의 北韓政府는 人民裁判을 實施하였고 政治的, 反社會的 犯法者들의 말로를 大衆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公開場所에서 射殺하였다.”

예를들면, 北韓은 性道德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脫線者는 ‘부르조아적’가치관의 소유자란 낙인을 받아 때로는 大衆 앞에서 處罰을 받는다. 전에 北

7) 公開處刑은 中共과 韓國에서 大衆들을 服從시키는 威脅手段으로 傳統的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中共의 文化大革命期間(1966-1976)에 公開處刑은 재판제도의 전형적인 표본이었다.

韓 國家保衛部에 勤務한 바 있는 한 귀순자의 말에 의하면 1965년 7월에 함흥시 반룡산 골짜기에서 人民裁判에의해 處刑당한 사람을 目擊한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 피의자는 함흥 사범전문학교 여학생이었으며 약 30명의 영향력있는 당원과 돈을 받고 정을 통했다. 하루는 國家保衛部 요원에게 그녀가 劇場에서 단골을 유혹하다가 逮捕되었다. 당시 北韓政府는 不淨한 情事를 社會主義 革命의 障礙요인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은 國家保衛部에서 성 범행자를 大衆들에 대한 教訓目的으로 公開處刑하라고 지시하였다. 裁判現場에 약 20,000명의 군중이 집결하였으며 오전 10시경 재판관과 피의자가 나타났다. 裁判은 大衆들의 탄핵과 고발로 시작되었다.

오후 2시경 재판관은 道德的 타락을 禁止한 金日成의 교시를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死刑을 선고하였다. 재판관의 선고가 끝나자 군중들은 그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現場에서 총살형에 처해졌다.

최근 人民裁判에 관한 報告는 없다. 그러나 大衆들의 비판속에서 實施되는 公開處刑制度는 1980년대초까지 계속되었다. 최근의 귀순자들이 反逆罪, 殺人, 強姦, 暴動煽動 및 기타 破壞犯에 대한 과거의 公開處刑事例를 진

술한 바 있다. 귀순자중 몇 사람에게 의하면 범법자들은 競技場이나 學校 運動場에 모여있는 군중앞에 끌려나오고 군중들은 罪人에게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돌을 던지며 막대기로 치기도하여, 어떤 罪人은 군중들에게 맞아 죽기도 한다. 被告人은 가끔 美國의 음모와 犯罪에 관련지워 지기도 한다. 北韓의 여러 사회계층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엘리트들은 그런 處罰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死刑執行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處罰條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政府는 法的으로 死刑에 해당하지 않는 범법자에 대해서도 당국이 다른 범법자들에게 見本으로 보이기 위해 임의로 死刑에 처한다. 예를 들어 強姦犯은 刑法에 의해 형량이 死刑에 미치지 않으나 한 북한어부는 1970년대 남포시에서 強姦 죄목으로 두 사람이 公開處刑당한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 두사람의 出身은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에 所屬되어 있었던것 같다.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던 한 귀순자와 지금 海外에 居住하고 있는 전 北韓住民은 엘리트들은 強姦罪로 그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政敵의 暗殺 및 處刑

전 北韓住民의 한사람은 國家保衛部는 金日成 父子의 政

敵暗殺을 위해 訓練된 15-20 명으로 構成된 특수조를 活用하여 왔다고 하였다. 미확인 報告에 의하면 전 부수상 남일은 1975년 10월에 의심스러운 車輛事故로 死亡하였다고 하나 이 특수조에 의해 暗殺되었다고 한다. 미확인 보고에 의하면 國家保衛部는 각도에 특수처형장을 運營하고 있다고 한다. 金日成父子를 誹謗하는 자는 쇠몽둥이로 머리를 강타하여 殺害한다고 한다.

다. 拘禁中 死亡

전에 政治犯 收容所에 收監되었던 죄수 몇사람의 말에 의하면 최소한도 1983년까지는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裁判節次없이 죄수들을 殺害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만약 죄수가 탈옥시도로 逮捕되었을 때 군중앞에서 公開批判을 받고 경비원에 의해 즉시 處刑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1976년 신영환(33세)과 공창덕(28세)이 刑務所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逮捕되어 公開處刑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1986년 北韓을 떠난 전 죄수의 한사람은 1978년부터 1983년까지 복역중에 집중사격을 하는 총성을 들었는데 아마 죄수를 處刑하기 위한 銃擊인것 같다고 하였다. 다른 죄수들에 의하면 그러한 銃擊은 탈옥미수자를 射殺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였다.

平壤美術專門學校 出身의 한사람은 金日成의 초상화를
마루에 펼쳐 놓은 종이에 그린후에 그 그림을 버
림으로써 「反革命行爲」라는 죄목으로 20년형을 宣
告받았으며 1980년대초 刑務所에서 알 수 없는 理由
로 處刑되었다고 한다.⁸⁾

-
- 8) 1987년 2월 20일 南韓에서 입수한 김만철의 진술.
김만철(47세)은 작은배에 家族 10명을 대동하고 1월
20일 日本에 도착하여 南韓에 귀순한 자로 그의 다른
동생은 蘇聯을 비판하였다는 죄목으로 勞動收容所에서 25
년간의 勞動刑을 宣告받고 복역중 死亡.

第6章 拷問과 非人道的 処遇

제 5 조 : 아무도 拷問이나 殘忍한, 非道德的인 또는 屈辱的인 處遇나 刑罰을 받지 않는다.

北韓의 법에는 고문이나 非人道的 待遇에 대한 禁止 또는 그러한 待遇에 대한 刑事的인 제재조항이 없다. 刑事訴訟法 제 108 조에 “被疑者 審問過程에서 兇惡 심문관이 被疑者의 陳述이나 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暴力, 脅迫, 또는 이에 준하는 方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나 實質的으로 이 조항의 준수를 保障하는 절차나 제재가 없는 것 같다. 사실상 자신의 과오를 빨리 告白함으로써 酷毒한 處遇를 면할 수 있다는 선전이 종종 행해진다. 자백을 거부하는 자는 심한 구타를 당하며 配食이 중지되고 중노동을 강요당할 뿐만아니라 엄한 處罰을 받게 된다.

人手된 모든 證據에 의하면 최소한 1980년대초까지 北韓 죄수들은 審問過程에서 定期的으로 拷問당하고 무자비한 處遇를 받고 있었다. 政治犯이 逮捕되면 처음에 그는 保衛部 拘置所에 監禁된다.

지금까지 수집된 여러 죄수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부당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자가 한명도 없었다. 보고에 의하면 拷問과 부당한 處遇方法이 여러가지 있다. 1986년 北

韓을 脫出한 한 政治犯은 1978년부터 1982년동안 收監中 不당한 處遇를 받았다고 하였다. 金正日이 그에게 宣傳用 映畵를 製作토록 强요하기 위해 그에게 給食을 中止시키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경비원은 그가 자지도 쉬지도 못하게 하기위해 양손을 무릎위에 얹고 꼳꼳이 앉은자세로 있도록 하였다. 세시간마다 한번씩 약 2분 동안 서도록 허용하였다. 이렇게 가혹한 處遇는 1년동안 계속되었으며 肉體的인 구타보다 더 고통스러웠다고 하였다. 더구나 處罰의 한 方法으로 그의 식사는 악랄하게 조정되었다. 식사는 쌀, 옥수수, 콩 및 풀잎이나 뿌리로 된 국이었고 소금은 故意的으로 국에 넣지 않거나 제한하였다.

두번째 예는 한 귀순자가 1958년에 保衛部 拘置所에 監禁되어 自白을 강요받았다. 소위 「비행기고문」과 「물고문」이란 것이었다. 拷問者들은 그를 거꾸로 매단채 그의 얼굴에 물을 부어 숨을 쉴수 없게 했다.

세번째 예로 아버지가 保衛部에 勤務하고 있었던 한 귀순자는 1970년대 중반 保衛部 조사대에서 한 죄수가 審問받는 광경을 目擊하였는데 保衛部 요원이 그 죄수의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어 손을 비틀면서 自白을 강요하였고 그 아버지는 죄수가 아픔에 못이겨 悲鳴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네번째 귀순자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까지

북창군에 있는 保衛部 拘置所 경비원으로 勤務하였다. 그가 그곳에 赴任한날 上관이 그를 拘置所 시설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拘置所 內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拘置所는 6개의 監房이 있었고 각 監房에는 10명 정도를 收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마지막 監房은 拷問室이었고 마루 바닥에 변기대신 항아리가 하나 있었다. 監房에는 물이 없었고 收監者는 세수도 하지 못한다. 지독한 악취가 변기 항아리와 목욕도 하지 못한 수감자의 몸에서 풍겨나왔기 때문에 그곳 종사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拷問室은 어두웠고 고무회초리, 작대기, 몽둥이등 拷問道具가 널려 있었다. 收監者들이 規則을 어기거나 審問官들의 協助要求에 不應하면 拷問室로 끌려가 바지를 걸고 각목을 무릎뒤에 바쳐 한시간 동안 앉아있게 한다. 그 苦痛은 표현할 수 없으며 죄수들은 고통에 못이겨 실신하기도 하고 拷問에 못이겨 죽거나 自殺하는자도 있다고 한다.

外國人에 대한 拷問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외의 狀況은 비슷하다. Ali Lameda 라는 베네즈엘라인이 宣傳業務 準備를 돕기위해 北韓으로 왔으나 1967년 平壤에서 그 宣傳 자체가 너무 非現實的이라는 理由로 거부함으로써 逮捕되었다. Lameda는 다른 죄수들이 拷問에 못이겨 悲鳴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는拷問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1년간의 收監期間 동안 그는 全身이 피명투성이였고 체중이 50 파운드나 줄었다고 한다. 미해군 함정 「프에블로」호 함장은 그의 乘務員들과 1968년에 北韓에 피납 監禁되었다. 그는 南韓의 간첩이라는 理由로 심하게拷問 당하고 있는 韓國사람을 보았다고 陳述하였다. 그 韓國사람의 얼굴은 타박상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한쪽 눈알이 튀어나왔으며 그의 팔은 부러져 뼈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다고 하였다.

北韓요원들은 심문과정에서 定期的으로 계속 함장과 乘務員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찼으며 관자 쪽각으로 구타하고 마루 바닥이나 벽에 내동댕이 쳤다. 그후 죄수들은 심한 협박을 당했고 심지어는 殺害 謀議劇까지 벌였다.

그들은 죄수들을 굶주리게 하여 外國人들의 態度를 “교정”하고 自白을 받으려고 하였다. 어떤때는 소량의 식사를 주면서 美軍들의 不誠實한 態度에 대한 벌로 머리카락, 손톱, 치아등을 식사에 섞어 내놓았다. 죄수들은 설사, 壞血病, 폐렴, 간염, 피부병등에 걸렸고 시력장애까지 일으켰다.

第7章 刑事訴訟 및 裁判節次의 公正性

제 3 조 : 사람은 누구나 生命 및 身體의 自由와 安全을 누릴 權利를 가진다.

제 8 조 : 사람은 누구나, 憲法 또는 法律에 의해 許容된 基本的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에 대해 권한있는 國家 法廷에서 效果的인 구제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제 9 조 : 아무도 함부로 逮捕, 拘禁 또는 追放을 당하지 않는다.

제 10 조 : 사람은 누구나, 自身の 權利와 義務 또는 자신에 대한 刑事上 嫌疑에 관해 裁判을 받게 될때, 獨立된 그리고 편파적이 아닌 法廷이 관장하는 公正한 公開審議를 完全히 平等하게 받을 權利를 가진다.

제 11 조 : (1) 刑事上 犯罪에 관련하여 訴追당한 사람은 누구나 公開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밝혀질 때까지 無罪로 추정받을 權利를 가진다. 소추당한 사람은 그 裁判에서 자기를 辯護하는데 必要한 모든 手段을 保障받고 있어야 한다.

(2) 아무도 행위당시에 國內法上으로 또는 國際法上으로 刑事犯罪를 構成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理由로 하여 刑事犯으로서 有罪의 宣告를 받지 않는다. 또한 그 刑事犯罪가 행해졌을 때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더 무거운 刑罰이 지워지지 않는다.

본 章에서는 北韓의 刑事裁判體制에 대한 歷史와 構造 특히 逮捕 및 裁判節次에 관해 討議하고자 한다. 刑事訴訟法에 의하면 訴訟節次가 保障되어 있으나 實質적으로 특히 政治犯에 대해서는 이러한 安全裝置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1. 法律의 傳統

한반도에는 傳統的으로 權力濫用에 대한 強力한 法律的制裁장치가 艱여되어 있다. 朝鮮時代의 行政長官은 地方行政의 長으로서 본연의 任務以外에 判事, 檢事, 警察署長으로서의 부가적인 任務를 수행하였다. 왕조시대의 사법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艱정적인 不利益을 주었다. 즉 被疑者의 犯罪行爲를 추정에 의해 決定하였고 辯護人을 活用할 수 없었으며 拷問에 의한 自白을 강요하는가 하면

法條項의 正確한 適用을 무시하고 罪과를 소급 適用하였으며 團體責任과 處罰을 강제 執行하였다.

36년간의 日帝統治時代에 日本政府는 獨逸形式을 基礎로한 자체 사법제도를 적용하려 하였다. 이 제도는 사법의 獨立性이 무시되었고 政治權力을 제한할 수 없었으며 被疑者에 대한 權利가 保障되지 아니하였다. 日帝의 強壓統治에 대해 많은 韓國사람들은 분노를 느꼈고 특히 1937-1945 동안의 무력충돌기간에 日本의 法傳統을 거부하였다. 結果的으로 1946년초 日本의 統治가 막을 내렸을때 日本의 法傳統은 廢棄되었다.

현 北韓의 法律構造는 基本的으로 蘇聯의 法律制度에 기초를 두고 있다. 北韓의 憲法, 刑法, 刑事訴訟法은 蘇聯과 거의 비슷하다. 1948년 9월 9일에 공포한 北韓憲法은 蘇聯의 1936년에 제정된 憲法內容을 거의 그대로 複寫한 것이다. 北韓이 1950년 3월 3일에 제정한 형법은 蘇聯의 1926年度 刑法과 거의 같고 1950年 3月3日의 北韓刑事訴訟法은 蘇聯이 1923년에 制定한 法과 비슷하다. 1950年 3月1日의 北韓裁判所 구성법은 蘇聯과 그 衛星共和國이 1938년에 제정하였던 法과 유사하다. 1972年 北韓 憲法은 中華人民共和國의 憲法發展에 影響을 받아 수정되었다. 1974년에는 刑事訴訟法과 裁判所 구성법이 이러한 中國의 법 개정에 따라 수정되었다.

2. 刑事裁判制度

北韓의 最高 裁判機關은 中央裁判所로서(憲法 141條) 소장은 최고 人民會議에서 選出되고 判事는 최고 人民會議 상설회의에서 選出된다. 中央裁判所는 모든 하급재판소의 재판사무를 監督하며 제 1부 刑事裁判部, 제 2부 民事裁判部, 제 3부 特別裁判部로 구성되어있다.

中央裁判所는 특히 兇惡한 犯罪事件에 대해 심리를 하며 하급재판소의 判決에 대한 上訴, 抗議 및 抗告事件을 審理한다.

道裁判所는 國家 主權敵對에 관한 罪, 人身侵害에 관한 罪 및 國家所有, 社會 및 協同團體所有 侵害에 관한 罪 등을 제 1심으로 管轄, 裁判한다. 道裁判所는 각道에 1개, 도합 9개의 裁判所가 있다.

道 裁判所는 民事 및 刑事部를 두고 있으며 각부에 재판장인 判事 1명씩을 두고 있다. 道裁判所는 또한 法令에 의해 그 管轄에 속하는 犯罪事件에 대한 審理와 市·郡 裁判所의 判決 및 判定에 대한 上訴, 抗議 및 抗告事件에 대하여 제 2審으로 裁判한다.

市·郡 人民裁判所는 刑事事件, 國家管理를 侵害하는 罪, 國家所有 및 協同團體 所有侵害에 관한 罪, 人身에 대한 罪, 職務에 대한 罪, 個人 所有侵害에 관한 罪, 勞動 法令 위반에 관한 罪, 經濟에 관한 罪, 社會秩序에 관한

罪, 人民保健에 관한 罪등의 事件을 관할 裁判한다. 각 人民裁判所의 判事와 參審員은 해당 人民會議에서 選舉하며 選舉權을 가진 일체의 公民은 判事 또는 參審員이 될 수 있다. 人民 參審員은 통상 14일 이상 裁判에 참여할 수 없다.

군사 재판소 소장은 中央裁判所가 選出한다. 軍事裁判所의 參審員은 자기가 所屬되어 있는 部隊의 軍무자 회의에서 選出되는 軍무원이다. 軍事裁判所는 反革命行爲, 國家安保나 戰鬥能力의 저해행위, 軍기문란, 軍복무규정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을 取扱한다.

刑事事件에 대한 搜查 및 起訴業務는 중앙검찰소, 도시군 검찰소장의 責任이다. 중앙검찰소장은 최고 人民會議가 任命 또는 解任한다. 또한 중앙검찰소의 검사와 道, 市, 郡 검사는 중앙검찰소장이 임명한다. 중앙검찰소는 자기 事業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主席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責任진다.

刑事訴訟法 제 85조 및 96조에 의해 搜查機關의 搜查에 대한 전반적 감시권은 관할 구역의 검사에게 있다.

3. 刑事訴訟法

가. 逮捕 및 搜查節次

北韓刑事訴訟法에 의하면 刑事事件은 個人 또는 團體의 신고, 기관 또는 공무원의 신고, 犯人的 자수, 검사, 예심원 또는 裁判所의 재량에 의해 제기된다.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신고내용이 犯罪의 요건을 구비할 때 검사가 수사착수 거부에 대한 正當한 理由가 없는 이상 搜查에 착수한다. 被害者 역시 刑事訴訟 節次에 따라 個人的으로 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이 訴訟法은 軍官, 예심원 및 勞動·稅務·소방등 제 기관의 檢査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사관들은 범행嫌疑자를 逮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搜查機關의 수사에 대한 전반적 감시권은 管轄 구역의 검사에게 있다. 중대한 刑事事件에 대해서는 檢査소 예심원이 예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國家保衛部 監察官만이 國家主權敵對에 관한 罪, 武裝暴動, 反國家的 目的으로 外國과의 연락, 반역, 적국으로의 脫出, 간첩행위, 테러행위, 國家産業의 파탄, 국가주권 전복을 目的으로 하는 태업, 宣傳 宣動 및 宣傳物의 배포등에 대한 犯罪行爲에 대해 專擔搜查를 할 수 있다.

刑事訴訟法 제 6 조에 의하면 “法令에 규정한 바가 없이는 또 法令에 규정한 節次에 의하지 않고는 逮捕 또는 拘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嫌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48 시간 이내에 해당 管轄구역의 검사 혹은 예심원에게 넘겨야 한다. 제 84 조에 의하면

“搜查機關(警察 및 社會安全部包含)의 搜查期間은 10'日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豫審過程에서 被疑者 또는 被害者가 意議를 가진 事由에 대한 확정을 申請할 때에는 이에 관한 證인이나 감정인이 訊問 또는 證거수집을 거부할 수 없다.(91조) 제 94 조에는 豫審期間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검찰소 검사장의 許可가 있을 때에는 1개월의 範圍內에서 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豫심원이 충분한 證거를 입수하였을 때는 被疑者에 대한 起訴狀을 作成하여 48시간이내에 그 決定을 被疑者에게 통고하게 되어있다.

제 108 조에는 “豫審員은 강제 또는 위협 기타 이와 類似한 方法으로 自白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다. 제 111 조는 신문이 끝난 때에는 被疑者에게 조서를 읽어주며 被疑者는 자기 진술대로 조서의 기재를 보충 또는 정정할 것을 要求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 141 조에는 수색은 “緊急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晝間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색시 사건에 직접 관련있는 물품만을 압수할 수 있다. 裁判所는 刑事事件을 法廷에서 審理하기 전에 검사가 제출한 起訴狀의 승인여부, 변호인의 참가여부 및 증인소환 여부등을 결정한다.

나. 裁判 및 抗辯

北韓 憲法 제 138 조에 의하면 “ 裁判은 公開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保障한다 ” 그러나 “ 법이 정한데 따라 裁判을 公開하지 않을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刑事訴訟法 제 16 조에 의하면

“ 모든 公判은 公開한다. 다만 國家的 秘密을 보호할 必要가 있거나 사회풍기를 문란하게 할 虞가 있을 때, 또는 公民의 個人秘密을 보호할 必要가 있을 때에만 裁判所의 이유있는 결정에 의하여 公判의 전부 또는 일부의 公開를 禁止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에 의하면 公開를 금지한 때에도 “ 判決의 宣告는 반드시 公開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4 조에 의하면 裁判所의 審理는 起訴狀 낭독으로 시작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起訴狀의 承認 여부를 묻게 되어있다.

제 223 조에 의하면 訴訟記錄에 明示되어 있고 또 公判에서 審理한 증거에 의해서만 判決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 재판원은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事件의 審理에 기인한 자기의 확신에 의거 ” 그 刑事事件의 증거내용을 채택한다. 모든 裁判은 判事 1명과 參事 2명으로 進行한다.

刑事訴訟法 제 250 조에 의하면 판결 파기의 이유로 되는 법령 위반 사항은

- 1) 불완전 또는 부적당한 審理
- 2) 訴訟手續의 형식에 관한 本質的 위반
- 3) 法令 위반 또는 부당한 法令의 適用
- 4) 判決의 현저한 不公正

등으로 되어 있다.

중앙재판소장 및 검찰총장은 어떠한 事件이라도 비상 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事件의 送付를 請求할 수 있고, (264 조)도 및 地方檢察所 검사는 관할 人民裁判所의 判決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242 조)

刑事訴訟法 제 275 조는 判決書 謄本을 社會安全部 및 기타 執行機關에 보내야 하며 判決執行의 감시는 검사가 實施한다고 되어 있다.

4. 訴訟節次의 實態

가. 黨의 統制

전 北韓住民과의 인터뷰와 學術資料에 의하면 訴訟節次는 法律규정과는 실제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黨이 全般的으로 刑事裁判 制度를 統制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社會安全部가 사법제도의 중앙기구이며 가장 核心的인 법 執行機關으로서 교화시설을 運營한다. 社會安全部는 체포 영장 필요 여부를 決定하며 事件의 起訴 여부와 각 個人을 裁判에 회부하지 않고 處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事件이 公開되지 않는 이상 被疑者는 裁判 또는 審理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處罰받는 예가 많다. 社會安全部는 政治事件인 경우 裁判에 회부할 것을 결정할 때 당해 事件을 國家保衛部에 이첩하며 保衛部가 處罰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政治犯들은 裁判이나 公正한 節次없이 處刑당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최소한 過去에는 이러한 處刑이 軍중들에게 범법자들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 公開的인 軍중 재판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한다.

범법자들이 수감되면 그들은 다른 범법행위가 추가되어 起訴되기 전에는 정당한 절차와 公正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탈출을 기도하여 체포되었을 때 軍중들 앞에서 批判을 받고 公開的으로 處刑된다.

나. 司法 獨立性不在의 歷史的 傳統

司法의 獨立性은 現정권하에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

으며 끝내는 폐지되었다. 1940년대 종반과 1950년대 초반에 판사는 勞動者, 農民 및 事務職員들 사이에서 선정되었다. 그들 중 법에 관한 訓練을 받은자는 거의 없었다. 1950년대 후반에 판사와 검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식 법원리를 공부하고 그들의 判決은 革命戰線 시각에서 決定하도록 강요받았었다. 수많은 판사들이 “反黨 宗파주의자”로 몰렸고 “黨 指導體制에 반대”하고 “人民과 人民裁判所와의 直接的 關係”를 반대했으며그림으로써 “階級的 觀點을 벗어난 獨立的 司法制度를 設立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그 직위에서 추방되었다. 이러한 “반당종파주의자”들은 “法規를 遵守”하고 “人權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人民의 적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혹독하게 비난받았다.

刑法 73 조에 의거 수많은 판사 및 법관들이 “國家產業” 侵害 禁止를 위반한 嫌疑로 刑罰을 받아 왔다. 판사 및 法行政에 責任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定期的인 肅清이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1958년 12월에 司法行政을 擔當하고 있는 司法 執行機關이 통합되었다. 司法省이 해체되었고 司法行政에 대한 統制權限은 最高 裁判所로 이관되었다. 한 北韓 法律家は 사법성 해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통합은 司法制度 發展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裁判과 裁判節次에 대한 중앙정부의 監督과

統制를 強化시킬 뿐만아니라 裁判을 통해 地方裁判所가
융통성과 正確性을 갖고 黨政策 및 規約을 實現시키므
로서 法秩序를 통합하고 社會主義 建設을 가속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였다.

다. 司法獨立을 妨害하는 법적 基準

司法制度의 黨指令에 대한 服從은 여러가지 면에서 法
律에 표명되어 있다. 憲法에는 一般的으로 司法制度의 獨
立에 관한 條項이 표명되어 있으나 세부 조항과 실제
運營面에 있어서 獨立性을 부정하고 있다. 北韓 憲法 제
140 조에는 “裁判所는 裁判에서 독자적이며 裁判活動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遂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과 “중앙인민위원회는 司法, 檢察 기관
사업을 指導한다”라는 조항이 상반되고 있다. 또한 憲
法 142 조에 의하면 중앙재판소는 “자기 事業에 대하
여 최고 人民會議,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主席 및 중
앙인민위원회 앞에 責任진다. 道(直轄市)裁判所, 人民裁
判所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人民會議 앞에 責任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比較的 짧은 任期로 인해 판사들의 獨立性이 侵害당
하고 있다. 예를들어 최고 裁判機關인 중앙재판소 소장
은 최고 人民會議에서 選出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人

民參審員은 최고人民會議 상설會議에서 選舉한다. 最高人民會議 代議員과 마찬가지로 중앙재판소의 判事 任期는 4년이다. 道人民會議 代議員의 任期와 判事의 任期역시 4년이다. 또한 人民裁判所의 判事와 民參審員은 해당 人民會議 任期와 같이 2년이다.

이러한 짧은 任期로 인해 裁判所 内部에 혼란이 오게 된다. 공식적인 判事 이동 現況에 의하면 이들은 법정 기간보다 짧은 任期 동안에 교체된다. 最高人民會議는 중앙재판소 소장을 소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刑法 제184조에 의해 부당한 判決 또는 判定을 한 裁判官은 2년 이상의 懲役に 처하므로써 재판관의 獨立性을 侵害하고 있다. “부당한 판결”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의견해와 다른 判決을 내린 裁判官은 투옥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形式的으로는 判事に 대한 형사 소추의 제기는 最高人民會議 상임위원회의 承認을 얻어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라. 辯護權의 保障缺如

搜查期間동안 被疑者는 辯護士와의 접촉이나 家族의 면회가 許容되지 않는다. 事件搜查가 끝나고 事件 記錄이 裁判所로 넘어온 이후 辯護人의 役割이 시작된다고 刑

事訴訟法 제 174 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검사로 부터 사건기록이 재판소로 넘어온 이후에는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辯護人에게는 被訴者와 協議할 기회를 주며 記錄의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를 준다.”고 되어 있다.

刑事訴訟法 제 41 조에 의하면 辯護士 또는 被訴者의 근친자 혹은 被訴者의 소속단체의 대표자는 辯護人이 될 수 있으며 또한 裁判所의 許可를 얻어서 그 외의 사람도 辯護人이 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제 42 조에는 검사가 參加할 때나 被訴者가 身體的인 결함으로 그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할 때 辯護人을 반드시 參加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政府에서 일하는 모든 辯護人들은 政府를 위해 奉仕하는 사법 일꾼으로 간주된다. 현재 북한에서는 市民이 어떻게 辯護人을 찾을 수 있는지 정확한 情報가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辯護人과의 상담을 원할 때 辯護人들이 所屬되어 있는 “辯護士 會館”에 가야하나 被訴者는 원하는 辯護人을 선택할 권한이 없었다. 辯護人들은 個人的으로는 어떠한 사건도 수임할 수 없다.

辯論人은 被訴者를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裁判에서 정확한 判決이 내려질 수 있도록 裁判所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적극적인 辯論은 사실을 왜곡하고 裁判所를 속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辯論人은 통상 被訴者의 有罪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刑罰을 경감시

키기 위해 사실만을 제출한다. 刑事事件을 수임한 辯護
士는 자신을 “黨을 위한 辯護人”으로 생각하고 있으
며 被訴者보다 黨을 위해 그의 職務를 수행하도록 지
시받고 있다. 예를들어 그들은 被訴者의 진술 사실을 비
밀에 붙이는 것은 “不合理”하다고 公式 司法機關으로
부터 항상 지시를 받는다. 辯護人의 任務는 被訴人을 설
득하여 그의 有罪事實을 告白하도록 하는 것이다.

金日成은 辯護人들을 “ 부르조아적 인도주의 법칙을 옹
호하고 있는 자 ”라고 비난해왔다.

5. 罪刑法定主義와 遡及法

世界人權宣言 제 11 조에 의하면 “ 아무도, 행위당시에 國
內法上으로 또는 國際法上으로 刑事犯罪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理由로 刑事犯으로서 有罪의 宣告를
받지 않는다. 또한, 그 刑事犯罪가 행해졌을 때 적용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더 무거운 刑罰이 지워지지 않는다 ” 고
되어 있다.

北韓 刑法 제 5 조 및 256 조에도 위 규범이 明示되어 있
다. 刑法 제 5 조에 의하면 “ 罪를 범한자는 그 행위 당
시의 法令에 의하여 責任진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56
조는 이 概念을 수용하여 重婚과 축첩에 대한 刑罰에 예
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

시행전에 成立하여 계속하는 사실에는 본조를 適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조항에 의하면 北韓의 立法機關은 理論的으로는 處罰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事例에 대한 報告는 입수된 바 없지만 刑法 제 17조에 의하면 1950년 3월 3일에 채택된 법조항에 1945년 8월 15일 전에 행한 犯罪 행위가 社會的 위험성이 있을 때는 處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刑法 제 60조에 의하면 反國家的 犯罪 및 “朝鮮民族解放運動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행위”는 現政府樹立 이전에 發生한 행위일지라도 그 效力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 또한 刑法 제 9조는 유추해석금지라는 일반적 刑法理念을 벗어나 刑法上 罪刑의 유추해석을 적용, 處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犯罪的 행위로서 그에 直接 該當하는 규정이 본 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 법중 그 중요성과 種類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罪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責任의 기초와 犯罪 및 刑罰을 정한다.”

檢事長은 이 조항의 適用을 檢事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裁判所에 가장 비슷한 罪에 관한 조항에 의거 刑罰을 정하도록 命할 수 있다.

第 8 章 拘禁 및 投獄

제 9 조 : 아무도 함부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北韓 政府는 北韓에는 형무소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형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監獄」 대신 「特別 獨裁 對象 區域」이라는 名稱을 使用하고 있다.⁹⁾

獨裁라는 用語는 프로레타리아 獨裁를 의미한다. 「對象 區域」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수용된 잘못된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그곳에서 사회주의 국가생활에 대한 義務와 責任을 教育시키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는 여러가지 監獄施設이 있다. 市·郡에 유치장, 교화소, 노동교양소, 소년 교양소, 특별독재대상구역, 149호대상 지역 등이 있다.

註 9) 監獄 대신에 이와 같이 완곡한 용어의 사용은 러시아 革命精神에 의거하고 있는 것 같다. 1917년 볼셰비크 革命以後 「監獄」이라는 用語는 廢止 되었다. 그 대신 감옥을 「자유박탈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부옥이라는 용어 역시 廢止되었고 이는 人間의 理念과 性格을 矯正시키기 위한 것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다. 北韓은 이러한 소련의 事例를 使用하고 있다.

1. 監獄行政

北韓의 監獄行政과 法執行에 관한 대부분의 業務는 社會安全部 所管이다. 社會安全部는 搜查過程에서 犯行事實이 政治的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事件은 國家 保衛部에 이첩한다. 國家保衛部는 政治犯에 대한 監視, 探知, 逮捕, 拘禁 및 處刑에 대한 責任을 지고 刑事裁判 制度 領域 밖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社會安全部나 國家保衛部는 廣範圍한 監視와 統制網을 維持한다. 社會安全部와 國家保衛部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名稱과 任務로 바뀌었다.

즉, 1947 : 北朝鮮 人民委員會 保安局

1948 : 內務省 內的 特殊情報處

1949 : 內務省 政治保衛局

1951 : 社會安全省. 한국 동란기간에 정부는 첩보 및 법집행 強化를 위해 內務省으로 부터 分離하여 社會安全省을 設置, 社會安全部 業務遂行

1952 : 內務部 社會安全局. 社會安全省이 解體되어 그 업무가 內務部 社會安全局으로 還元

1962 : 社會安全省 부활

1972 : 社會安全部. 新憲法에 의거 독립기관이 創設되었고 法執行과 安保問題 專擔, 社會安全部 밑에 現 國家保衛部の 役割을 擔當하는 政治保衛局 設置

1973 : 김일성의 시시에 의거 社會安全部는 政治保衛部와 社會安全部로 分離

1982 : 政治保衛部는 國家保衛部로 變更. 1982年4月15日 最高人民會議는 保安制度를 再編成하였다. 어떤 資料에 의하면 最高人民會議는 國防부와 2個 法執行機關(國家保衛部, 社會安全部)을 정부원 기구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로 이관하였다고 한다. 어떤 資料에 의하면 이러한 業務는 정부원에 아직 남아 있다고도 하고 1986년 정부원으로 還元되었다고도 한다.

2. 刑務所

아래 記述된 北韓의 각종 監獄施設의 類型은 여러가지 情報과 南韓政府로부터 입수한 資料이다. 南韓에서 입수한 資料의 신빙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다른 諸元과 一致된 부분만을 記述하였다.

가. 유치장

輕犯者 및 中級의 犯法者는 교화소로 이관되기까지 시·군소재 유치장에 구류된다. 예를 들어 輕微한 犯法行爲란 김일성 사진이 掲載된 신문을 깔고 앉거나 하

는 김일성에 대한 불성 및 태만행위를 말한다. 中位級에 속하는 犯罪모는 黨이나 김일성의 政策을 批判하는 行爲를 말한다. 非政治犯들도 이곳에 拘留한다.

나. 69號 勞動敎化所

거의 모든 市·郡에 設置되어 있고 100~200名을 收容한다. 이 收容所에는 輕犯者를 비롯하여 특별한 犯罪를 犯하지는 않았으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收容하는 데 嫌疑자는 社會安全部에 의해 適法한 裁判 節次없이 색출된다. 收容者들은 3個月에서 1年程度의 強制勞動에 處해진다. 69號라는 名稱은 政무원령 第69號(敎化所 設置에 관한 규정)를 말하는 것 같다.

韓國의 國土統一院이 49號 교양소에 대한 情報을 提供하였으나 이는 69號와 거의 비슷하다. 통일원이 제공한 情報에 의하면 49號 교양소는 2個郡에 하나씩 있다고 한다.

나. 勞動 敎養所

500名에서 2,500名을 收容할 수 있는 規模의 勞動敎養所가 12個 내지 16개 정도 있으며 成人, 靑少年의 區分없이 재판후 또는 재판없이 이곳에 收容된다. 이곳 收容者는 竊盜, 強盜, 殺人미수, 강간, 정치범의 자식이거나 중국 또는 소련으로 脫出을 시도한 자들이다.

최근에 귀순한 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정치 노선 비판자들 역시 이곳에 收容된다고 한다.

나. 少年 教養所

학생중에서 행동이 不良하거나 태만한자를 裁判없이 6個月間 이곳에 收容한다. 廣範圍하고 高조적인 教化와 肉體的인 重勞動에 시달리게 한후 학교로 복귀 시킨다.

各 道에 하나씩 있으며 平壤 近郊에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 特別獨裁 對象區域

北韓에 最少限 12個의 特別獨裁 對象區域이 있다고 한다.

所在地는 다음과 같다.

도	군	리 또는 위치
함경북도	온 성	창평리, 풍천리, 동포리
〃	회 령	굴산리, 백산리
〃	경 성	수을리
함경남도	요 덕	요덕면
〃	정 평	불 명
평안북도	용 천	백마강 상류

도	군	리 또는 위치
평안북도	영 변	불 명
자 강 도	회 진	//
함성남도	덕 성	리망지리 (23號 수용소)
//	개 마고원지역	5 호 수용소
평안남도	북 창	석산리 (탄광지역) : 17 호 수용소
//	개 천	비호산 (개천탄광)

從來 8 個 區域에서 1982 年 金正日 批判者 및 정
 직 숙청운동에서 적발된 자 600 ~ 15,000 名을 收容하
 기 위해 4 個 區域을 追加로 設置하였다.

正確한 수용소의 위치를 알기는 어렵다. 1980 年代初
 聯合軍 司令部가 航空 또는 衛星 寫眞을 展示한 바 있
 는데 同 司令部는 北韓에 있는 미확인 시설이 집단 수
 용소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사진 자료에 의하면 鑛山,
 山林속의 野營場, 重 또는 輕工業 施設 또는 其他 工
 場施設과 같은 「표시」나 확인할 수 있는 標識이 없
 었다. 큰 道路나 混雜한 交通, 大規模 水源池나 發電
 所 施設 등의 흔적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비
 주어 볼 때 이 施設들이 수용소로 判斷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진을 직접 입수하지 못하였다. 이들 수
 용소의 위치나 存在與否는 여러가지 입수된 진술에 의

해 確認되었다. 신에 4년동안 수용소에 收監되었던 한 北韓 住民의 말에 의하면 그가 收容되었던 곳은 上述한 12개 수용소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자기가 수용되었던 곳은 평양근처에 있는 「6호 수용소」 혹은 「남북도 수용소」였다고 證言하였다. 자강도와 양강도에 수용소가 2개 더 있다는 증거는 있지만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Scalapino 教授와 李教授는 그들의 著書 [Communism in Korea]에서 이 수용소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수용소는 8호 수용소와 149호 대상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政府가 命名한 것이며 8호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더 重犯者로 간주된다. 그들은 政府에서 供給하는 食糧에 依存하고 있고 그들 자신이 생산하는 물건은 국가에 귀속된다. 149호 對象地域에는 家族과 함께 수용되며 생계는 自給自足에 依存하고 있다.”고 記述되어 있다.

特別 獨裁 對象區域에 수용되고 있는 人員數는 여러 情報資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귀순자 증언과 위성 사진에 근거를 두어 약 15만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li Lemada 에 의하면 같이 수용되었던 죄수들이 알고있는 몇개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平均人員을 전체 수용소 數로

곱해서 산출한 수가 韓國에서 제공한 情報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가 수용되어 있던 사리원의 수용소에서만도 6,000 ~ 8,000 名의 收監者가 있었으며, 그 中 1,200 名 程度가 病으로 隔離 收容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최근의 귀순자들을 통해 입수된 정보에 의해서도 特別獨裁 對象區域의 收監者들의 數에 대해 비슷한 統計數字가 나왔다. 서울에 있는 北韓研究所는 約 115,000 名 정도로 推算하고 있다. 北韓 監獄에 대한 調査가 어렵기는 하나 收監者들의 수는 숙청 정도에 따라 변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分析에 의하면 수감자중 주요인사 몇명이 석방되고 공직에 복귀 하였다.

特別獨裁 對象區域에 수용된 대다수의 죄수들은 노동당원이었거나 影響力있는 政治家와 그 家族들이며 김일성 가족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외에 친일파, 반혁명적 자본가 및 전 지주들이다. 그들은 裁判이나 正當한 起訴節次 없이 수용되었다. 전에 일본, 한국 및 북한 언론매체가 정치적 지도급 인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사람들이 이 收容所에 수감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들 중에서는 김창봉, 김봉학 김도만 등이 있는데 이들은 1984년 국가 전복 음모를 꾸민 혐의로 당에서 肅清되어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으로 압송되어 개천탄광 근처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 되었다. 그들은 수용소에 도착할 무렵 이미 굶주림과 추위, 병 등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노동당 政治局委員이었던 이용무는 1977년 10월 반혁명 분자라는 죄목으로 숙청되었으며 당 중앙위 후보위원이면서 秘書를 歷任한 류창식은 1975년 10월에 숙청되었다.

전 부수상이며 정치국원이었던 박금철은 1972년 숙청되어 그의 가족과 함께 경상군의 수용소에 감금 되었다. 南韓의 地下活動을 責任졌던 허학봉은 1969년 1월에, 당비서였던 김광협은 1967년 12월에 숙청되었다.¹⁰⁾ 이외에도 많은 전직 당·정 고위간부들이 수용되어 있었으나 그들의 이름을 모두 確認할 수는 없었다. 귀순자들이나 다른 정보제공자들은 이미 알려진 수용자들 외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므로써 그들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뿐 만아니라 수용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處刑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記述은 6개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證言과 다른 귀순자들의 面談을 통해 입수된 것이며 수용소의 비참한 環境과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한 박해에

註 10) 1945년 김일성이 政權을 장악한 이래 그를 반대하거나 그의 指導體制에 도전할 우려가 있는 인사들을 組織적으로 除去하기 시작하였다.

대하여 모두가 일치된 견해를 피력하였다. 政治犯들은
외딴地域에 있는 特別獨裁對象區域으로 압송 수감된다.

대부분의 特別獨裁對象區域은 鑛山地域 근처나 접근이
困難한 중국 국경부근의 산악 오지에 있으며 3-4 m
높이의 철조망이 여러겹 둘러쳐져 있는데다가 무장 경비
대와 경비건의 삼엄한 순찰뿐 아니라 사망에 시뢰가 매
설되어 있다. 죄수들은 비좁고 불결한 감방이나 토막
속에 갇혀 있다.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서만이 부욕, 처형, 추방 또는 관
직에서 파면된 인사들의 狀況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마저 많은 인사들이 공식적인 발표없이 행방을 감
추었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렵고 정확성이 缺如되어 있
다. 1972年以前의 사건은 北韓當局이 裁判結果를 發表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는 입수하기가 容易하다.

죄수뿐 아니라 그 가족도 이 수용소에 감금되고 있
다. 報告에 의하면 죄수들의 가족들은 재산과 공민증
을 입수 당한다. 子女들은 就學도 許容되지 않고 訪
問客의 면회나 우편 기타 어떠한 形態의 인락도 許容
되지 않는다. 모든 市民으로서의 權利는 停止되고 醫
療保險이나 日用品의 配給을 包含한 모든 國家로부터의
혜택을 박탈당한다. 그들은 황폐된 土地를 개간하여 그
收穫으로 延命하고 있다. 그들은 集會를 形成하여도 處
罰을 받는다. 脫出을 시도하거나 불평불만을 한 자는

심한 구타를 당하고 處刑된다.¹¹⁾

刑期를 마치고 나온 사람이나 6개의 수용소에 관한 證言을 출판한 사람들은 일치되게 죄수들이 強制勞動에 投入되며 주로 탄광 채굴작업이나 벌목, 관개작업에 동원된다고 주장했다. 일단 이 특별 독재 대상 구역에 들어오게 되면 뚜렷한 服役期間이 決定되지 않은채 처형, 고문, 질병, 기아등으로 죽어간다.

바. 149 號 對象地域

內閣決定 第 149 號는 불순자를 외딴지역으로 추방할 것을 決定한 것으로서 이 決定에 따라 불순자가 추방된 지역을 149 號 對象地域이라 한다. 이 추방은 두 과정을 거쳐 推進되었다. 우선 149 號 對象地域으로 選定된 地域의 원 거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 시킨다. 농부였던 귀순자는 약 500가구의 사람의 배천군에 있는 문산, 금산, 봉화, 장정, 연북도등의 5개지역에

註 11) 本 研究는 자세한 調査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많은 사건을 目錄을 收錄하지 아니하였다. 蒐集된 情報에 의하면 어떤 관료들은 파면 당하였거나 숙청당했다고는 하나 많은 인사들이 투옥되었거나 다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믿어진다. 이들중 계응태, 서윤석, 최광같은 사람은 「再教育」을 받고 관직으로 復職되었다.

서 추방되는 것을 보았다고 證言하였다. 內閣決定 149 號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은 그 地域이 非武裝地域에서 너무 가까와 安全한 地域으로 移動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한 거주인의 말에 의하면 추방된 사람들은 그 가족이 越南하였거나 前에 지주나 반혁명인사였으며 越南 可能性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두, 셋 정도의 전직 당간부 가족을 除外하고는 모두 야간열차로 이송되었고 가재도구는 화물열차로 그후에 輸送되었다. 인적이 없는 텅빈 마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으므로 당국은 다른 地域에 있는 住民들을 이 地域으로 強制 이동 시켰으며 그중 70%가 함경도에서 왔다. 강원도 철원군 신탄지역의 벌목장 운전수였던 또 다른 귀순자는 1969년부터 1983년사이에 약 400 가족의 이주를 도왔으며 한 집단을 非武裝地帶로부터 이동시키고 또 다른 家族集團을 비무장지대로 이동 시켰으며 때로는 한 가족이 여러차례 강제로 옮겨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귀순자의 말에 의하면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던 한 마을에 60가구가 살아있었는데 그중 15명이 실종된 사실을 안다고 하였다.

특별 통제 대상구역과 달리 이 地域에는 철소망이나 경비초소가 없다. 부락민들은 그 지역사회안전부의 事前 許可를 얻었을 때에 한해 부락을 잠시동안 떠날 수

있고 다른 지역주민들의 방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락을 영원히 떠날 수가 없다. 그들이 소시하고 있는 공민중에는 「149號」라는 도장이 찍혀있다. 149號 대상지역은 주로 산간오지의 탄광이나 벌목지역에 선정되며 평양과 개성으로부터 50 km 이상 休戰線과 海岸地域으로부터 20 km 이상, 그리고 다른 主要都市에서 20 km 이상 떨어진 곳에 선정된다. 이 地域으로 추방된 사람수는 대략 15,000 家口 70,000 名 정도로 추산되었다.

사. 敎化所

한국의 카톨릭과 개신교 교단으로부터 입수된 報告에 의하면 宗敎人, “資本主義的 知識人” 및 政治的 反對者들은 “思想이 불온한” 者로 낙인 찍혀 敎化所에 수용된다고 하였다. 이 敎化所는 精神病院과 비슷하다. 이들은 공정성 보장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없이 強制的으로 拘禁된다. 2 個郡에 하나 정도 있는 敎化所는 100명에서 200명을 수용하고 있다. 북한에는 150 개 군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산한다면 모든 敎化所에 수용되어 있는 “患者”의 數는 7,600 ~ 15,200 명에 달한다. 그들중 실질적인 정신질환자도 있기는 하다. 이 敎化所에 관한 特殊 情報의 입수는 매우 어렵다. 宗敎人 및 資本主義者들의 실종사건으로 비추어 볼 때

오늘날 敎化所의 規模는 判斷하기 어렵다.

3. 拘禁後의 狀態

수천명에 이르는 죄수와 수십개의 감옥이 北韓에 散在하고 있으나 특히 情報入手가 어렵기 때문에 그 狀態를 概括하기는 어렵다. 다음에 記述한 狀況은 주로 특별독재 대상구역과 일반감옥에 대한 政策을 參考하였다.

上述한 여러가지 고분외에 복종과 순응을 강요하기 위해 식량과 의류의 지급등, 최소한의 生活環境마저 박탈하고 있다. 죄수들에게 許容되는 음식의 양은 그들의 行動과 출신성분에 따라 결정된다. 엘리트階層의 가족이나 고위관료들에게는 500g 이상의 식량과 가끔 肉類 및 당분을 供給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죄수들은 매일 300g 이하의 실이 나쁜 食糧을 供給받는다. 食事は 쌀, 옥수수, 콩으로된 主食과 우기지국이나 풀뿌리등으로 연명하고 있다. 報告에 의하면 죄수들에게는 통상 간장의 供給을 許容치 않고 염분섭취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 죄수가 規律을 어기면 음식량은 형편없이 감소된다. 많은 감옥이나 수용소에서는 自給自足形式으로 生産한 食糧에 依

存하고 있다.¹²⁾ 그러나 대개 그 지역은 거치른 바위 산이나 자갈밭으로 되어있고 계절적으로 植物成長期間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수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수용소 감방은 부식절하고 비위생적이다. 전 엘리트계층에 속했던 죄수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독방에 수용되어 있었으나 일반죄수들은 30~50명이 겨우 누울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속에 集團收容되어 있으며 변기 대신에 땅을 판 구덩이가 하나 있을 뿐이다. 심지어 어떤 감옥은 감방시설이 建物이 아니어서 죄수들은 진흙으로 건조된 움막이나 나무와 바위로 얼기설기 엮은 움막에서 生活한다. 의복은 기껏해야 1년에 한번 낡은 軍服이 支給되며 귀순자들의 말에 의하면 죄수들이 누더기를 입고 걸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심각한 榮養缺乏과 부적당한 生活環境, 남부한 의복상태는 엄격한 노동예정표에 의해 더욱 惡化되고 있다.

註 12) 內閣決定 第 14 號 (1952. 1.30)에 의하면 社會安全部가 管轄하고 있는 수용소의 食糧은 自給自足으로 解決하고 內閣決定 第 24 號 (1952. 2.21)에는 죄수들에게 農耕地를 耕作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狀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죄수들로 하여금 耕作을 시키는 政策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죄수들은 하루에 10~12시간 노동을 할 뿐 아니라 수로 탄광이나 벌목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더구나 할당된 작업량을完遂치 못할때는 處罰을 받게 되며 만일 일을 게을리 했다고 判斷되면 부릐을 꿇고 앉은 자세로 종일 있어야 하는데 3시간마다 2분정도 쉼만 설 수 있다. 탈출을 시도하는 죄수들은 現場에서 총살당하며 귀순자들이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였다 한다.

典型的인 收容所 生活 日課表

시 간	일 과
오전 5:00	강제기상
오전 7:00	노동현장 도착(탄광)
오후 6:00	수용소에 돌아와서 식사, 교화모임 등에 參加
오후 9:00	취 침

4. 外國人의 拘留

몇가지 人手된 報告에 의하면 外國人들도 北韓에 감금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은 강압에 의해 그들의 所屬國 대사관원들과의 접촉도 금지된 채 감금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일본, 중국, 프랑스, 구라파 및 약간의 아랍계 外國人들이 있다. 拘禁된 대부분의 外國人들은 북한이 1970년대말 평양의 技術開發 및 간접활동 그리고 북한사회의 위대성을 증언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강제로 납치한 “귀순자” 들이다.

예를들어 1978년 남한의 한 영화감독과 여배우가 김정일의 영화제작업무를 돕게하기 위해 홍콩에서 北韓要員에 의해 납치되어 北韓으로 압송되었다. 그들은 1978년 부터 1982년까지 4년동안 북한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억류되었다. 그들은 결국 김정일의 信任을 받게되어 그후 구라파를 경유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다. 그들은 평양에 있을 동안 북한 정부를 돕도록 하기위해 납치된 여러 外國人들을 만났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1978년 12월 그들은 평양에 있는 철조망으로 둘러쌓인 초대소에 한 요르단 여인이 감금되어 있었으며 가족에게 편지연락마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1979년 7월에 케터린 홍이라는 21세의 여성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마카오에서 살고 있었다. 두 여자는 1978년 6월에 4명의 북한요원에 의해 선박편으로 북한에 납치되었다. 홍(후에 공용 엠으로 판명)은 그녀와 또 다른 여자(후에 소묘친으로 판명)가 북한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평양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뛰어들었으나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그들

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 당국에 신변을 인계하였다.
홍은 구속되었으나 다른 여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1978년 세쌍의 일본인들이 일본 혼슈 서해안에서 납치되었다. 당시 일본 경찰은 피납인에 대한 신원에 의심을 가졌으나 납치자들이 평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물적증거를 입수하게 되었다. 1987년 바레린에서 방콕으로 가는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에 폭탄을 장치한 혐의로 체포된 김유미는 한 일본여성이 그녀에게 일본어와 일본사회에 관한 教育을 시켰다고 證言하였다. 그 일본 여성은 1979년 일본 해안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고 한다. 그 일본 가정교사의 인상은 일본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던 여자 중의 한사람과 비슷하였으나 김유미는 행방불명된 여자의 사진을 보고 진위여부를 가려내지 못하였다.

스웨덴에서 발간된 한 책자에 의하면 4명의 레바논 여성 일단이 평양으로 납치되었다고 한다. 報告에 의하면 그들은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및 다른 국가로부터 온 여자들과 같이 간첩학교에 감금 되었다. 레바논 여자중들은 동구권을 통해 탈출에 성공 하였으며 1979년에 베이루트에 돌아갔다. 그 책은 탈출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쓰여졌다. 또한 남한 및 미국계 한국인들도 납치 당했다고 한다. 1977년 부활절 休暇期間에 고상문이라는 남한 사람이 노르웨이 오슬로를 여행하였다. 그는 짐을 분실하여 택시 운전사에게 남한 대사관으로 가자고 하였으

나 택시 운전사는 실수로 북한 대사관으로 갔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당국은 그후에 북한 외교관이 고상분을 스톡홀름을 거쳐 평양으로 데리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同年 6月 30日 평양방송은 고는 “영웅적으로 북반부에 왔다”고 報道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스웨덴의 소식통에 의하면 고의 북한행은 自意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같은 달인 1979年 6月 정련섭이라는 22세의 한국계 미국군인이 독일연방공화국에서 服務中 行방 불명이 되었다고 스웨덴 소식통이 發表하였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신자였고 1973年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그후 미군에 入隊하였다. 판문점 회담에서 수주일동안 이 問題에 대한 질문에 북한당국은 回答를 거부하여 오다가 同年 8月에 정은 “도발적인 미제 군대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북한으로 脫出하였다고 公式 發表 하였다.

기타 동족 납치시도 미수사건이 여러번 있었다. 1979年 서울 북한 외교관이 모스크바에서 開催되었던 국제조류회의에 參加하였던 남한의 학자 원병오씨를 납치하려 하였다. 한 태국 주재 남한 실업인이 1987年 북한의 납치시도를 겨우 모면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수많은 한국계 일본인이 조총련계 요원에 의해 감금되었다고 報告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납치를 모면한 바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공하였고 일본 당국은 가끔 이러한 정보를 接受하므로써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가장 심각한 問題는 이미 알려진 6,637 명의 북송 일본인 처이다. 그들은 한국 동란후 일본에서 북한으로 돌아갔다. 일본 당국에 의하면 그들중 1,828 명이 아직도 일본 국적을 保有하고 있다고 한다. 北韓 政府는 그들에게 訪問目的으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 일본으로 갔다는 보고는 한건도 없으며 편지교환조차 거의 없는 狀態이다. 북송 일본인 처의 30% 미만이 그들의 가족으로 부터 소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의 호소나 일본 정부의 거듭된 要請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그들이 북한에 도착한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北韓 國籍을 갖게 되므로 이는 内部問題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일본인 처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고 있다.¹³⁾

註 13) 일본인 처와 북송 동포들의 生活狀態에 관한 정보입수는 매우 어렵다. 일본 당국의 統計에 의하면 1970年 부터 1982年 사이에 17,000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북한을 訪問하였다고 한다. 한 일본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北韓訪問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인들은 北韓의 政治的抑壓, 社會的 不當性, 人種差別, 가난한 生活狀態 등에 관한 狀況을 確認할 수 있었으나 그들 자신이나 그들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여 북한에 있는 일본계 한국 주민들에 관한 生活을 진술하거나 폭로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實情을 일본에서 把握하지는 못하고 있다. 조총련의 한

北韓 當局은 外國 政府에 대해 北韓 内の 外國人 狀態에 대하여 通報하지 않는다. 1963년 5월 11일 소투 데라고시와 그의 조카인 다게시(당시 24세, 13세)가 1.5톤급의 소형어선을 타고 이시기와懸의 다카하마항을 떠났다. 그 어선은 며칠후 시가에서 약 10 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되었으나 승선자들은 발견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장례식이 거행되었으나 24년후인 1987년 1월에 소투의 누이동생이 오빠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의 발신주소는 평양 북쪽에 있는 구성의 소인이 찍혀 있었다.

註 13) 繼 續

指導級 人士가 北韓을 訪問하였으나 行방불명되었다는 소문도 있다.

第9章 私生活의 秘密

제12조 :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가족·가정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法律의 보호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北韓憲法 第64條는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정규적으로 보안기관의 복잡한 정보망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 保安機關의 정보망은 비밀에 쌓여있다. 保安警察은 시민들을 수사하고 모든 주민들의 계층기록을 유지한다. 일반인은 그들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權利가 없다. 保安警察機關長의 이름은 북한 관료명단에 기재하지 않는다. 평양방송이 국가 보위부 창설 40년 행사에 김일성이 참석한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보위부장의 이름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신문이 1987년 8월에 드물게도 국가보위부부장의 사망기사에서 이진수라고 밝힌 일이 있었다.

保安警察이 사용하는 기구중 하나가 도청장치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北韓의 지방관리 말에 의하면 한 科學者의 집 라디오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루는 가족들이 수령한 配給品속에 썩은 과일이 섞여 있어서 그

는 화를 내고 모든 고위간부들은 신선한 과일을 받는데 하급관리에게는 썩은 과일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김일성은 개새끼다”라고 소리쳤다. 이 사건으로 인해 科學者는 1986년에 처형되었다고 한다. 그 地方官吏는 그 科學者와 같이 투옥되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北韓의 고위급 첩보기관원이었던 한 귀순자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메르세데스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귀순을 결심했다고 한다. 감시와 가혹한 결과가 수반되는 위험때문에 모든 사회생활에 공포를 불러 北韓 귀순자와 外國 여행자들은 北韓社會 내부에 공포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지도급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들은 정치, 공개적인 비판 또는 黨에서 결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일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이웃간에도 서로가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 가족들 사이에도 現時局, 뉴스, 서로의 생각 또는 감정마저 討論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이고, 자기생각 그대로를 말하는 예가 드물다. 엘리트 항공조종사 조차 항공기에 설치된 라디오를 통해 청취한 외국 뉴스에 관해 討議하기를 꺼린다.

양성철이라는 한 韓國系 미국인이 1981년에 北韓을 방문하였다. 2년 후에 공개된 그의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어느날 아침 나는 통상적인 아침식사 보다 한시간 전

에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案内員 없이 나는 호텔밖으로 몰래 뛰어나와 보통강 가를 산책하였다. 산책도중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 이학생을 만났다. 내가 그녀 앞으로 다가 갔더니 그 學生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안절부절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녀를 진심시키려고 努力하였으나 그 學生은 누가 엿보지 않는지를 확인하듯 주변을 살펴보았다. 내가 그녀에게 美國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였더니 그녀는 놀라면서 벌떡 일어섰다. 내가 그녀가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에서 오기는 하였으나 같은 韓國사람이라고 말했더니 그녀는 냉정을 되찾는듯 했다. 그녀는 냉정하려고 애를 썼으나 두려움과 괴로운 표정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그녀의 걱정은 나와 같이 있다는 사실보다 누가 (機關 당국자)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거나 않을까 하는 것이 더 컸다. 헤어지면서 나는 그녀에게 다음날 같은 시간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그후 나는 내 자신과 그녀의 安全을 위해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러한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環境속에서 나 역시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불안스럽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지금 그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으나 그녀의 공포에 쌓였던 표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몇년전 北韓에서 일하고 있던 한 유럽實業人이 그의 건설공사에 관한 서류를 얻으려고 정부청사로 갔었다. 몇시간

을 기다리던 그는 지친끝에 다른 사무실에 가서 문의하려고 복도를 건너가려고 하는 순간 어디선지 무장한 軍人이 그의 앞을 가로 막았다. 이러한 經驗으로 그는 누구도 특별히 허가 없이도 어떤 정부정사에도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와 다른 사람들은 정부정사는 공개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사에는 간판이나 표시가 전혀없다. 이러한 사례는 北韓社會의 무시무시한 폐쇄성과——특히 평양 시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중한 감시의 공포를 입증하고 있다.

北韓住民이 외국을 여행할 때 그들은 항상 무리를 시어 다닌다. 중공에 있는 北韓學生들은 배타적이고 낯선 사람과 對話하기를 두려워 한다. 19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開催되었던 女性問題에 관한 회의에 北韓의 남녀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한번은 남한 여성대표가 북한여성대표에게 말을 건네자 옆에 있던 남자가 황급히 對話를 차단시키고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1986년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國際科學技術平和會議이 開催되었다. 그때 한 중남미 대표가 美國 科學者에게 다가서서 심술궂은 제의를 하였다. 그는 北韓 科學學院에서 온 북한 대표 신문규에게 단체사진을 찍을 것을 제의하여 그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자고 제의하였다. 예상하였던 대로 두 사람이 북한 대표에게 같이 사진 찍을 것을 提議하자 그는 기절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 이러한

요청이 北韓사람을 불편하게 하여 北韓의 엘리트들도 외국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을 불인해하고 두려워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 공포는 그들이 외국인과 친근해지므로서 불충실한 자로 비판받을 可能性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주재하고 있는 蘇聯과 中共人은 외부와의 접촉단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 그들은 北韓住民들이 공적인 업무나 당국의 허기가 있을 때만 그들과 對話를 한다고 불평하였다. 北韓社會에는 사교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蘇聯人和 中共人은 그들의 고국에 돌아와 안도와 자유의 위대함을 다시금 맛보았다고 하였다.

第10章 移 動

1. 旅 行

- 제 13 조 : (1) 사람은 누구나 自國의 경계안에서 이동 및 거주의 自由를 누릴 權利를 가진다.
- (2) 사람은 누구나 自國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라도 떠나고 또 自國으로 돌아올 權利를 가진다.

北韓憲法은 거주 및 여행의 自由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北韓刑法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몇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들어 刑法 230條에는 “主權機關의 정당한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住民은 아무도 당국의 허가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 이 法을 위반한자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까지 이 法이 적용된다.¹³⁾

주 13) 刑法 70條에 의하면 北韓을 탈출한 군복무자의 가족들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묻게 되어있다. 또한 탈주에 협조한자는 징역 및 전 재산을 몰수하며 선거권을 박탈하고 원적지로 추방한다고 되어 있다. 北韓에 호의적인 어떤 해실자는 가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삭제되었다고 하나 최근 北韓한 탈출한 귀순자의 말에 의하면 이 法條項은 아직도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刑法 第 229 條에 의하면 “공민증 또는 임시증명서 없이 거주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세계 인권선언에 보장된 이동의 自由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의 權利를 제한하는 규제조항이 임시 인민위원회 令 57 호에도 나와있다. 이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모든 住民은 社會 安全部에서 발급한 공민증을 휴대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며 최수나 정신질환자에게는 공민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평양을 출입할때나 다른 감문소를 통과할 때 공민증 檢閱을 받는다.

11 條에 의하면 주거지 변경시 2 주일 이내에 社會安全部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9 條는 공민증을 분실한 경우 1년이하의 강제노동에 처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3 條에는 90 일 이상 자기 주소지 이외의 곳에 체재코자 하는 사람은 社會安全部の 사진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13 條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자는 社會安全부에 신·구 주소를 신고하여 등록토록 되어 있다. 52 條에는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자도 社會安全部の 허가를 받고 職業變更을 공민증에 기록하고 북한당국의 기록부에 등록토록 規定하고 있다.

55 條에는 旅行하고자 하는자는 社會安全部に 숙박허가를 얻어야 하며 56 條 및 57 條에는 旅行者가 자기집에 유숙할때도 社會安全部の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허가없이는 누

구도 단 하루밤도 유숙시켜서는 안된다. 60條에는 집주인은 여행자에게 社會安全部에서 발급한 숙박허가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9條에는 집주인이 자기집에 묵고가는 旅行者에게 확인서를 써주도록 되어있으며 이 확인서는 그가 귀가하였을 때 주거지역 社會安全部와 고용주에 提出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실제로 北韓에서는 旅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고위간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동차 旅行이 허용되지 않는다. 北韓住民은 생활을 대부분 집단 주거지역내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물품도 구매하고 일도한다. 이러한 규제조건을 벗어나는 旅行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들어 1980년대 北韓을 방문한 韓國系 美國人에게 평양주민이 말하기를 그들은 도시간 운행열차나 버스를 이용한 旅行은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더구나 옆 군으로 旅行할때도 許可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北韓에 살고 있는 韓國系 日本人은 그들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며 북한내의 旅行許可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였다. 旅行許可 발급 여부는 그의 정치적 성분에 달려있다.

2. 亡命權과 國籍權

제 14 조 : (1) 누구나 迫害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망명한 權利가 있다.

(2) 이 權利는 비정치적인 범죄나 UN의 목적과 원칙에 상반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5조 : (1) 누구나 國籍을 가진 權利가 있다.

(2) 아무도 그의 國籍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거나 國籍變更을 거부당하지 않는다.

北韓憲法은 “平和와 民主主義, 민족 독립과 社會主義와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으로 망명한 외국 정치인으로는 “시아누크”공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으며, 그는 캄보디아의 국가 원수직에서 쫓겨나 캄푸치아 망명정부의 수반이 되었다. 김일성은 시아누크에게 저택과 전용 寺刹을 제공하였으며, 시아누크는 파리와 북경에도 저택이 있다. 그는 美國, 유럽 및 아시아 모든 국가를 자유로이 旅行할 수 있다.

北韓은 1980 년대에 있었던 두건의 망명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己 國民의 해외 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1983 년 가을 21 세의 민홍구라는 北韓 하사가 남포항에 정박중인 日本 어선에 삼입하여 日本으로 밀항했다. 그는 몇일동안 요코하마시 密入國者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그후 어선이 조업차 남포항에 다시 입항하였는데 北韓當局은 선장과 기관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재판없이 구금하였다. 3년후인

1987년 4월 노동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김우종은 투옥된 두 日本人을 석방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그 석방은 분제의 민하사와 교환하는 조건이었다. 김우종은 日本이 交換條件에 응하지 않으면, 두 日本人을 간첩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하였다.

日本當局이 北韓의 제의를 거부하자 두 日本人은 재판에 회부되어 1987년 12월에 15년 징역형을 받았다. 1988년 6월 두 日本人이 1988년 9월에 개최되는 서울올림픽 후 석방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석방 가능성은 북한 형법 條項에 예심기간동안의 구금 일수는 선고 기일상의 3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北韓의 보도기관이 발표한 것이다.

가장 극적인 탈출극이 1987년 1월 15일 發生하였다. 청진항에서 배를 타고 김만철 일가 11명이 日本으로 탈출하였다. 이는 韓國動亂以後 일가족이 함께 탈출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가족들은 망명을 요구했으며 대만에 머문후 남한에 정착하게 되었다.

北韓當局은 김만철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협박하였다.

즉, “김만철은 사기꾼이고 게으름뱅이며 양심과 의무를 저버리는 기본적인 人間의 道德이 결여되어 있는 자이다. 그는 오래동안 그의 처제 최봉예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 왔었다. ...”

“ 그의 광기에 가까운 육체적 욕망은 처녀, 유부녀 및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희봉하였고 심지어 19세년 그의 양녀마저 능욕하였다. … ”

“ 김만철은 北韓에서 살기 싫어 탈출한 것이며 차범대우 때문에 망명한 것은 아니다. … 배신자와 반역자의 運命은 비참하다. 國家와 人民을 배신하고 괴뢰에 運命을 맡기려는 그의 말로는 예외없이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

南韓으로 귀순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남은 가족이 박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 체포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우려가 亡命을 摸索하고 있는 많은 北韓사람들의 결심을 흐리게 한다.

종전후 천명미만의 北韓住民이 남한으로 망명하였다. 귀순자의 수가 작은 이유는 北韓의 물살틈 없는 군사적요새, 철저한 監視와 北韓이 남한을 誑주림과 무법천지의 社會라고 허위선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귀순후 그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한 벗들에게 가해질 處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면담한 귀순자들은 北韓에 가족이나 친척이 거의 없었다.

第11章 家 族

- 제 16 조 : (1) 成年이 된 男女는 人種, 國籍 또는 宗教에 關係 없이 結婚하여 家庭을 이룰 權利를 갖는다.
그들은 結婚, 結婚生活 및 離婚 등에 대한 同等한 權利를 갖는다.
- (2) 結婚은 雙方의 자유롭고 完全한 合意에 의거 이루어 진다.
- (3) 家族은 社會의 自然的이고 基本的인 構成單位이며 社會와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北韓 憲法 63條는 “結婚 및 家族은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國家는 社會의 세포인 家庭을 公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6年 7月30日 「男女平等權에 관한 法令」은 第4條에서 女性의 自由結婚의 權利와 強制結婚의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6條에서 結婚年令을 女性 17세, 男性 18세로 규정하였다.

전 북한주민이었던 귀순자 및 방문자들은 면담에서 실제로 법이 규정된 조항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폭로하였다. 結婚은 政府의 許可가 있어야 하고 男女는 그들의 국가에 충분히 奉仕할 때 까지 結婚이 강제적으로 연기된다. 김일성은 북한 여성동맹에게 “여성들은 그들의 結婚이 약간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과 혁명을 위해 더 많이 배우고 일해야 한다.”

고 하였다. 실제적인 結婚 年齡은 女性 26세, 男性 30세로 되어있는 것 같다. 보고에 의하면 자기보다 낮은 階層에 있는자와 結婚을 원할때 그의 신분은 격하되고 평양밖에 있는자와 결혼할때 그는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階層間 결혼을 제한하고 있다. 어떤 報告는 賀客의 數, 結婚日字, 飲食 등을 포함한 結婚式 조차 국가가 조정한다고 하였다. 예를들어 이 보고에 의하면 비 엘리트階層에 속하는 사람의 결혼 하객수는 5명으로 制限하고 있다고 한다.

1. 모성권

勞動에 대한 壓力, 政治學習, 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단체 경기 행사 등으로 인해 부모나 학생들은 가정생활을 위한 여가시간이 거의 없다. 엘리트階層의 여성을 除外하고는 모든 여성들은 勞動에 시달린다. 한 귀순자의 말에 의하면 女性들은 과중한 勞動에 시달리며 여가시간이나 가족끼리 갖는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부부는 모두 일을 하면서도 엘리트 계층을 除外하고는 둘 이상의 子女를 부양할 能力이 없다. 이로 인해 家口當 平均 子女數는 2.2명이며 아시아지역 저개발국보다 出生率이 낮은 편이다. 더구나 이것이 산하제한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 하였다. 실제적인 結婚 年齡은 女性 26세, 男性 30세로 되어있는 것 같다. 보고에 의하면 자기보다 낮은 階層에 있는자와 結婚을 원할때 그의 신분은 격하되고 평양밖에 있는자와 결혼할때 그는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階層間 결혼을 제한하고 있다. 어떤 報告는 賀客의 數, 結婚日字, 飲食 등을 포함한 結婚式 조차 국가가 조정한다고 하였다. 예를들어 이 보고에 의하면 비 엘리트階層에 속하는 사람의 결혼 하객수는 5명으로 制限하고 있다고 한다.

1. 모성권

勞動에 대한 壓力, 政治學習, 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단체 경기 행사 등으로 인해 부모나 학생들은 가정생활을 위한 여가시간이 거의 없다. 엘리트階層의 여성을 除外하고는 모든 여성들은 勞動에 시달린다. 한 귀순자의 말에 의하면 女性들은 과중한 勞動에 시달리며 여가시간이나 가족끼리 갖는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부부는 모두 일을 하면서도 엘리트 계층을 除外하고는 둘 이상의 子女를 부양할 能力이 없다. 이로 인해 家口當 平均 子女數는 2.2명이며 아시아지역 저개발국보다 出生率이 낮은 편이다. 더구나 이것이 산하제한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이 出生率은 놀랄만큼 낮은 것이다. 오히려 당국은 1981년 각 가정에 4~5명의 子女를 갖도록 장려하였다. 아동의 育兒, 教育, 醫療保護 施設을 國家에서 運營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住民들이 늘 이상의 子女를 出產하도록 권장하는데 失敗한 것 같다. 두 자녀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도 하루종일 勞動에 시달리고 있고 아침 7:30부터 저녁 10:30까지 子女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세번째 아이를 出產하면 勞動時間을 약간 短縮시켜 준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혜택은 子女들을 養育하기 위한 障壁을 극복하기에는 未洽하다.

2. 兒 童

유아기부터 아이들의 出身 成分이 養育의 質을 決定한다. 고아들은 누구보다 신성시되고 特權을 賦與 받는다. 고아들은 당에 의해 特殊學校에서 養育된다. 가장 이름난 고아원은 만경대 革命遺子女學院이다. 이곳의 고아들은 그의 부모들로부터 나쁜 思想이나 反革命的 理念을 이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총애를 받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養育된다. 이들은 피복, 학용품, 음식 등 모든것을 김일성과 노동당으로부터 직접 支給받는다. 1년에 한두번씩 피복이 支給될때 선불 수여식이 거행된다. 학원생들의 “아버지”는

당 지도자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進學할때 다른 學生들은 자격심사를 위해 가족의 출신성분에 대한 調査를 받게 되어 있으나 고아들은 이 심사에서 除外된다. 高等學校 卒業後 一般學生들은 2년간 직장생활을 해야 大學에 進學할 수 있으나 고아들은 卒業과 同時에 大學에 갈 수 있다. 고아들은 좋은 직장에 配置되며 고급 엔리트에 버금가는 범주에 속하게 된다.

고아들의 경우를 제외하면 혈통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革命的 英雄이나 당 간부의 子女는 特殊學校에 入學하여 노동당에 쉽게 입당할 수 있다. 김일성은 “혁명 동지들의 가족은 思想面에서 卓越하며, 思想이 우월할수록 더 겸손하고 勞動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대개의 特殊學校는 평양 근교에 있다. 그 外의 충성심이 강하고 “믿음직한” 住民들은 그보다 한단계 낮은 教育을 받는다. 대부분의 下位階層 住民들은 質的으로 거의 教育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北送된 교포자녀들은 完全한 權利를 갖지 못한다. 北韓을 訪問한 바 있는 韓國系 日本人은 북송교포의 자녀들은 “出生” 및 태생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어 정치적 참여뿐만 아니라 醫療保護와 教育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김일성과 그의 정부는 아동의 養育, 教育 및 福祉에 全的인 責任을 지고 있다. 政府는 부모와 자식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년기부터 시작하여 부모가 될때까지 계속해서 국가와

아동간의 關係體制로 대치시키고 있다. 이 政策에 의하면 革命에 대한 사랑이 가족간의 사랑보다 우월하다. 북한 월간지 “勤勞者” 1974年 4月號에는 당과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충성은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교조적인 기사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다.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 社會建設을 위한 革命鬪爭에 이바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革命鬪爭을 떠난 개인 또는 가족의 행복은 생각할 수 없다. 혁명을 위해 조성된 공산주의적 인간애보다 더 숭고한 사랑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자간의 사랑, 모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또는 친구간의 우정은 革命에 이바지 하는 동지들의 사랑과 연계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항일 혁명 유격대 용사들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혁명적 책임감에 충만해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청춘과 생명을 수령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자연의 섭리이며 혁명적 의무라고 생각했다. ...

위대한 指導者에 대한 충성심에 가득찬 모든 항일 유격대원들은 가장 숭고한 혁명적 의무감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그들이 간직하였던 혁명적 의무감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의 바탕위에서 實現되었고 強化되었다. 그들이 갖고있던 혁명적 의무감의 자인발생적인 성격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 바탕을 두고 그 任務를 實現

시키게 하였으며 이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生後 3個月부터 유아는 주간에 탁아소로 보냄으로써 -평양과 원산 - 부모들은 집밖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모심기 또는 수확기간에 태어나면 보모가 아이들을 들로 데리고 나온다. 농촌지역에는 이동탁아소가 運營되고 있다. 女性과 어머니들은 남자보다 일찍 일어난다. 대부분의 경우 勞動日課는 平常時 오전 5시 30분, 모심기 기간에는 새벽 3시에 시작된다. 아침식사준비, 식료품 구입 및 아침 정치학습 수업을 위해 약 한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아이를 가진 여성은 출근전에 탁아소에 들러 아이를 맡긴다. 북한 사회 분석가의 한사람은 “탁아소 제도는 두가지 目的으로 運營된다. 하나는 아이들을 부모의 나쁜 影響으로부터 隔離시켜 이상적인 공산주의자로 養育시키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을 가정과 육아로부터 해방시켜 勞動力을 確保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학술적 연구와 북한의 규정으로부터 탁아소는 두 가지 형태로 區分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간 근무 보모는 노동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 30분 또는 7시에 아이들을 모은다. (저녁식사후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약 2시간동안

정치학습에 참가한다.) 주간근무 보모는 만약 부모들의 勞
動과 여행으로 인해 必要할 때는 일주일 동안 계속 돌보
게 된다.

평양의 엘리트 계층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외국 방문객에게 展示用으로 公開되는 학교는 온수수영장,
김일성이 무지개를 잡기 위해 올라갔다는 들메나무, “남
한”이라고 불리어지는 역에 정차하는 전기로 작동되는
“통일열차” 등을 갖추고 있다. 비특권계층의 아동은 이
렇게 풍부하고 異國的인 施設들은 구경하지 못한다.

평양과 원산밖의 시골에는 비특권계층 가족들이 살고 있
으며 탁아소제도가 드물다. 아동의 조부모가 生存해서 아
이들을 돌볼 수 있으면 탁아소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 地域은 通常 保健 및 教育制度가 發展되지 않고 있
다. 종종 학교는 만나질만 授業하고 職業教育에 치중하
다.

第12章 財 産 權

- 제 17조 : (1)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사람과 共同으로 자신의 財産을 소유할 權利가 있다.
- (2) 누구나 일방적으로 자기 재산을 剝奪 당하지 않는다

北韓 憲法은 一次的으로 國家 및 協同團體 所有財産의 保護를 規定하고 있다. 예를 들어 憲法 70 條에는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 재산은 神聖不可侵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8 條에는 “生産手段은 國家 및 協同團體의 所有” 라고 되어있고, 19 條에는 “國家所有는 전체 人民의 所有이다. 國家所有權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自然資源, 重要公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交通운수 및 中央機關은 國家만이 所有한다” 고 되어 있으며 22 條에는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이 개인 소비를 위한 所有이다. 勤勞者들의 個人所有는 노동에 의한 社會주의 分配와 國家 및 社會의 追加的 惠澤으로 이루어진다. 協同농장원들의 土地 經營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 經營에서 나오는 生産物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國家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保護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고 개인재산의 保護에는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第12章 財 産 權

- 제 17조 : (1)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사람과 共同으로 자신의 財産을 소유할 權利가 있다.
- (2) 누구나 일방적으로 자기 재산을 剝奪 당하지 않는다

北韓 憲法은 一次的으로 國家 및 協同團體 所有財産의 保護를 規定하고 있다. 예를 들어 憲法 70 條에는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 재산은 神聖不可侵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8 條에는 “生産手段은 國家 및 協同團體의 所有”라고 되어있고, 19 條에는 “國家所有는 전체 人民의 所有이다. 國家所有權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自然資源, 重要公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中央機關은 國家만이 所有한다”고 되어 있으며 22 條에는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이 개인 소비를 위한 所有이다. 勤勞者들의 個人所有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國家 및 社會의 追加的 惠澤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 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國家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개인재산의 보호에는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北韓은 종종 세금제도를 廢止한 첫번째 정부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에서 볼때 北韓政府는 국가의 유일한 고용주이며 임금과 모든 物價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생산에서 발생하는 利潤이나 剩餘分을 歲入으로 잡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농민들의 생산물 1/4을 국가에 貢出하는 형식으로 徵收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徵收에서 免除되는 유일한 개인재산은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生産物이다. 이러한 食品은 가끔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¹⁴⁾

北韓住民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제한된 개인 재산은 국가가 지급한다. 예를들어 여러가지 보고에 의하면 국가가 아이들, 학생들 및 근로자들에게 제복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個人所有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빌려주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세탁기, 텔레비죤 및 기타 주요 가전제품은 김일성으로 부터 받는 개인적인 하사품이다.

이러한 물품을 잘못 다루거나 파손하는 것을 不忠行爲로 취급된다.

註14) 최근 김일성은 개인 부업경리제를 적용하고 있는 집단농장의 제한된 자치권을 論拍하였다. 김일성은 모든 공동재산을 국가 통제하에 두도록하는 설박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작년 농부들을 위한 상날을 일주일 간격에서 일개월 간격으로 연장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다.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찮은 재산마저 일방적인 압수 대상물이 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황금으로도 금된 김일성 동상이 평양에 있다는 자체가 이 문제의 核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좋은 예가 된다. 그 동상을 도금하는데 소요된 황금의 양은 580 kg에 달하는데 北韓當局은 이를 위해 特殊懲用制를 사용하였다. 각 단위 여성 同盟마다 割當量이 설정되었으며 이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女性同盟은 각 가정에 엄청난 壓力을 가했다고 한다. 평양에 割當된 量은 99 kg였다. 각 가정에서는 반지나 패물 심지어 틀니까지 빼내어 할당량을 채웠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황금 獻納運動은 송장을 파내는 소동까지 유발하였다. 후에 北韓이 中共에 經濟支援을 要請하였을때 평양을 방문한 中共대표는 저 정도의 웅장한 황금 동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부유한 나라에 무슨 經濟援助가 必要하느냐고 하면서 北韓의 要請을 거절한 일이 있었다고 전 北韓의 고위관리자가 말했다. 이 관리의 말에 의하면 北韓當局은 그 후에 동상에 도금된 두터운 황금을 벗겨내어 외환으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前 北韓의 住民과 北韓을 訪問한 바 있는 그의 친척에 의하면 수출을 위해 생사나 옷감의 재고가 부족할 때 北韓當局은 주민들에게 스웨터 옷을 “獻納”하도록 명령한다고 하였다.

北韓當局의 國民에 대한 一般的 行動과 태도로 비추어 볼

때 이와같이 住民들의 物品을 正當한 節次없이 收去한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第13章 宗 教

제 18 조 :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에는 자신의 宗教 또는 信念을 바꾸는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講論, 行使, 禮拜 및 儀式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나 信念을 밝히는 자유가 包含된다.

北韓에서 유일하게 許容된 종교적 신앙은 김일성과 그의 가족에 대한 崇拜다. 전통적인 종교적 신앙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抑壓당하고 있다.

1. 傳統的 宗教實態

北韓 憲法 54 條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972년의 헌법규정은 1948년 헌법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儀式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던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북한 형법 258 條는 “종교단체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봉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司祭나 목사 혹은 기타의 종교적 지도자가 될수 있는 權利를 효과적으로 剝奪하고 있다. 同 257 條는 “宗教團體에 寄

付를 강요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김일성어록 第1卷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宗教는 미신이다. 예수를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간에 이런것은 본질적으로 미신인 것이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이 인민을 속이고 착취하고 또 抑壓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종교가 未開發國 人民들을 侵略하는데 제국주의의 理念的 道具로 사용되어 왔다.”

北韓政治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기독교：노동자들을 이용하여 解放鬪爭을 破壞하기 위한 搾取階級의 정신적 도구”

“불 교：유교적 통치세습에 의한 성부의 理念的 도구”

“유 교：부르조아적 理念과 함께 우리의 기본적 鬪爭對象”

1940 년때에서 1950 년대까지의 北韓 基督教政策, 특히 카톨릭에 대한 정책은 “Catholic Korea”라는 책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책에 의하면 1949년 12월 반종교운동이 北韓 當局의 指示에 의거 대대적으로 展開되었다. 첫단계로 교회가 廢鎖되고, 1950년 1월 성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포와 함께 150명의 사제가 처형되었으며 종교지도자 몇명이 실종되었다.

投獄된 기독교인의 운명은 김일성치하의 정치범들과 같은 것이었다. 18명의 교인들이 감방에 수용되었는데 감방이 너

무 쯤아 드러눕지도 못하고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서 자야했으며, 일어서지도 못한채 꿇어 앉은 자세로 있어야 했다. 처음엔 하루 100g의 콩죽으로 연명하다가 조금 지낸 후 200 - 400g 정도로 늘어났지만 병에 걸려도 약 한점 구상 못하고 상제도동에 시달려 그들중 상당수는 굶어 죽었다.

한국동란 동안 북한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다에 집어 넣어 익사케 하거나 지하동굴에 넣고 부차면사각을 가해 殺害했다고 한다. 동란말기에 기독교의식은 모두 중지되었고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실종되었다.¹⁵⁾

한때 北韓의 宗教實態 특히 기독교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相反된 정보가 있다. 미국교회협의회 대표단이 1986년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였다. 평양의 조선기독교도 聯盟과의 대화를 근거로 그들은 약 10,000명의 기독교인이 북한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인들은 50세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목사들은 대부분 年齡이 높고 1972년에 神學 講坐 課程을 修了한 젊은 목사 20名 程度가 있지만 교회건물은 없다.¹⁶⁾

註 15) 1949년 한반도 전체에 약 250,000명의 카톨릭 신자가 있었으나 북한에 있던 신자수는 알 수가 없다.

註 16) 1988년 10월 6일자 한국일보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1988년 11월에 카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를 연다고 보도하였으나 이것이 종교에 대한 자유가 북한에서 保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는 不分明하다.

또한 미국 대표단은 북한에서는 모든 예배가 각 가정에서 행해지며 북한에서 1983년과 1984년에 성경과 새찬송가 책이 각 10,000권씩 출판되었고 35명의 북한 기독교인을 만났다고 보고했다.¹⁷⁾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는 北美의 한 교수의 相反되는 진술에 의하면 “1981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나는 안내원에게 혹시 예배드릴만한 교회가 한군데라도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나 안내원의 대답은 없다고 하였다. …… 北韓住民들은 더이상 크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다른 보고에 의하면 “北韓에는 불교, 교회 또는 어떤 종교도 없으며 내가 북한에 약 8년동안 있었으나 교회나 종교인들을 본일이 없다”고 하였다. 여러가지 종교서적이 공식적으로 認可된 종교단체에 의해 한정된 수로 發刊되고 있다. 1980년대에 출판된 한국어 성경은 북한의 종교정책에 맞게끔 각색되어 있다. 在美 韓國人 基督教人으로서 北韓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에 따르면 북한의 성경은 원래 성경과 판이하

17) 定規的인 北韓의 가정예배는 매우 의심스럽다. 北韓 정부가 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때 자발적이거나 계획적인 모임은 당국의 허가없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일요일예배에 參加하기 위해 여행허가서를 받아내는 절차나 조용한 모임을 목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가정예배의 존재여부를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교인들은 적대계층에 속해있고 嚴格한 감시를 받고 있다.

며 靈的인 단어나 종교적인 것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다고 하였다.

학자들이나 전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교회건물은 한국통일 직후에 완전히 破壞되었다고 하였다. 1946년의 土地改革令에 의해 宗教團體의 재산이나 불교사찰, 교회 등은 1950년에 모두 沒收되었다. 이러한 재산이나 건물은 노동당 고위간부들에게 配分되거나 그들의 오락장으로 활용되었다. 1948년 이전에 평양에 거주했던 총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50만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의 行方은 알 수가 없다.

1972년 北韓政府는 몇개의 宗教組織을 創設했는데 그 組織들의 政治的 任務는 해외 宗教人들과 대화하고 국제적 종교회의에 參席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 모임에서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北韓의 통일정책에 대한 支持를 선전하는 것이다.¹⁸⁾

宗教團體로서는 “朝鮮基督教徒 聯盟”, “朝鮮佛教徒聯盟” 및 “天道教中央指導委員會” 등이 있다. “朝鮮基督教徒聯盟” 所屬員들은 찬송가와 教理에 대하여 政府의 特別訓練을 받는다. 이러한 어용 基督教活動을 제외하고는 북한에서 어떤 전통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북한을 방문했던 在美 韓國人이 교회에 헌금을 하려했지만 거부당했고 교인

註 18) 지난 2년 동안 北韓 言論이 보도한 宗教團體의 活動은 統一과 南韓政府 타도를 국제적으로 호소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석가탄신일 행사조차 없었다.

들에게 종교에 관한 자료를 提供하는것도 許容받지 못하였다.

종교활동에 參與한者는 糧穀의 配給量이 削減되거나 시골로 추방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종교지도자들은 교화소에 수용되기도 한다. 나이가 많은 독실한 신앙자들은 정신질환치료 목적으로 道內 교화소에 收容되거나 시골에 감금되기도 한다.

北韓은 아직도 몇개의 사찰을 保存하여 관광이나 외국 貴賓들에게 展示用으로 活用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사찰이 破壞되었으나 금강산과 묘향산의 사찰들은 복구되었다. 몇명의 노승들이 사찰을 지키고 있으나 그들의 임무는 사찰관리에 있으며 한 미국기자가 사찰을 방문하였으나 불교의식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北韓에 亡命한 시아누크공이 불교도이므로 北韓當局은 한명의 승려를 새로이 교육시켜 급조한 사찰에서 시아누크가 불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찰은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타인은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北韓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軍服務 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헌법은 “국가방위는 최고의 임무이며 국민들의 명예이다. 국민들은 법에 의해 국가를 지키며 군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김일성 및 김정일 崇拜

北韓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崇拜가 종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로지 김일성의 信念體系만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같이 김일성에 대한 비판없이 강요되는 崇拜는 조직적인 모든 宗教形態를 抑壓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양심의 자유권을 유린하고 있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에 대한 崇拜는 단순한 정치적 埋念이 아니고 嚴格한 통제와 警察網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이러한 신조 (Dogma) 는 대립되는 理想이나 反對 혹은 外部의 權威에 호소하는 것을 許容하지 않는다.

김일성의 생애에 관한 실제 역사기록은 그가 抗日革命期에 가상 두드러진 민족주의 지도자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일성은 그의 조작된 경력에 반대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숙청했다. 김일성의 역사기록에 반대하였다가 徵役刑을 언도받은 사람이 아주 많다고 보고된다. 앞 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자신들에 대한 崇拜를 강요하기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외부로부터의 정보에 接近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주민들의 사고 감성이나 표현을 탐지하는 수많은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아래의 “충성 선언”은 이 信念體系의 신조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사회 전체는 수령의 영도아래서 수령의

유일사상과 의지로 살아숨쉬고 움직이는 단일한 정치력으로 견고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1986년 1월, 중앙방송)

“ 토지개혁, 대기업의 국유화, 농업협동제 및 사회주의 산업화등은 위대한 지도자의 현명한 영도아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근로대중을 擄取와 壓制로부터 해방시켜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는 아버지 지도자의 崇高한 道德的 人品과 거룩한 의지력으로 찬란하게 구현되었다. ………

한시도 쉬지않고 편안한 밤잠을 거르면서 평생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동무는 인민들의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고 모든 것을 인민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였다.

우리 인민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아버지 지도자의 崇高한 意志는 지금 김정일 동지에 의해 끊임없이 계승되고 찬란하게 실현되었다.” (1988년 4월 호 「근로자」)

“ 김일성수령과 김정일 지도자 동지가 생각하는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대로 행동하자 ” (북한의 슬로건)

김일성은 자신과 자신가족의 歷史와 북한 및 세계와의 超自然的 關係를 조작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崇拜를 만들어 내었다. 보도매체는 김일성 일가의 전설적 이야기들을 보도하고 있다. 예를들어 한국이 일본 통치로부터 해방된 직후 세계의 별-위대한 별, 여성의 별, 어린아이의 별-이 설악산 위로 떠올랐다. 라는 보도기사가 있었다. 위대한 별들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과 그의 처 및 그의 아들 성일을 일컫는다. 또한 전설은 “옛날에 위대한 지도자(김일성)는 땅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현재 主體星(김정일)은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 김일성의 主體理念은 자연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도 한다. 상물이 흐르는 방향을 변경시키는 방대한 공사나 주민들의 사상을 재부장시키는 教育目標은 이 세상과 인류가 김일성의 꿈과 약속에 따라 완벽해 질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促進되고 있다.

김일성의 출생부터 그 생애를 기록한 방대한 양의 책이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면서 출판되었다. 33권에 달하는 北韓의 역사(1982년 출간)의 내용중 반이상이 김일성의 업적과 생애로 채워져 있다.

모든 歷史記錄은 김일성의 革命的이고 知的인 성품이나, 사회, 경제적 업적을 밝힘으로써 김일성에게 절대적 信賴를 부여하기 위해 역사를 날조하였다.

예를들어 1940년대의 여성운동가들을 面接했을때 그녀들은 김일성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기록은 김일성이 男女平等權 法令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北韓의 모든 組織團體는 그들의 착상, 勞動 및 업적을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돌린다. 1986년 1월 31일자 勞動新聞의 “指導者에 대한 忠誠”이란 論說에서 김일성에 대한 尊敬을 되풀이 강조하면서, “農勤盟의 創設은 위대한 지도자 동무 김일성의 唯一思想에 의한 빛나는 結實이다……”라고 하였다.

김일성 崇拜는 그 內容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편협하다. 外國 思想家들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단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을 비롯하여 세 3 세계 지도자 한둘의 이름만 짧게 거론될 뿐이다. 北韓住民은 오직 김일성과 그의 아들에 관해서만 학습하도록 되어있다.¹⁹⁾

北韓에서는 理論, 實行 및 分析 등 모든 책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으로 발표된다. 革命 歷史 역시 기본적으로, 김일성과 그의 가족들의 업적으로 날조되어 있다. 김일성의 저서는 외국 언론매체에 廣告로 게재된다. 이러한 기사들은 외국 언론매체가 김일성의 저서를 발간하고 숙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 평양 博物館에 展示되고 있다.

매일 몇시간씩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한 학습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특별한 의식이나 記念式, 行事 등은 모두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것이다. 學習內容은 두사람의 理念이나 철학 뿐만아니라 그들의 생애, 연대기, 그들의 낭만적인 역사, 친절한 성품, 高貴한 성실성 등 그들의 이상화된 품성까지 모두 教育하고 있다. 학생들은 김일성 일가의 정치적 恩惠로서 教育을 받는 것이며, 탁아소 아동들은 이 두 위대한 지도자의 사진 앞에서 그들의 은총을 찬미하도록 教育받고 있다.

이 의식에서 아동들은 거수 경례를 하고 아버지와 아들

註 19) 마르크스의 전통에 관한 연구마저 금지되어 있다.

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게 되어있다. 1981년 한 한국계 미국인 학자가 少女들이 고등학교에서 김일성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노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들의 아버지 김일성 장군, 우리들의 거처는 당의 꿈이다. 오, 우리나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건설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崇拜는 그의 위대한 가족의 계열로까지 연계되어 있다. 김일성은 그 자신을 모든 住民의 아버지로 표현한다. 그의 생일이면 김일성은 학생들에게 선물을 하사한다 - 제복, 코트, 스웨터, 문방구, 모자, 셔츠 등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大量의 高價 消費品을 下賜한다. 예를들어 제 6차 당대회에 參加한 사람들에게 대형 냉장고를 김일성이 下賜하였다. 공이 많은 군인 및 정치관리에게 자동차를 하사한다. 이러한 은총은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지도자에게 바치도록 하는 값비싼 강요이다. 北韓 언론은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지도자를 위하여 기꺼이 청춘과 목숨을 바치는 것이 革命的인 義務”라고 상기시킨다.

우상을 기억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사물을 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자금은 엄청난 지출과 조직적인 頭腦를 요구한다. 방대한 量의 어북과 역사적 사실의 歪曲을 위해서 北韓의 都市產業體는 출판에 치중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그의 연설문을 작성하고 새로운 이론을 창

조해 내는 지식인들을 선발해 왔다. 많은 학자들과 작가들이 당의 「역사·理論研究所」에서 일하고 있다. 작가나 예술가들은 완성시켜야 할 割當量을 받는다. 그들의 작업은 장시간의 검열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하나의 문학이나 예술품이 완성되면 이것은 김일성의 이름이나 작품으로 공개된다.

예를 들어 主體理論은 원래 모스크바대학을 卒業한 황종업이 최초로 창안했으나 지금은 전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인의 창조물로 알려져 있다. “主體”란 모든 다른 국가로부터 완전한 經濟的, 政治的, 軍事的 獨立을 말하는 일종의 自立概念이다.

조선노동당의 일차적인 책무는 “尊敬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지도자 김일성 동지에 의해 발견된 革命的 진실과 法律 및 高貴한 理念的이고 理論的인 문제들”을 대중이 따르도록 啓導하는 것이다. 理念的 純粹性を 確立하는 課業을 完遂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974년에 10대綱領을 채택하였다. 10대 綱領의 序文에는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조한 위대한 철학가이며 모든 “조선인민들을 위한 윤리적 지도자인 동시에 세계革命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獻身하는 모든 인민들의 구원자”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 序文은 모든 당원들이 영원히 김일성을 尊敬하고 끝없이 그에게 충성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0대 綱領은 아래와 같다.

(1)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革命思想을 추구하기 위해 각자

는 전 사회가 일제히 일어서서 鬪爭에 獻身하도록 유도 한다.

- (2) 위대한 김일성동지에게 최대의 충성을 바친다.
- (3) 위대한 김일성 동지에게 절대적인 權限을 부여한다.
- (4)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革命的 思想을 신봉하고 김일성의 교시를 확일적으로 유지한다.
- (5) 김일성 동지의 절대적인 權利와 교시를 철저히 실현 한다.
- (6) 당의 사상과 革命個體의 통일을 강화한다.
- (7)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革命的 업적과 공산주의 정책을 연구한다.
- (8) 위대한 김일성동지가 설정한 政治課業을 소중히 여기 고 동지의 정치적 지혜와 배려를 충성과 정치적 지 각 및 기술향상으로 보답한다.
- (9)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일한 지도아래 당과 인민 그 리고 군을 단결시키기 위해 공고한 조직과 規律을 設定한다.
- (10)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해 시작된 거룩한 革命을 성 공적으로 完遂한다.

당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이 10대綱領에는 아래와 같 은 5개항의 부칙이 추가되어 있다.

- (1)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權限만을 인정한다.
- (2) 당원들은 총비서의 敎示를 무조건 받아 들이고 모든

결정사항은 이에 근거를 둔다.

- (3) 보고서 작성, 의제토의, 상의 또는 모든 인용구는 총비서의 교시를 參考로 하고 총비서의 見解에 어긋나는 사항은 일체 言及하거나 記載해서는 안된다.
- (4) 당간부들의 모든 제의는 김일성 총비서의 敎示와 일치하여야 한다.
- (5) 김일성 동지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다. 모든 인민은 김일성 동지를 보호하는 것을 각자의 임부로 생각하여야 한다.

김일성 崇拜는 정치적 신조라기 보다 김일성 일가를 神格化시키도록 호소하고 있다. 김일성 崇拜는 일본제국 황실에 대한 崇拜와 전통적 한국 “샤머니즘”의 혼합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2차대전 이전의 일본에서는 천황이 신이었으며, 모든 정치적, 사회적 지배를 초월한 存在였다. 천황은 최고의 경의로서 신격화된 인간으로 다루어졌다. 일본인은 누구나 천황과 일본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였다. 김일성은 그의 인민들에게 이와 꼭 같은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천황은 神이며 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사법제도와 그가 하는일을 일본 천황의 權限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일본 천황처럼 그는 법을 만들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다.

한국의 무당은 超自然의 열정적인 대변인이었다. 무당은 주민들이 세계 또는 사회의 악귀들과 싸울때 그 고상을 대표했다. 무당은 이러한 靈的인 힘을 가진 개인으로 활발하게 고장의 일에 간여했고, 종종 反亂이나 革命에 동원되는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렸다. 한국인들은 무당의 힘을 상징으로 하는 사당을 지었다.

靈的인 아버지이고 조선 종족의 보호자로서의 金日成像은 이러한 무당의 전통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성인들은 옷에 김일성 휘장을 달고 다녀야 하는데 이는 巫敎에서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흡사하다. 이 휘장은 특별한 행사때 나누어 주는데 이는 김일성이 함께 있음을 환기시켜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북한 주민들은 위대한 指導者의 초상을 尊敬스럽게 달고 다니는 것을 “위대한 수령의 초상 휘장을 모시다”라는 의식적 표현으로 使用한다. 이 휘장은 팔지 않으며, 휘장을 분실하면 경고를 받게 되고 계속 분실할 때는 處罰을 받는다. 意圖的으로 이 휘장을 달지 않으면 不忠한 行動으로 간주되어 投獄될 수도 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儀式的인 표현은 그들이 정치를 초월한 神 또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한다.

국내 언론매체는 김일성을 수석으로 號稱하지 않는다. 주석이란 號稱은 外國語로 번역되는 말간말에만 사용한다. 國內 言論매체는 총비서 또는 尊敬받고 사랑받는 지도자로 號稱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親愛하는 지도자동지로 불리우고 이러한 崇拜는 김일성부자가 鮮鮮人民의 어버이이며 大衆은 이들을 朝鮮革命家의 聖스러운 가족의 화신으로 尊敬하여야 한다.

第14章 表現의 自由

제 19 조 : 사람은 누구나 견해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를 누릴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意見を 지닐 수 있는 自由와 어떤 傳達手段을 통해서거나 또 國境과는 무관하게 情報와 思想을 追求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自由가 包含된다.

北韓憲法 53條는 “공민은 言論·出版·集會·結社 및 시위의 自由를 가진다. 國家는 民主主義的 政黨·社會團體의 自由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은北韓의 憲法條項과 世界人權宣言 第19條에 어긋나고 있다. 특히 北韓以外 國家와의 情報交換이나 表現의 自由를 엄히 規制하고 있다. 사실 北韓憲法에는 情報交換에 대한 政府의 立場을 표명한 條項이 있다. 즉 “공민들은 우리 社會體制를 부인하는 제국주의자와 적대분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革命的 警戒를 高潮시켜야 하며 國家 機密을 엄격하게 保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北韓형법 99條는 表現의 自由를 抑壓하기 위해 政府에 廣範圍한 自由 裁量權을 부여하고 있다.

즉 “反國家的 目的이 없이 社會的 混亂을 야기시킬 수 있거나, 주권에 대한 不信任을 일으키며, 또는 그의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을 허위 또는 不確實한 풍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자는 2年以下の懲役 또는 1年以下の 교화노동에 처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刑法 100條는 “國家 機密을 누설한 私人의 行爲가 祖國에 대한 반역행위 또는 간접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2年以上の懲役に 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刑法 189條 및 295條는 官吏나 軍人이 機密을 누설할 때는 더 엄한 處罰을 부가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反國家的 감정의 表現 역시 禁止되어 있다.

刑法 76條는 “人民主權을 暴力 또는 반역적 行위로써 진복, 문란 혹은 弱化시키거나 其他 反國家的 犯罪를 行하도록 하는 宣傳 煽動을 한 者는 2年以上の懲役 및 全部 또는 一部の 財産 沒收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北韓刑法에는 이외에 政府에 대한 批判을 制裁하는 條項들이 있다. 例를 들어 231條에는 “國內에서 發明된 것에 관해 國外發表를 하는 자. …… 또는 國外에 發明權을 申請하는 者”에 대한 處罰을 規定하고 있으며, 244條는 “검열규정에 관한 위반 금지”, 245條는 “猥雜한 文書, 作品, 圖書 其他의 物件을 作成 出版 산포 또는 販賣 산포할 目的으로 보관한자에 대한 處罰”을 規定하고 있다.

1. 報道媒體

이러한 表現에 대한 公式的인 制裁규정 이외에도 報道 媒體 역시 實質的인 制裁를 받고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新聞은 정부원의 特殊機關에 의해 검열을 받는다. 主要 機關으로 “조선 중앙방송위원회”의 라디오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위원회의 텔레비전부, “조선중앙농신사” 및 言論 指導局 등이 있다.

大部分의 歸順者들은 면담에서 가정용으로 제작된 모든 라디오는 政府傘下 放送局의 放送만을 聽取할 수 있다고 했다. 더구나 마을과 職場에 設置되어 있는 확성기는 政府 라디오 放送局과 直結되어 있다고 하였다. 北韓 政府는 外國放送을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민감한’ 정보가 도시와 촌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려는 명백한 의도하에 유선방송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報告되어 왔다. 이는 南韓과 外國放送을 청취하는 權利를 完全히 剝奪하는 主要한 犯罪行爲이다. 한 北韓 空軍 歸順者는 1983年2월에 南韓으로 歸順한 直後 그의 同僚들이 外國放送을 聽取할 수 있었으나 처벌이 두려워 그들이 聽取한 放送內容을 討議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外國放送을 聽取하고 있는 同僚들이 얼마나 되는지 추측을 못하였다. 北韓에는 「로동신문」, 「근로자」, 「로동청년」(주로 金正日에 관한 정보선전), 「평양신문」, 「조선 인민군」(군 전용지로서 배포 제한)과 같은 定期 刊行物이 있다.

北韓의 일간지 “민주조선” 창간 40주년 기념행사는 각 媒體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데 기여한 공적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다. 1986年6月3日 平壤의 國內放送에 의

하면 이 行事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인민문화 궁전에서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부상을 축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어놓고서 행사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로부터 시작하였다.

당과 정부로부터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동지는 1946년 6월 4일 민주조선을 創刊하여 우리 人民政府가 기관지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黨의 政策과 국가노선을 알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編輯局長이었던 김정숙(허담의 처이며 김일성의 사촌누이)은 이 新聞이 “主體革命的 新聞으로 創刊되었고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동지의 지도를 받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공화국 정부의 기관지”라고 강조하였다.

2. 主要 報道 主題

사실 모든 新聞이나 라디오 및 각종 선전매체는 지도자의 현명함과 榮光을 찬양하고 있다. 김일성 부자에 관한 기사는 주로 新聞의 1면에 게재하고 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放送의 주제로 되어 있다. 新聞은 최대의 경칭을 사용하여 김일성 부자의 이름을 활자체로 印刷하고 있다. 媒體는 가끔 모범일꾼, 軍人 또는 忠誠黨員들의 이름을揭

載하기는 하나 김일성 부자를 除外하고는 어떤 指導層人物에 대해서도 根本적으로 눈에 띄도록 報道하지 않는다. 1986年—1987年 2年동안 北韓의 新聞·放送에는 黨에 대한 批判이나 基本的 問題에 관한 討論이 일체 報道되지 않았다. 北韓의 모든 情報·뉴스 및 教育의 目的은 住民들에게 北韓의 優越성을 주지시키려고 하였던 것 같다. 주요한 뉴스의 軸점은 크게 여섯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金日成과 金正日의 活動, 特히 革命, 黨, 軍隊, 經濟發展 및 外交政策等에 대한 金日成 父子의 생각
- 2) 社會主義 體制의 優越성
- 3) 經濟發展, 社會主義 理念에 관한 黨 및 軍의 政策과 指導者와 黨의 노선에 대한 올바른 見解
- 4) 北韓의 平和的 움직임에 대한 南韓과 美國의 과격음모
- 5) 南韓 政府와 社會에 대한 批判
- 6) 社會主義 兄弟國家들이나 第3世界 指導者들과의 모임, 會議 等이다.

南韓에 관해서는 그릇된 情報나 否定的인 情報만을 誇張 報道하고 있다. 南韓은 美國의 實效적인 植民地라고 비난하고 있다. 1981年 平壤을 訪問하았던 韓國系 美國人은 大學生들에게 南韓과 美國에 대한 그들의 見解를 물었고 그의 報告는 아래와 같다.

“豫想했던 대로 그들은 實質적으로 南韓이나 美國에 대

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學生中 하나가 南韓 人民은 어떻게 生活하고 있는냐고 묻기에 나는 南韓은 世界에서 輸出에 成功한 나라의 하나라고 答辯하였더니 그들은 매우 놀랐다. 또한 내가 美國에 거주하고 있는 南韓 出身 韓國人들은 거의가 教授나 醫師, 科學者 또는 成功한 企業家라고 말하자 그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1985年12월에 南北韓 故鄉訪問團 交換이 이루어졌고 北韓에서도 南韓에 있는 그들의 이산가족을 상봉하기 위해 방문단 가족을 선발하였다.

당시 北韓의 記者가 이 訪問團과 함께 南韓을 방문하고서 평양에 돌아와 다음과 같이 報告하였다.

“우리는 서울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서울은 철책 없는 감옥과 같은 잔인한 테러의 都市라는 인상을 받았다:…… 모든 사람은 마치 무엇에 쫓기고 있는것 같았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설새없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언제라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그릇된 情報은 南韓 脫出을 기도하고 있는 北韓住民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것 같다. 많은 歸順者들이 北韓에 있을때 그들은 南韓은 계속적인 위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록 北韓體制에 不滿이 많았지만 南韓은 무자비하게 學生, 野黨指導者, 勞動者, 農民을

殺害하는 잔인한 살인마에 의해 통치되는 가난에 쫓기는 나라로 생각하였었다. 1986年 北韓이 南韓에 AIDS가 만연되어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므로써 그들이 얼마나 南韓에 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보도기사는 아래와 같다.

“…… 20세기의 가장 악랄한 유행병이 위협적으로 南韓을 휩쓸고 있다. 이병의 공포감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가 악수마저 기피하게 하는 現代의 頽廢的이며 國家를 滅亡시키는 악성 疾病이다…… 근래 南韓에서 AIDS에 感染된 사람의 수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數는 60餘萬名에 달하고 있다. 死亡者 數는 繼續 늘어가고 있으며 南韓을 여행한 外國人들도 이에 包含되고 있다는 報道가 계속되고 있다…… 世界言論은 서울이 AIDS의 根源地라고 報道하고 있다.”

北韓 國內 라디오 放送에도 이와 비슷한 날조된 사실이 1986年 10월 21일에 報道되었다.

“美帝國主義者들은 全斗煥 도당과의 공모아래 南韓住民을 對象으로 AIDS병균을 생·화학병기 실험용으로 사용하므로써 數千年이 지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 무도한 犯罪를 범했다…… 한 日本 論說家는 …… 美帝國主義者들이 南韓을 그들의 核武器와 생·화학병기 實驗 對象國으로 選定한 것은 南韓은 美大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美國이 피해를 입지 않으며 이 實驗結果로 많은 사

사람들이 犠牲된다 하더라도 南韓國民의 죽음에 대한 원한은 괴뢰도당이 진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南韓에서는 AIDS 病菌에 感染되지 않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사실 南韓에 극소수의 AIDS 感染患者가 있기는 하나 이는 크게 염려될 問題로까지는 보지 않는다.

北韓 新聞은 北韓을 이상적인 國家로 미화시키기 위해 外國人과의 대담을 과장, 왜곡시켜 보도한다 1981年 韓國系 美國人 이만우 교수가 北韓을 방문하였을때 로동신문 기자로부터 平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교수는 “平壤은 아름답고 깨끗한 都市”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로동신문은 “이만우 교수는 平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平生을 통해 이와 같이 아름다운 都市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만우 교수는 歸國後 또 하나의 경험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내가 平壤을 訪問한 이틀째 되던날 金日成의 生家인 만경대로 案内되었다. 그곳은 北韓의 聖地이다. 案内者는 金日成의 生家, 어린시절 및 그의 革命經歷에 대하여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이곳 博物館에서 나와 案内員은 1945年 韓國解放을 위한 金日成의 역할에 대해 言爭을 벌였다. 나는 韓國은 金日成이 解放시킨 것이 아니고 日本이 戰爭에서 敗亡하므로써 해방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로동신문에는 ‘이 교수는 위대한 지도자 金日成의 이야기

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고 金日成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뿐인 진실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하였으며 博物館 구
경을 끝낸후 이교수는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은 과거에 조
선의 解放과 獨立을 위해 싸웠고 오늘날에는 朝鮮의 統
一을 위해 모든것을 犧牲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報道
하였다.”

이 사실에 대해 이교수는 “내가 北韓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주최측에서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절대 거짓말이나
왜곡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의 요청을 尊重하여
나에 관한 記事는 로동신문에 절대 掲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했다.

北韓의 선전은 특히 寫眞分野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北
韓當局은 幸福하고 健康하며 옷을 잘차려입은 사람들이나
社會의 밝은 分野에 대한 것만을 보이려고 努力하고 있
다. 北韓에서 發刊되는 사진 잡지 “Korea”나 國內外에
配布되는 記錄文에 掲載되는 寫眞들은 과장되고 非現實的
인 自我像을 보여주고 있다.

韓國社會를 研究하고 있는 한 美國學者가 사진잡지에 게
재되고 있는 사진들을 分析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結論
지었다.

“직업 모델들이 日常生活을 영위하는 주민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같은 男子나 女子들이 集團農場 일꾼이나
平壤의 事務職員 또는 다른 都市의 工場勞動者 및 여러

학교의 학생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소에 관한 기록에도 영화배우들을 환자, 의사 및 사무원으로 가장시키고 있다. 1985년 전에는 北韓當局은 許可없이 사람이나 풍경을 찍을 수 없도록 하였다. 1984年, 우는 아기를 찍었던 외국 사진작가는 필름을 압수당했다. 1985년, 日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근래에는 北韓에서도 建物이나 교량, 그외에 군사보안을 요하는 것이 아닌 구조물들의 사진을 찍는 것이 許容되었다 한다. 그러나 訪問客들이 北韓社會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장면을 찍으려고 하였을 때 안내원들이 즉각 그를 위협하거나 금지시켰다. 1986년 스위스 사진가들은 만약 좋지 않은 장면을 찍으면 고가의 촬영장비들을 몰수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北韓에 대한 독자적인 촬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北韓의 宣傳活動에 대한 批判은 반역행위로 간주된다. 가장 극적인 실례가 시인이며 번역가로서 베네주엘라에서 平壤으로 초대되었던 Ali Lemada의 경우이다. 그는 1966년 선전물번역작업을 위해 평양에 초대되어 갔는데 北韓의 선전내용이 신뢰성이 없으므로 외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외국간첩죄로 6년이상 독방에 감금되었었다.

3. 外國 媒體 報道

外國記者들이 北韓에 관한 보도를 시도하는 것은 平壤 訪問을 원하는 사람만큼 엄청난 障礙에 부딪히게 된다. 北韓에서 外國으로 나갈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교통수단은 일주일에 두번 운행되는 북경행 열차와 북경과 모스크바로 가는 항공편이 각 하나씩 있을 뿐이다. 국영 보도 매체와 연관이 없는 어떤 外國記者도 平壤으로 들어가 수 있는 許可를 받지 못한다. 外國으로부터 北韓영내에 오는 모든 항공기는 철저한 검열을 받게 되며 모든 文學書籍은 압수 소각된다.

北韓政府는 批判的인 報道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外國인들과의 회합에 많은 신경을 쓴다. 1985년 北韓政府는 제3세계 言論人 會議를 主催하였다. 그러나 參加者들은 북한 당국에 지극히 동조적인 言論人들로만 제한하였다. 회의 參席者들과 言論人, 作家, 政治指導者 또는 일반인들과의 비공식회의 요청은 승인받지 못했다. 議題는 북한 주최측에서 통제하였고 참가자들은 모든 會議는 사진에 치밀하게 計劃된 각본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회의 참가 言論人들이 개성에 다녀왔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참가자들은 다녀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발표는 言論人들이 북한 내부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위한 허위발표였었다.

1986년 12월 북한을 방문한 외국 특파원들이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자 조선중앙통신사는 그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특별히 초청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이며, 사기꾼이라고 매도하였다. UPI의 James Miles, 로이터 통신의 Graham Evanshaw 및 AFP의 Pierre-Antoine Donnet 기자는 “제국주의의 나팔수”라고 비난 받았으며 Donnet 기자는 북경에서 보낸 회신에서 조선 관리들과의 모든 면담을 거절 당하였으나 안내원들은 한사코 북한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써 줄 것을 希望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김정일은 날이 갈수록 여성들에게 모양있는 모자나 밝은색의 옷을 입도록 지시 함으로써 北韓社會의 실상을 가장시키려고 努力하여 왔다. 이러한 화려한 색의 옷이 北韓 記者들이나 平壤을 잠시 방문하는 外國記者들의 취재 대상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日本 요미우리 新聞(1986.9.15-16)에 女子들이 공원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포함한 일련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편집 당국은 이 옷을 중국 여자들의 옷과 비교 게재하였다.

第15章 集會와 結社의 自由

제 20조 : (1)사람은 누구나 평화적인 集會와 結社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아무도 어떤 結社에 가입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北韓憲法 53條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主義的 정당, 社會團體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68 조는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받아들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조국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北韓刑法의 많은 條項은 世界 人權宣言 20條에 선언된 인간의 권리와 憲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刑法 78條는 國家主權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활동”과 “국가주권에 적대할 목적을 가진 조직에 가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집회의 자유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예를들어 한 歸順者는 세명이상으로 구성된 비인가 모임은 불법단체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조선 노동당 규약 제 9 장에는 당과 근로 대중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한다.

“근로 대중의 조직들은 근로 대중의 政治 組織이며 항일 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革命 傳統을 계승하는 당의 外 廓團體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黨과 大衆을 연결하는 당의 충실한 幫助者이다.”

“社會主義 노동 청년 동맹은 혁명 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 조직이며 당의 戰鬥 後衛隊이다”

여성동맹, 종교단체 및 정당을 포함한 모든 조직단체는 政府에 의해 통제되며 이 조직을 통해 노동당원이나 지지사를 포섭한다. 독자적인 公共施設이나 단체는 北韓에 存在할 수 없다. 노동당은 100 개가 넘는 대중조직을 감독할 責任이 있으며 그중 4개組織 - 社會主義 노동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조선직업총동맹 - 은 중복되기도 하나 약 110 만이 넘는 盟員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주요 목적은 노동당을 지지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이 대중조직은 또한 종종 北韓當局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에 동원되는데, 그 예로 生産增大를 위한 천리마 운동에의 參與등이 있다. 아동들은 이런 조직을 통해 外國 高官이 北韓을 방문할 때 공항에서부터 平壤까지 인도에 들어서서 환영하는데에 동원된다.

外國 訪問客과 歸順者들은 金日成과 金正日의 생일에는 운동경기, 전시회, 행진, 카드섹션 및 군중집회와 같은 행사에 모든 사람이 필히 參加해야 함은 물론 예행연습에도 반드시

시 參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不參者는 革命精神의 결
여, 불충성으로 평가받게 되며, 이러한 행사에의 참여는 공
식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된다.

第16章 參政權과 選舉權

- 제 21 조 : (1)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또는 자유스럽게 選出된 대표를 통해 自國의 통치에 참여할 權利를 가진다.
- (2)사람은 누구나 자국에서 공무를 맡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3)人民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定期的이고 眞正한 選舉, 즉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스런 선거절차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표시되어야 한다.

北韓은 住民들에게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해 政府를 선택하는 權利를 許容하지 않으므로서 第 21 條를 위반하고 있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 및 일부 제한된 충성당원들이 지난 40년 동안 北韓을 통치해 왔다. 자유스럽고 공정한 선거나 기타 대중의 참여없이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 아버지의 후계자로 선정되었다.

더구나 가족의 배경이나 불충성이란 이유 때문에 많은 北韓住民들이 노동당이나 관직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1. 政權構造의 概觀

北韓憲法은 立法, 行政 및 사법기관과 선거를 규정해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行政機能은 조선 노동당의 통제하에 있다.

1948년 北韓憲法은 1936년의 蘇聯憲法을 모방하여, 이론적으로는 당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만들었다. 憲法은 또한 個人의 재산소유권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1972년 中共憲法을 모방하여 엄격한 계획경제를 규정한 社會主義 國家가 되었다.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 노동당은 근년에 國防, 첩보, 보안 및 司法行政權마저 행사하여 왔다고 한다. 또다른 보고에 의하면 이 기능은 1986년 내각으로 환원되었다고도 한다.

2. 選 舉

1972년 北韓憲法 83條는 “각급 主權機關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거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同52條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權利를 가

진다”고 되어 있다.

北韓憲法 73條 및 75條는 최고 人民會議을 “조선민주주의 人民共和國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대의원의 선거를 4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의원은 人口 30,000명당 한명의 比率로 선출된다. 현재 600여명의 대의원이 있으며 그들의 97.6%가 노동당원이다.

후보는 노동당에 의해 단일후보를 선정하며 비밀투표는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당 이외에 2개 정당이 있어 外觀上으로는 다당제를 採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두개의 당을 政府가 통제하고 있다.

1986년의 선거에는 50%이상의 유권자가 오전 11시까지 투표를 完了하였고 정오경엔 거의 모두가 투표를 完了했다고 보도 되었다.北韓政府의 소식통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최고 人民會議에서 만장일치로 재선되었고 대의원은 100% 전원 참석하였으며 반대표는 없었다고 發表하였다.

3. 最高 人民會議

北韓憲法에 의하면 立法機關인 最高 人民會議에는 다음과 같은 權限이 부여되어 있다.

— 憲法과 기타 法律의 立法 및 개정

- 國內外 政策樹立
- 주석선출
- 부주석, 中央人民委員會 委員, 총리, 국방위원회 부위원
장 및 중앙재판소 소장선거 및 소환
-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 및 해임
- 人民經濟計劃 承認
- 國家豫算 承認
- 전쟁 및 평화관련사항 결정

최고 인민회의는 주석을 비난하거나 소환할 권한이 없
을뿐 아니라 내각구성원의 임명 및 해임에 대한 권한도
없다.

最高 人民會議은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소집되고 폐
회기간중에는 最高 人民會議 常設會議가 이 역할을 수행
한다.

1982년 分析에 의하면 '82년까지 最高 人民會議은 創
設以後 48회 소집되어 107가지의 事案을 처리했다. 제
출된 法律案이 부결된 때는 없었으며 最高 人民會議의 역
할이란 정무원과 노동당의 정책을 비준하는것 뿐이다.

4. 主 席

國家主席은 최고 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連任制限은 없다. 1972년 12월 28일 김일성은 1972년 北韓憲法에 의해 최초의 主席으로 選出되었고, 1977년, 1982년, 1986년에 계속 재선되었다.

主席은 中央人民委員會의 위원장이다. 北韓憲法 第89條에는 “主席은 國家의 수반이며 國家主權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며 憲法에 의해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權限이 부여되고 있다.

- 中央人民委員會를 직접 지도
- 정무원 회의 소집·지도
- 軍의 지휘 통솔
- 最高 人民會議 法令 및 기타 정무원결정서 공포
- 특사권 행사
- 國際條約 비준 및 폐기
- 副主席, 中央人民委員會 서기 및 위원, 총리 그리고 國防委員會 부위원장의 선출 및 소환을 최고 인민회의에 건의
- 최고 인민회의에 法案 제의
- 중앙재판소 및 검찰소 감독

北韓憲法은 김일성의 政治 및 경제철학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들어 4條는 주체사상을 北韓政策의 지침으로 선언하고 있다.

第18條부터 34條는 社會主義 경제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으며 특히 農業과 産業에 있어서 김일성의 집단동원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憲法은 김일성과 그의 政策을 北韓의 절대권한으로 제정하고 있다.

北韓의 공식보도 매체에 의하면 김일성은 지방 현지도에 그의 모든 정성을 경주하면서 地方法과 國家政策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憲法에 구애받지 않는 김일성의 통치권한의 본보기로 그는 그의 아들 김정일을 국가수반의 후계자로 선언하였다.

5. 中央人民委員會

北韓憲法에 국가의 최고정책 결정기구인 中央人民委員會로 되어 있으며, 主席, 副主席, 中央人民委員會 서기장 및 主席의 제의에 의한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中央人民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憲法에 의거 부여된다.

- 國家의 對內外 정책수립
- 내각, 지방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사업지도
- 사법, 검찰기관의 사업지도
- 국방 및 국가정치 보위사업지도
- 憲法, 法令, 主席명령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지시 감독

- 위 條項에 어긋나는 모든 사항의 廢止
- 정부원의 설립 또는 해체
-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각부장과 정무원 성원의 임명 및 해임
- 대사 또는 外交官의 임명 또는 소환
- 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 명예칭호 수여
- 대사실시
- 行政區域의 改編
-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6. 政務院과 各 部長

北韓의 정무원은 中央人民委員會에서 결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최고 인민회의, 主席, 中央人民委員會에 대해 책임을 지며, 총리, 부총리 약 30명의 부장들과 기타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主席의 제의에 의해 총리를 소환할 수 있고 총리의 요청에 의해 중앙인민위원회는 기타 성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

정무원은 國家방위, 안보, 첩보 및 경찰에 관한 사항에는 권한이 없다. 정무원의 權限限界는 다음과 같다.

- 각부, 정무원 직속기관, 地方行政委員會 사업지도
- 정무원 직속기관의 창설 또는 해체
- 國家經濟發展 計劃作成
- 공업, 농업, 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및 보건들의 사업을 조직집행
- 화폐 및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수립
- 外國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 집행
- 사회질서의 유지, 國家의 이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 대책수립
-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하급기관의 결정폐지

7. 司法 및 法執行

北韓 사법에 관한 사항은 第 12 章에서 이미 논의되었고 法執行은 제 12 장과 9 장에서 논의 되었음.

8. 地方行政 機關

北韓은 9 개도, 150 개군, 139 개시, 150 개구 및 4 개직할시가 있다. 지방정권도 중앙정권기관과 유사한 조직구조로 되어 있다. 도와 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4 년이며 군과 시는 2 년이다. 각급 인민회의는 지방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人民委員會를 선출한다. 南韓의 학자들은 이러한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 행정기관이 아닌 中央行政機關의 1개 행정단위 조직으로 보고 있으며 中央行政機關과 노동당의 통제하에 있다고 한다. 地方機關의 立法 또는 결의사항은 중앙인민위원회에 의해 폐지 또는 무효화될 수 있다.

9. 朝鮮 勞動黨

北韓 정권수립 초기에는 勞動黨 全員會議가 매년 개최되었으나, 김일성과 김정일 및 그들의 지도급 심복들에게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노동당 전원회의의 중요성은 날로 줄어들어 開催週期가 길어졌다. 근래에는 5년마다 한번개최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그정도도 되지않아 가장 최근의 전원회의는 1980년 10월에 개최되었다.

조선노동당의 공식적 政策 決定機構는 中央委員會이다. 중앙위원회의 규모는 시기에 따라 자주 變動하는데, 최근의 학술적 분석으로는 정식위원이 150명, 위원의 결원시 보충하는 후보위원이 104명이라고 한다. 中央委員會는 6개월에 한번씩 會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상 이렇게 자주 모이지 않는다. 실제로는 17명의 위원과 16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된 政治局이 8명의 비서와 1명의 총비

서로 구성된 秘書局과 함께 당을 통치한다. 政治局은 당정책을 결정하고 비서국이 그 政策을 집행하는 것이다.

政治局은 김일성, 김정일과 오진우 세사람의 상임위원에 의해 좌우된다.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서 김일성은 이러한 모든 조직의 제 1인자이며 그의 아들 김정일은 제 2인자이다. 조선노동당의 당원은 최고인민회의와 中央人民委員會의 핵심인물들이다.

조선노동당의 당원이 되는 것은 아주 까다롭다. 入黨志願書를 제출하기 위해서도 2년 이상의 당원경력을 가진 정식당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入黨志願書가 받아들여지면 후보당원은 정규당원이 되기까지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기다려야 하며, 이 기간동안 노동당은 후보당원이 김일성과 김정일 및 그들의 政策과 理念에 충실한가를 반복해서 심사한다. 이 심사에 통과해야만 정식당원이 될 수 있다.

1982年 北韓에는 약 300만명의 당원이 있었으며 이는 총인구의 약 18%가 된다. 이와같이 막대한 당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1948年 日本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소수의 집단에 의해 실제적으로 통치되어 왔다. 한 北韓問題 專門家에 의하면 그때부터 약 350명의 당원이 다음과 같은 550개의 주요 직책을 맡아 왔다고 한다.

- 조선노동당 정치국 및 비서국— 48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38

- 主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50
- 부장 및 기타 중앙정권기구— 117

第17章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基本權

本章에서는 北韓의 경제, 사회, 문화 실태를 다루었으며, 北韓의 생활상태와 政府의 성명과 실제와의 차이점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이러한 기본권의 차별적용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1. 社會保障

제 22 조 :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國家的 노력 및 國際的 協力を 통해 그리고 자국의 構造 및 資源에 알맞게 자기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스런 발전에 不可缺한 經濟的·文化的 諸權利를 실현시킬 권리를 가진다.

北韓이 UN에 제출한 통계보고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74세라고 하였다. 韓國 동란이후 보건관계의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 보고는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北韓의 도시 및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 관한 사진이나 보고가 있다고는 하나 만약 北韓住民의 평균수명이 74세라면 더 많은 노인들이 여기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남성은 65세에, 여성은 60세에 社會로부터

은퇴한다. “은퇴” 후에도 노동자는 힘이 덜드는 직장에 배치된다는 것뿐 실제 노동시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北韓방문자와 전 北韓의 관리는 은퇴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은퇴”와 동시에 식량배급량도 감소된다고 하였다.

2. 勤勞, 休息 및 노예상태

제 23조 : (1)사람은 누구나 일할 權利와 職業의 자유선택권 및 공정하고 유리한 勞動條件과 失業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사람은 누구나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勞動에 대해 동일한 報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人間의 존엄성에 알맞는 生活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社會的 보호수단으로 補充되는, 公正하고 妥當한 報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해 勞動組合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勞動時間 制限 및 정기

적인 有給休暇를 포함한 休息과 餘暇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처지에 묶여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北韓에서는 지도급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최소의 임금과 제한된 식량을 위해 매일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주민들은 政府의 許可없이 부여받은 그들의 직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독립된 노동조합의 설립은 금지되고 있다.

北韓 憲法 69 條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北韓 憲法 第 27 條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노동에 참가하여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고 하고, 同 28 條는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國家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同 29 條는 “국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만 16세부터이다. 國家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同 56 條는 더 나아가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노동의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되어있다.

北韓 形법의 몇개 조항은 강제노동을 금지한 人間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예를들어 形법 第 197 條는 “의무적 노동, 사회적 및 국가적 과업 또는 전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생산노동을 악의적으로 기피한 자는 3개월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同 174 條는 “학교를 졸업한후 취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상당한 이유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北韓의 임시 人民委員會 政令 57 號 第 52 條는 국가 보위부의 허가없이 직업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 근로조건

北韓의 실제적인 근로조건은 노동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 김정일이 노동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理論을 창조하였다고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 공헌이라고 칭하는 概念이 바로 “速度戰”이다. 이것을 “社會主義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적 전투형태”라고 定義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과업을 가능한 최단시간내

에 완수한다는 단순한 의미밖에 없다. 노동활동이 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理論의 概念은 군대식 용어로 표현되었으며, 勞動規律을 戰爭規律과 동일시 하고 있다.

군대는 대규모의 노동력을 이루고 있다. 군인들의 복무시간중 반 이상이 건설공사와 기타 경제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美國의 학술자료에 의하면 병역은 18세부터 28세까지 의무화 되어 있다. 英國의 자료에 의하면 군복무 의무년령은 26세까지 또는 그보다 빠르다고 되어 있다.

군이 필요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결정한다. 모든 남성은 신체장애자를 제외하고는 軍에 복무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노동력은 근본적으로 18~28세의 여성들로 채워진다고 볼 수 있다. 여러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무직, 가벼운 건설공사, 산업체, 농장, 교사, 간호원 및 운동선수로 일하고 있다.

하루에 8시간 노동과 휴식시간이 憲法에 보장되어 있으나 일반주민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의무적 정치집회와 운동행사를 포함하여 9시간 내지 12시간이 된다. 軍人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약 16시간이다. 1986년 가을 대대적인 언론 캠페인이 전개되었는데 그당시 약 15만명이 넘는 軍인이 비무장지대에서 건설공사 현

장으로 투입되었다. 北韓방송은 민간인들이 비무장지대 군사기지에서 군인들이 공사장으로 떠나는 것을 마치 전쟁터로 출정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환송행사를 거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軍人들이 건설현장에 도착하자 다음과 같이 방송하였다.

“사리원, 은파 및 봉산군을 비롯한 도내의 인민, 학생 및 아동들은 그들 마을 연도에 나와 전방진지와 경비초소를 떠나 평화스러운 건설현장에 도착한 朝鮮人民軍 용사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1986년 北韓 新聞들은 이들 병사들이 軍의 規律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며, “1분 1초의 지체도 없이”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였다. 이 공사는 초인간적 노동이 필요하였고 割當된 작업량을 計劃보다 빨리 완수해야 했다. 北韓 言論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병사들은 정해진 시간내에 잠시의 지체나 그릇됨이 없이 각자의 革命的 使命을 조심스레 수행하려는 열정과 헌신을 통해 그들의 애국심을 발휘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하였다.

1986年6月16日 노동신문의 “우리 人民軍隊는 創造와 건설의 위력한 부대”라는 제목으로 군대는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창조와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임무를 받았다. ……………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

호 보위하며 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한다. ……………” 병사들은 “無條件 명령에 복종” 하도록 教育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 기사는 모범적인 軍人の 생명을 희생하는 의지력을 묘사하면서 軍의 임무와 노동의 의무를 구분하지 않았다. 건설노력은 수령과 당을 保護하기 위한 군인 임무의 일부로 보고있다.

“인민군의 정신은 자신을 인간폭탄으로 만들어 당과 수령 및 나라를 擁護하기 위한 불요불굴의 정신이며 언제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집요한 투쟁정신이다.” 고 하였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동원된 병사들은 천사를 뜨기전에 휴식이 許容되지 않으며 “300일 어업 원정”이란 어업에 종사하는 軍人들이 300일간 계속 바다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더구나 軍人の 복무기간이 8년이라고 하는 것은 8년동안 단 한번도 집에 갈 수 없음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北韓言論이 使用하는 “6대 고지 점령”이라는 구호는 식량, 纖維, 어업, 石炭, 住宅 그리고 철강에 있어서 획기적 生産增大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 구호는 노동자들에게 2배내지 3배의 힘을 내도록 강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北韓의 노동신문은 1960년대말 “빈손으로 다니지 않기” 운동에서 한여성 영웅

의 과업달성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녀는 등에 지게를 지고 퇴비를 나르면서 양손으로는 앞치마에 퇴비를 가득 싸서 날랐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중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影響은 심각하다. 1980 년대의 귀순자들은 병사들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완전히 기진”해 있다고 증언했다. 건설현장을 우연히 보게된 訪北者들은 모든 노동자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옷은 남루하였으며 기운이 없었다고 하였다.

軍人들의 노동은 주로 세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1) 도로, 댐, 터널, 제방 및 방대한 군사시설 건설공사, (2) 순천 방직공장, 비료공장, 탄광, 농장 및 기타 공장에서의 생산증산, (3) 金日成과 金正日을 칭송하기 위한 기념 건조물 건설 등이다.

평양은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다. 김일성 자신이 평양을 “꿈의 도시” 또는 “자신의 創造物” 그리고 “자신의 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평양은 김일성의 이상적 공산주의 도시로 가꾸어져 있다. 평양에 길이 40 km, 깊이 80 m에서 200 m에 이르는 지하철을 건설하였고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가 살아온 날짜에 해당하는 수의 돌로 “개선문”을 건조하였다. 또한 동양 최대의 실내체육관을 최단기록인 10개월만에 完工하였으며 도로가운데에

김일성과 그의 측근자들의 통행을 위한 넓은 전용도로를 만들었고 기타 김일성의 명예를 칭송하기 위한 수많은 博物館과 동상을 建立하였다.

평양을 방문하였던 사람들은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軍工兵隊의 감독아래 불철주야 건설공사에 동원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공사장에 동원된 노동자들중 하루종일 쉬지않고 일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한마디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1979년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을 호텔¹의 창문 하나만을 통해 25개의 기중기를 보았다고 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건설공사의 예로 평양 보통강변의 창광원(헬스센터)개장 공사를 들 수 있다. 평양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곳에서 사용하는 물을 원래 강물로 채우려고 계획하였으나 김정일의 깨끗한 물을 사용하라는 지시에 의거, 10-20층 건물이 밀집하고 있는 아파트촌의 땅밑을 굴착하여 수 km 떨어진 대동강으로부터 수도관을 배설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²⁰⁾

(20) 1986년 北韓의 言論媒體는 김정일이 人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물을 人民들이 使用할 수 있도록 모든 費用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의 의지를 칭송하였다. 그러나 그곳 욕탕은 호화찬란하며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만이 使用할 수 있는 施設이다.

최근 北韓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시설은 일반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엘리트들이나 外國 운동선수들만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평양의 노동자들은 最近 世界에서 가장 큰 호텔과 몇개의 室內體育館을 건설하는데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군부대의 건설공사 동원외에도 죄수와 民間人 그리고 學生들이 “자원노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고등중학교나 대학생들은 일년에 한달은 完全히 노력봉사에 동원되는데, 통상 야간공사나 큰 기술이 필요치 않는 작업 또는 모심기나 수확과 같은 농장일을 한다. 더구나 學生들은 한달의 노동학습기간외에도 일년에 150일 정도는 작업을 한다. 한 北韓問題에 정통한 학자에 의하면 전형적인 日課表는 다음과 같다.

일 수	작업기간
30-45	모심기
15-20	추 수
10-15	겨울방학
40-50	여름방학
15-20	일요일
15-40	오후수업
145-190	총 계

어떤 學生들은 평양에서의 야간 건설작업을 “재미”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 作業은 教育의 일환이며 그들은 친구들과 서로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한다. 夜間 작업시간에는 음식과 음료수가 나온다고 한다. 학생들의 작업은 애국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학생들의 작업은 소년궁전, 박물관 그리고 아파트 건물과 같은 건설공사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속도를 요구하는 눈가림식의 공사는 다시 손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의 노동은 虛費되고 있다. 많은 學生들은 그들이 全力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불만을 품게되며 특히 농장일을 싫어한다.

이러한 “자원” 학생 노동자들을 위해 김정일이 “70일 전투”란 것을 만들어 공사기간을 단축시켰다. “속도전 청년충격여단”은 철도 전기 및 기타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다. 1988년 北韓 政府는 “200일 전투”를 發表함으로써 제40주년 北韓 創建記念日 前에 경제목표를 달성케 하였다.

나. 노동조합

北韓의 노동조합 기능은 노동자들의 할당생산량을 달성하고 政府의 理念을 교화시키는 것이다. 여러가지 비유가 노동자들을 교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예를들어 北韓의 언론매체는 1986년 노동자들을 “여러 조각의 강

철”이며 “특수형태로 개조” 되어야 한다는 政府의 성명을 계속 보도하였다. 이러한 모든 비유는 노동자들을 당에 의해 양생되는 찰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관점은 北韓憲法에도 명시되어 있다. 第39條는 “국가는 社會主義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勞動組合의 임무는 당의 명령을 완수하는 차량역할을 한다. 北韓의 2대 勞動組織體의 하나인 朝鮮職業 總同盟의 지도자였던 “서희”는 연맹은 노동당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치성을 維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1958년에 숙청당했다. 그후로는 조합에서 어떤 이익을 제기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물론 罷業은 금지되어 있다.

다. 食糧

제 25조 : (1)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하는데 충분한 生活水準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生活水準에는 의식주, 의료, 필요한 社會的 施設의 利用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失業, 질병, 능력상실, 배우자의 사망, 노년 또는 不可抗力에서 오는 그밖의

생계불능의 경우에 生活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2)모자(母子)는 特別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결혼생활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똑같은 社會的 保護를 받는다.

김일성은 “곧 우리는 쌀밥을 먹게되고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勞動新聞은 1987년 2월 10일자 기사에서 “7個年計劃(1987-94) 기간 동안에 우리는 人民의 食糧, 衣類 및 집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人民의 生活水準을 한단계 높이 向上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北韓政府는 양곡 배급, 급여 모든 商品의 價格 그리고 모든 얻을 수 있는 양곡의 종류를 결정한다. 다른 모든 側面들과 마찬가지로 배급이나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食糧의 양은 그의 출신성분과 직업 및 政治的 지위에 달려있다. 지배계층을 除外하면 대중의 식량은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北韓은 농토의 개조와 농산물 생산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식량부족난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문객들은 평양이외의 地域住民은 무기력하고 힘이 없으며 창백하고 야위어 있다고 한다. 최근北韓을 방문

했던 한 한국계 美國人은 그의 누이가 창백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을 보고 서글퍼 했다. 1980 년대에 北韓을 방문한 한국계 中國人들은 北韓의 친척방문 일정을 단축시켜야 했다. 그들이 방문하여 밥을 먹음으로써 친척들이 한달동안 굶주릴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가족 상봉의 결과는 北韓住民들이 한달동안 살아야 하는 食糧이 조금밖에 남지않은 불행한 狀態로 만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계 中國人들은 자신들의 친척을 방문할 때에는 자기식량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다른 中國人 방문자들은 많은 北韓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방문객으로부터 食糧을 구걸하였다고 한다. 과로와 수면 또는 휴식 부족으로 이러한 영양실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北韓 주민들의 健康狀態는 엉망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의 主食은 穀類인데 쌀, 옥수수, 밀등 다양하지 못한 식량만을 얻을 수 있으며, 그 量은 아주 적다. 학자와 중국계 韓國人들의 報告에 의하면 지난 10年동안 個人當 식량소모량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資料나 北韓政府 소식통마저 양곡 배급량은 1957年 이후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학자들과 北韓 방문자들의 보고에 의한 資料를 分析한 결과 일반적인 手段으로는 도시 가족들의 生活必須品 구입에 소

요되는 輸入에 대한 消費率을 추산하기는 불가능하다. 평양에 살고 있는 5인가족의 경우 그들 가족의 수입에서 양곡구입에 소비되는 率は 약 48-50% 정도 되는 것 같다. 의류구입은 약 24-28%이다. 난방과 요리에 소요되는 연료 구입율은 매우 적다. 輸入의 나머지인 14-28%는 부식(可能할 때)과 오락등에 사용된다.²¹⁾ 肉類, 과일, 생선 등은 터무니 없는 값으로 구입은 가능하다.²²⁾ 예를들어 평양에서 돼지고기 500 ㄱ 의 값은 약 4.7 원, 소고기 475 ㄱ 의 값은 6 원이다.²³⁾

一般的으로 勞動者의 임금폭은 月 90-140 원이며 공장 노동자의 월급료는 90 원이다.

-
- (21) 住民들은 한달에 집세로서 명목상 4~6 원을 支拂하나 어떤 주민은 전혀 支拂하지 않는다.
 - (22) 평양에 있는 外交官들은 別途의 商店에서 그들의 食糧을 구입하고 있으나 選擇과 量은 制限되어 있다고 한다.
 - (23) 北韓의 화폐가치를 推定하기는 꽤 어렵다. 1987年 11月 18日 런던에 있는 美國 銀行에서 北韓 화폐 1 원이 美貨 0.94 弗로 交換되었고 1980年 7月 銀行과 國際貿易間의 商業 外換時勢는 美貨 1 弗에 北韓 화폐 0.86 원으로 交換되었으나 여행자나 非商業 貿易의 換率은 1.86 원에 美貨 1 弗이었다. 임금과 물가는 1981年 이후 變動이 없는 것 같다.

평양에서 거래되고 있는 일부 商品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 24)

商 品	價 格
아코디온 (小 또는 大)	400-680 원
괘종시계	20 원
닭고기 통조림 (475 g)	3.45 원
생선 통조림	1.9 원
돼지고기 통조림 (500 g)	3.8 원
衣 類 (여성용)	11-16 원
전동 축음기	120-350 원
콩 (500 g)	1.4 원
프라스틱 손가방	2.3 원
레코드 판	5 원
냉 장 고	300 원

(24) 평양이외의 都市에서는 평양보다 商品들이 다양하지 못하며 통조림도 거의 없다. 농촌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더 많은 食糧을 구할 수 있으며 특히 김일성의 생일, 독립일, 노동당 창건일등과 같은 특수한 날에는 가정에서 가축을 도살하여 먹을 수 있다. 한 귀순자의 말에 의하면 北韓 住民들은 “평양에 살지 못할바엔 다른 都市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都市보다 農村을 더 좋아한다. 농촌에서는 부족한 食糧을 보충할 수 있는 야채 및 농작물을 가꿀 수 있기 때문이다. ………” 라고 하였다.

商 品	價 格
쌀 (kg)	0.08 원
재 봉 틀	315 원
여자용 구두	3.6-15 원
남자용 셔츠	25 원
비 누	2 원
남자용 양복	116-122 원
흑백 텔레비전	800 원
보 온 병	15 원
침대용 모포	85-250 원

대부분의 주민들의 주식인 곡류는 政治的 지위와 직장에 따라 배급량이 달라진다. 김일성 일가와 지도층 엘리트 보다 계층이 낮은 사람들의 1일 곡류할당량은 다음과 같다.²⁵⁾

900g : 광부, 重工業分野에 종사하는 技術勞動者, 어부, 공업분야 종사자

850g : 군사 정전위원회 소속군인, 기타 고급장교

800g : 공군조종사, 군의 특수장교

(25) 本 資料는 여러 귀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였다. 1974年 1月 6日의 北韓의 양곡 배급 규정에 의하면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1952年 3月 27日의 규정에는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1979년의 南韓의 학술 자료에 의하면 10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700ℳ : 군장교, 경공업분야 종사자, 사무원, 기사, 선생,
정부관리, 대학생, 평양주민

700ℳ 이하 : 평양이외의 주민

400ℳ : 고등학생, 불구자, 55 세이상의 여자, 61 세 이상
의 남자

200-300ℳ : 미취학 아동

200ℳ : 죄수

학자와 귀순자들의 말에 의하면 곡류는 통상 쌀에 옥수수나 밀가루를 혼합한 것이다. 1970 年代初까지도 평양에서는 比率이 70:30 이지만 그외 地域은 50:50, 외딴 지역은 30:70 이었다. 韓國사람들은 쌀을 좋아하기 때문에 混合比率에 대한 쌀의 삭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北韓의 食糧事情이 惡化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평양의 주민들은 副食이나 기타 음식물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 충분치 못하다. 上述한 예로보아 月平均 175 원의 급여를 받는 가정은 한달에 36.75 원 즉 월 수입의 21 %를 부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평양에서 上述한 급여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한달에 닭고기통조림 10 개, 생선 통조림 19 개, 돼지고기 통조림 9 개, 콩통조림 26 개 또는 쌀 459 kg이다. 바꿔말해서 매달 다음과 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돼지고기 통조림 4 개

닭고기 통조림	3 개
생선 통조림	3 개
콩 통조림	3 개
쌀	16 kg

上述한 식단은 비교적 높은 영양가를 함유하고 있으나 이것들을 전부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5인 가족의 남자들은 (양친, 어린이들 또는 조부모 중 한사람) 이러한 음식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充分한 칼로리는 얻지 못한다. 즉 성인남자는 하루에 3,000 칼로리를 섭취하여야 하나 위 식단을 볼때 2,895칼로리, 16-19세의 男子는 3,070 칼로리가 필요하나 1,851 칼로리, 노년층 남자는 2,000-2,800 이나 섭취량은 1,851 칼로리다. 여성들도 하루에 2,310 칼로리가 필요하나 1,851 칼로리만 섭취할 수 있다.

上述한 食單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하지만 칼슘이 부족하다. 각자의 칼슘섭취량은 정상 섭취량에서 청소년들은 $1/3-2/5$, 부모들은 $5/9$, 노인들은 $1/3$ 밖에 섭취하지 못한다. 여자들은 하루에 14-28mg의 철분을 섭취하여야 하나 實際적으로 16mg 밖에 섭취하지 못한다.

평양 이외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부식이나 기타 음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배급받는 食糧은 충분한 양의 칼로리, 단백질, 칼슘, 철분, 미네랄 및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예를들어 체중 60 kg

의 광부나 重工業 分野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들은 하루에 3,720 칼로리를 섭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급받는 양곡 900g(쌀과 옥수수 또는 밀의 混合物 : 50:50 또는 70:30)에서는 3,000 칼로리 정도 밖에 섭취하지 못한다. 1~6세까지의 아동들은 하루에 1,400-1,800 칼로리를 섭취하여야 하나 北韓에서는 870-880 칼로리 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쌀과 옥수수 또는 다른 곡류와 混合된 配給食糧으로는 적당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어떤 年齡層에서도 어렵다.

성인 男女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하루에 53-41g이다. 現在의 配給食糧으로 男子와 女子들의 섭취량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그들은 하루에 43g을 섭취하여야 하는데 實際 섭취량은 32-42g에 불과하다. 1~6세 兒童은 23-29g을 섭취하여야 하나 평양이외 地域에서 살고있는 兒童들은 하루에 20-26g 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배급양곡에서 섭취할 수 있는 칼슘과 철분 역시 基準置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년 男女들의 하루 칼슘 섭취 基準量은 400-500mg이다.

그러나 상위급인 하루 900g의 양곡배급에서 섭취할 수 있는 칼슘량은 292mg에 불과하다. 고등학생들의 하루 섭취기준량은 男子의 경우 1,000mg이며 女子의 경

우 700mg 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고 있는 배급양곡량은 400g이며 여기에서 섭취할 수 있는 양은 약 70-130mg 에 불과하다. 1~6 세까지의 兒童들의 하루 基準量은 500mg 이나 그들은 단지 43-81mg 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철분 역시 배급양곡량에서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700g 이상의 배급량에서는 男子들이 적성량의 철분을 섭취할 수 있다. 그러나 女子들은 50:50 의 혼합양곡 700g (쌀과 밀) 이상 900g (쌀과 옥수수) 에서는 하루 基準量 14mg 을 섭취할 수 있으나 女子는 하루에 14-28mg 이 必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1~6 세 兒童들의 하루 섭취기준량은 9 mg 이나 실제 3~5 mg 밖에 섭취 못하고 있다. 북송 재일교포가 日本으로 보낸 편지에서 하급 계층주민들이 받고 있는 配給量으로는 연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 ………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는 우리에게 충분한 食糧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 우리는 단지 우리가 겨우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食糧만을 配給받았다. 이 食糧은 주로 쌀과 밀가루 및 옥수수, 조 등의 混合穀이었다. ……… 우리는 처음에 이런 곡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설사병에 걸렸었다. 우리는 이런 조잡한 음식에 점차 익숙해져 설사만은 면하게 되었으나 배고픔을 견디기가 몹시 힘들다.

우리는 配給食糧만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日本에 어떤 種類의 음식이라도 좋으니 보내달라고 편지했으나 아직 답장이 없다.

日本에서는 北韓이 하도 住民들을 잘 먹이고 잘입히고 잘살게 한다고 선전을 해서 우리 가족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 나는 처음에 껍질이 몽땅 벗겨진 나무를 보고 놀랐지만 곧 그 理由를 알게 되었다. 먹을 수만 있다면 풀뿌리건 나무 껍질이건 가리지 않는다. ……… ”

노동당은 1970 년대에 물에 밥을 먹는 것은 김일성과 당에 대한 충성이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더구나 金日成의 자력갱생 정책의 위대한 업적으로 食糧의 劃期的 증산을 떠들고 있지만 食糧不足 事情은 여전하다. 1982 年 4 月 14 日 김일성은 그의 신년사에서 “쌀은 共產主義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모든 住民들의 희생을 強調했고 “社會主義 建設을 完成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食糧不足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宣稱함으로써 食糧問題 解決에 全 住民들을 동원하였다.

報道資料에 의하면 대부분의 北韓 住民들은 15 日마다 양곡배급을 받고 있으나 그중 이틀분은 “애국미” 라는 명목으로 삭감하고 있어 월말 가까이 되면 대부분의 家庭은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죽으로 연명할 수 밖에 없다.

消費者들은 그들의 식사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불만을 품게 된다. 그 理由는 質이 좋은 糧穀과 기타 식량이 外國으로 輸出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食糧의 質과 量에 대한 부족분을 國內住民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량배급의 向上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평양에서 일주일에 2~3개의 달걀이 추가 배급된 것뿐이다. 과일의 주종으로는 사과, 배, 복숭아 등이 있어 평양에서 販賣되고 또한 蘇聯으로 輸出되고 있다. 냉동시설의 부족으로 생선은 선착순으로 판매되고 있다. 주류 음료의 판매는 價格이 비싸고 일반 대중에게 돌아갈 수 없을 수 만큼 통제되어 있다. 엘리트들은 個人的으로 酒類를 즐기고 있으나 대중들은 구경할 수 없다.

4. 衣 類

衣類 역시 각자의 소속계층에 따라 할당된다. 金日成 일가와 친척들은 衣類구입에 制限이 없다. 엘리트들과 핵심 계층은 양복이나 모직제품 때로는 모피류까지도 特別商店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적대계층이나 동요계층의 衣類는 형편이 없다. 가장 큰 불만은 내복이나 따뜻한 외투 및 장갑과 양말의 부족현상이다. 낮은 계층은 質이 낮은 레이온이나 나이론으로 된 옷을 形態의 선택권이 없이 입는다.

옷은 國家에서 配給하며 商店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귀순자들의 말에 의하면 學生들은 그들의 제복을 1년에 두번 金日成의 하사품으로 받는다. 勞動者들은 國家로부터 1년에 한벌 내지 두벌의 옷을 받는다. 시골에서는 모든 衣類를 國家에서 支給한다. 上位階層은 2년에 양복 한벌씩을 저렴한 價格으로 구입할 수 있다.

衣類나 기타 소모품의 구입은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배급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배급표는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이것은 의류 구매조차 國家에서 부여 받는 特權임을 意味한다.²⁶⁾

外國 訪問客이 백화점에 가게되면 그들을 위해 展示用 衣類들이 진열되나 그들이 떠나면 즉시 치워 버린다.

1987년 평양을 訪問한바 있는 한 제3세계 外交官은 外國 訪問客이 그 商店앞을 지나가게 될때쯤되면 많은 商品이 진열장에 展示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韓國系 美國人들도 經驗하였다고 한다.

(26) 1987년 평양을 訪問한 外國人은 빨간색 도장이 찍혀있는 붉은돈을 갖고 있는 세계층의 北韓 주민들이 特殊商店에서 外製 식품과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5. 住 宅

北韓政府는 그들이 供給하는 住宅의 質과 量은 충분하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實際的으로 供給되는 住宅의 질과 量은 그들의 主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든 住宅割當은 노동당이나 政府가 통제하고 있으며 각자의 政治的 지위와 社會的 成分에 따라 다르다. 귀순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고급 住宅은 엘리트 계층에 할당되며 엘리트들은 단독주택이나 호화아파트에 사는데 단독주택은 단층 아니면 2층 연립으로 정원과 冷·溫水施設,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파트는 8~15층 建築物이 많고 침실 두개,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탕, 냉·온수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지도급 인사들에게는 전화도 공급된다. 高位層 인사일수록 아파트의 낮은 層에 사는데 그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하나 가끔 作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층의 거주자는 당이나 정부원의 부부장급 인사, 대학교수 및 國營企業體 지도자들이다. 訪問客과 귀순자들에 의하면 새롭고 現代的인 아파트가 건설될 때마다 고위급 인사들은 그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어떤 군 고위간부는 16년동안 아홉번이나 이사를 했다. 고위급 인사들이 이사를 할때마다 그들의 직장도 같이 따라옮기게

되는데 이는 각 직장을 다른 職場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하는 政策의 일환이다.

建築水準이 지난 20여년 사이에 많이 向上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엘리트들의 住宅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가장 큰 問題는 엘리베이터 부족, 정전사태 및 온수시설의 부족현상이다. 1970년대에 평양에 거주하였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전기 스위치나 콘센트가 불량하였고 천정은 비가 새고 창문에는 방충망이 없다고 한다.

정부관리, 교사 및 하급 당간부들에게 住宅이 供給되는데 이는 都市開發計劃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1980年代初에 北韓을 떠난 도시계획국의 한 주임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거인의 生活은 市計劃에 包含 고려된다. 住居지역의 1개 주택단지에는 5~6,000명이 살고 있으며 이것이 1개 洞으로 형성된다. 각 아파트는 방 두개와 부엌과 거실로 이루어진다. 쌀이나 야채 및 생선 등 식료품을 파는 商店이 500가구마다 하나씩 있고 各洞에는 이발소, 미장원, 양복점, 목욕탕, 신발수리점, 국수공장, 연료 공급소, 우체국, 의료기관, 유치원, 탁아소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들이 있다.”

住民들은 단지 자기네 구역에 있는 商店에만 등록되어

있고 양곡표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1970年代의 建設促進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住宅不足難은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에 結婚한 한 여배우와 고위 엘리트 계층의 남편은 약 1年동안 별거생활을 한 끝에 겨우 아파트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며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결혼후 2~3년을 기다려야 住宅을 할당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北韓 訪問者에 의하면 평양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신랑의 부모집에서 기약없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평양의 비핵심계층 주민의 住宅事情은 더 나쁘다. 그들이 살고 있는 住宅은 “관자집”으로 보아도 관참을 정도다. 평양의 외곽지대와 비무장 지대 사이에 대규모의 3~4層 特殊아파트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핵심계층의 住宅事情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

시골에는 한집에 두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런 家庭은 물은 우물에서 길어쓰고, 화장실도 집 밖에 있다.

6. 保 健

北韓 憲法 제 48 조는 “國家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鞏固 發展시키며 예방 의학적 방침을 관철하고 사람들의 生命을 보호하며 勤勞者들의 健康을 증진시킨다.” 동 58 조는 “公民은 무상으로 治療를 받을 權利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勞動力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物質的 幫助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病院, 療養所를 비롯한 醫療施設, 國家社會保險 및 社會保障制度에 의하여 保障된다.” 고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서 대부분 醫療奉仕는 社會의 職位에 따라 베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호도된 것이다. 金日成과 그의 일가 및 가까운 친지들은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金日成의 결벽증과 병균 감염에 대한 공포증에 기인한다. 金日成과 면담하였던 美國 방문객들은 면담전에 엄격한 身體檢査를 받아야만 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결에 대한 金日成의 깊은 관심으로 인해 두 개의 計劃이 탄생하였다. 하나는 金日成이 막대한 費用과 犧牲을 치르면서 거대한 목욕탕과 수영시설을 建設한 것으로 이 施設은 엘리트들과 外國人들에게만 개방되었다. 다른 하나는 1년에 4-5회씩 住民들의 身體와 住宅에

대한 위생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 한 귀순자의 말에 의하면 이 검사에서 몸에 이가 있으면 罰金을 내게 되고 모든 여행자는 여행 1주일 전에 목욕을 했다는 위생검사 필증을 휴대해야 하며, 몸에 때가 있으면 이데올로기적 熱誠이 결여되었다고 批判받는다. 1968년 金日成은 봉화 진료소의 建設을 命令했는데, 이는 金日成 자신과 엄선된 엘리트들을 위한 秘密病院이다. 전문가들과 귀순자들에 의하면 이 병원은 최신 醫療裝備과 藥品을 비치하고 있으며 外國人들은 訪問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外國 방문객들은 平壤에 있는 13층 건물의 平壤産院을 訪問하도록 강요받는다. 이 病院은 北韓 의료혜택의 성공적인 실시를 자랑하기 위한 전시용 병원이다. 이 병원은 스웨덴, 독일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최신 醫療裝備를 갖고 있으며 家族이 산실 밖에서 산모를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 施設까지 비치되어 있다. 이 병원의 寫眞이 많은 北韓出版物에 게재되어 있고, 北韓醫療體制의 發展相을 보여주는데 항상 인용되고 있다. 또 다른 사진도 있다. 이러한 장비들이 지하실에 진열되어있는 장면을 찍은 것이다. 이 寫眞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의 주요 裝備들이 展示品에 불과하며 이 최신 醫療施設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리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 醫療裝備는 스웨덴 政府나 民間 醫療機關에 의해 販賣된 것이 아니다. 스웨덴의 소식통에 의하면 수리를 위한 契約이 체

결된 바도 없고 이 裝備에 대한 技術訓練을 실시한 바도 없었다. 엘리트층에 속했던 한 귀순자는 그의 친구들이 출산을 위해 그 病院에 입원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는 그 病院이 정식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였다.

平壤의 醫療施設이 우수하다고 北韓政府가 과장 宣傳을 하고 있기는 하나 수도로서 그곳은 그래도 다른 都市에 비해 훨씬 좋은 醫療施設을 갖추고 있다.

北韓에서 醫療行爲는 개인위주가 아닌 집단위주로 실시된다. 의사들은 환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병세를 계속 진찰하지 않는다. 의료의 주목적은 病을 治療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환자들이 作業하기에 必要한 健康狀態만 유지시키는 것 뿐이었다. 만성질환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治療는 적절치 못하다. 病院에 입원하는 것은 몹시 불편하다고 한다. 병원의 식사는 아주 빈약하며 어떤 때는 썩은 음식이 나온다. 환자들은 통상적으로 외래 면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병실을 떠날 수 없다. 한국계 日本人 訪問者들의 報告에 의하면 환자들이 그들 병실 清掃를 자신들이 한다고 하였다.

한 日本 訪問客의 말에 의하면 40세 가량된 한 北韓 勞動者가 工場에서 왼쪽 팔을 약간 다쳤는데, 그 상처는 깊이가 약 1cm이고 길이가 3인치 정도 되었다. 의사는 이 상처를 보고 단순한 찰과상이며 2주일정도면 치유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불행하게도 그 상처가 악화되었으나 의

사는 계속 治療를 해주지 않아 그가 다시 病院에 갔을 때는 그의 팔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증세가 惡化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日本 訪問客은 北韓의 형편없는 醫療行爲를 비난하였다.

한국계 일본인 訪問者들에 의하면 治療는 대략 2 단계로 分類되어 있다. 患者들이 病院에 가면 그들이 발급받은 진찰권을 提示하여야 한다. 진찰권은 푸른색과 빨강색의 두 種類가 있는데 빨강색 진찰권은 黨員用이고, 파랑색은 일반용이다. 빨강색 진찰권 소지자는 통상 먼저 진찰을 받게되며 진찰 자체도 아주 세밀하고 治療藥도 좋은 것을 받게된다. 한 한국계 일본인은 각혈로 病院에 실려간 51세의 한 푸른색 진찰권을 소지한 勞動者가 들것에 실린채 병원 마루에 두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동안 의사들은 빨강색 진찰권 소유자를 治療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가 받은 인상은 빨강색 진찰권 所有者들은 모두가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治療는 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北韓을 떠난 한 귀순자에 의하면 勞動者는 입원기간중 하루 20~40%의 賃금이 삭감된다고 한다. 처방약은 너무 비싸고 效力도 없기 때문에 외제약을 去來하는 암시장이 있을 정도다. 일본 거주 韓國人들이 北韓을 訪問하거나 往來할 때면 으레히 北韓 住民들은 그들에게 약을 갖고 오도록 要請한다.

日本人 企業家들은 그들의 안내원이나 호텔 雇傭員들로

부터 약을 보내달라는 청을 받는다.

美國에 있는 學術資料에 의하면 北韓 住民들의 주요 死亡원인은 암 (50%), 심장병, 고혈압이다. 이 資料에 의하면 北韓 人口의 10%는 결핵 환자이다. 영양실조와 과로가 결핵의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위궤양, 불임, 신경질환, 동상, 치질등에 걸려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전형적으로 과도한 긴장, 중노동, 영양실조에서 發生하는 것이다.

第18章 教 育

- 제 26 조 : (1) 사람은 누구나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教育은 적어도 初等基礎教育의 段階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初等教育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技術教育과 職業教育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高等教育은 능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 (2) 教育은 人格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또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대한 존경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教育은 모든 국가·인종·집단 또는 宗教集團間의 理解,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平和를 지키기 위해 國際聯合의 活動을 촉진시켜야 한다.
- (3) 부모는 자식에게 베풀어지는 教育의 종류선택에 있어서 우선적 權利를 가진다.

北韓憲法 第39條에 “國家는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를 구현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결한 革命家로, 智·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인간으로 키운다.” 同41條는 “國家는 勞動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高等義務教育을 실시한다. 國家는 모든 學生들을 무료로 공

부시킨다.”, 同 42 條는 “國家는 學業을 전문으로 하는 教育體制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教育체제를 발전시켜 유능한 技術者, 專問家들을 키워 낸다.” 同 43 條는 “國家는 모든 學齡前 어린이들에게 대하여 1 年동안 學校前 義務教育을 실시한다. 國家는 모든 學齡前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上的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教育은 모든 사람을 위해 평등하게 베풀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자의 政治的·社會的 階層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 좋은 學校는 平壤과 기타 大都市에 집중되어 있다. 歸順者들에 의하면 엘리트 階層의 學生들이 거의 上級學校에 進學하고 있으며, 그외의 많은 학생들은 高等學校나 大學으로 進學하기 前에 政治的 背景調査에서 탈락되고 있다. 학생들은 外國人들을 排斥하도록 教育받고 있으며 教育課程은 金日成의 著書와 이데올로기에 集中하고 있다.

北韓은 文盲을 퇴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教育機關의 광범위한 普及結果로, 教育體制의 기반인 7 年 義務教育制度 때문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高等中學校-일차적으로 職業訓練學校-에 소정의 입학요건을 갖추어야 進學할 수 있다. 高等中學校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2 년간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소속 직장의 추천에 의거 158 개의 특수 학교나 256 개의 大學이나 專門學校에 進學할

수 있다.

1. 作業場의 教育體制

1979年 金日成은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라는 짧은 論文에서 北韓이 학교 시설이나 교육보조자료 및 교원들의 資質面에서 아직 미흡하다고 自認하였다. 北韓 訪問客들이 학생들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平壤에 있는 學校들조차 오전수업 또는 오후수업만 한다고 하였다. 訪問客들이 교과 진행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학생들간의 교우관계는 전혀 무시되고 있었고 그대신 講義와 暗記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外國 訪問客이 학교수업을 참관하여 학생들을 만났는데, 北韓 學生들은 自發性과 個人意見의 개진 및 교우간의 對話등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다. 平壤에 있는 학교 교실에는 교육목적을 위한 資料展示나 先生들 자신이 준비한 資料등은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더구나 平壤을 벗어난 學校들의 사정은 형편이 없다.

男學生들은 통상적으로 女學生들보다 더 나은 수준의 教育을 받는다. 음악, 미술, 문화행사 및 체육등에 한해서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약간 있다. 다른 과목에 있어서 처음 몇년동안은 남녀학생들이 분리되어 教育을 받는다. 남녀학생들은 공히 산수, 국어, 기초외국어, 김일성 사상, 사회주의 과업달성, 전쟁의 필요성들에 대한 기

초 과목을 공부한다. 여학생들이 家事나 기계장비와 관련 되는 기술을 배우는데 남학생들은 科學, 管理, 고등외국어, 哲學 및 國際問題 등을 배운다. 平壤에 있는 中·高等學校 또는 專門學校나 大學校에서는 대부분이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있다.

북송교포 자녀들은 특히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번은 어떤 젊은 북송교포가 그의 大學 入學을 허락하지 않은 위원회의 불공정한 결정에 대한 불만을 金日成에게 직접 편지로 전달했다. 그는 입학원서가 위원회에 의해 거절당한 이유가 黨과의 관계결여 및 그의 가족이 위원회에 財政的 獻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항의때문에 그는 反革命分子로 몰려 체포된 후 실종되었다. 북송 교포들은 그의 행방을 알기 위해 온갖 努力을 다 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아마도 強制勞動 收容所에 갇혀 있거나 산골 감옥에서 처형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教育課程과 入學資格은 勞動黨에 의해 철저히 통제받고 있다. 金日成 숭배에 대한 教育은 교과내용으로나 시간 배당으로 보아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外國語 科目 내용은 金日成 思想과 그의 傳記를 번역한 것이다. 한 學校의 교과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國土에 매장되어 있는 모든 金과 鐵鑛은 金日成의 선물이다”, 그리고 “한글은 金日成과 黨이 창안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일학년 사회교과서 과목 내용을 보면 “金日成 元首”, “金日成 元首께 감사합니다”, 및 “아버지 金日成 元首” 등으로 되어 있고 金日成의 이름이 각 페이지에 한번씩은 나온다. 공식학과 이외에 모든 북한 주민들은 평생을 통해 金日成의 政治思想을 배우게 되어 있다. 저녁 학습은 義務的이며 주로 政治學習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歸順者들의 말에 의하면 勞動黨員 候補들은 특수 학교에서 토요일에도 공부하며 다른 학교에 비해 수업 시간이 길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學習計劃과 教科課程을 이탈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2. 敵愾心 鼓吹

教科課程의 대부분은 戰爭意識에 割愛되고 있다. 교재들은 反美, 反南韓, 反資本主義 理念등으로 꽂차 있다. 예를 들어, 高等學校 數學教科書에 나오는 問題를 보면 :

“戰爭準備를 위해 양키 帝國主義 강도들은 1953년 南韓國民의 税金에서 4,500 억불을 강탈하였다. 1963 년의 税金總額은 7,900 억불이였고 1965 년은 8,500 억불 이였다. 1953 년에 비해 1963 년과 1965 년의 税金 增加率은 얼마인가?”

3 학년 音樂教科書 노래가사에는 : “양키놈들 朝鮮에서 물러나라” 고 되어있고 高等學校 地理教科書에는 ;

“양키 帝國主義 놈들은 南韓에 그들 國內에서 팔 수 없는 연료를 강매하고 있다……”

北韓教材에 나와있는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 즉 “지주놈들” “적을 몽둥이로 패 죽여라”, “資本主義 개새끼들을 찢라 죽여라” 등과 같은 배타적이고 모욕적이며 도전적인 언사는 勞動黨의 教育論理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러한 黨의 教育論理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한 教材에 잘 묘사되고 있다. 즉 “어떤 이야기를 성공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가장 좋은 方法은 자기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청취자에게 과거 우리사회를 統治하였던 日本帝國主義와 지주놈들에 대한 미움과 敵愾心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원문에도 “우리가 적들에 대하여 표현할 때는 ‘美國 강패 놈들’, ‘美國놈들 대가리’ 등과 같은 말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판에 박힌 적에 대한 표현은 많은 北韓住民들을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그들이 美國人과 南韓人들을 무서워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 여자귀순자는 그녀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처음 몇달동안 美軍들에게 강간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굶주리고 헐벗은 南韓住民들의 행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안에 숨어 살았다고 하였다. 南韓에 亡命을 要請한 또 다른 귀순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곳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자살을 하

겠다고 한 일이 있다. 平壤을 訪問하였던 한국계 美國人
들도 그들이 北韓 住民들을 만날때 마다 몹시 겁을 내
더라고 하였다.

第19章 文 化

제 27 조 : (1)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社會의 文化生活에 參加하고 藝術을 감상하고, 科學의 進歩와 그 혜택을 누릴 權利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製作한 科學的, 文化的 또는 藝術的 作品中서 생기는 유형, 무형의 利益을 보호받을 權利를 가진다.

北韓文化의 독특한 측면은 藝術과 科學的 創作을 모두가 金日成, 金正日 또는 그들의 영감과 지도의 덕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文學作品은 金日成 父子, 政府, 黨 또는 地方藝術 團體의 이름으로 出品된다.

아무도 文學作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간할 수 없다.

北韓憲法 49 조는 著作權의 自律性에 대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 원칙에 기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金日成의 社會主義 理念 아래서는 모든 個人主義는 金日成 자신이나 그의 아들 이외에는 비도덕적이며 모험적이고, 부르조아적 도덕은 부도덕과 퇴폐를 조장한다고 한다.

北韓憲法 제 35 조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에서는 전체 人民이 다 공부하며 社會主義的 民族文化가 전면적으

로 개화 발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36 조는 “文化革命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勤勞者들을 自然과 社會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文化技術 水準을 가진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者로 만든다”고 되어있고 동 37 조는 “國家는 社會主義的 民族文化 建設에서 帝國主義의 文化的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民族文化遺産을 보호하고 그것을 社會主義 現實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45 조는 “國家는 民族的 形式에 社會主義的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革命的인 文學藝術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동 60 조는 “國家는 창의 고안자와 發明家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著作權과 發明權은 법적으로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金日成과 金正日에 관한 방대한 문학작품은 “4.15 창작단”이라는 유명 著作者들에 의해 제작된다. 이 團體에 관한 情報은 전문학자들과 귀순자들에 의해 確認되었다. 그 단체는 “金日成의 文學作品” 또는 “집체창작”을 집필하거나 수정한다. 勞動黨의 「歷史·理論 研究所」는 金日成 일가의 역사를 집필하고 개인 우상화를 발전시키며 金日成 父子의 학설을 발전 보완하는 責任이 있다. 그 研究所에 勤務하는 작가들은 또한 金日成의 창작으로 알려진 文學作品과 戲曲을 만들어낸다. 예를들어, “피바다”, “병사의 운명”, “꽃파는 처녀”, “안중근 이또 히로부미를 쏘다.” 등은 이곳에서 제작된 것이다.

유령작가들로 구성된 이 단체에는 작가, 작곡가 및 극작가들이 포함되고 있다. 현재 蘇聯에 망명하고 있는 임은이라는 전 노동당 간부에 의하면 이 단체에는 백인준, 전세봉, 이정순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政府와 黨의 音樂과 文學作品은 익명의 우수한 藝術家들이 제작한다. 임은의 말에 의하면 藝術作品은 발간되기 전에 정무원 산하 문화예술부와 朝鮮勞動黨(특히 선전선동부와 문화예술부)에 의해 세밀히 검토된다.

金正日이 대부분의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편집·승인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文學作品이 承認되면 지방의 文學藝術機關을 관장하고 있는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으로 보낸다. 金正日和 그의 유령 著作家들은 이 모든 기관에서 제작된 文學, 音樂, 및 藝術作品의 논조를 설정하고 內容을 決定한다.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예술가들은 작품을 대량 生産한다. 1985년 平壤放送에 의하면

“수백만의 人民들이 현재 20,000여개의 文學藝術 團體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 13만여건에 달하는 文學藝術 作品이 生産되었으며 29,000여의 文學藝術作品이 勞動黨 창설 40주년 기념행사에 사용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추측컨대 이 예술작품의 대부분은 제재의 모험을 피하기 위해 한결같은 어조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日本에 살고 있는 北韓 사람들에 의하면 이러한 作品의 극소수 부분이라도 黨의 지침에 어긋나게 제작되

기만 하면 추방되고 懲役刑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北韓은 새사회주의 文化創造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거의 예외없이 단체 고전무용이나 고전음악은 반동행위로 간주되었다. 社會主義 勞動者들은 지도체제를 崇拜하고 革命意識을 고취하며 生産性を 向上시킴과 동시에 社會主義, 黨 및 金日成에 대한 위대한 忠誠心を 발휘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아침의 예가 金正日의 一生을 담은 映画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金日成 王國에서는 “大衆 教育을 위해 가장 效果있는 매체는 영화이다.” 金日成 父子의 傳記를 묘사한 記錄映画는 새 共產主義者를 創造하기 위한 주 教育資料로 活用되고 있다. 1987년 2월 16일 기록영화 “만대에 길이 빛나리”라는 題目아래 조선중앙통신은 새로 나온 金正日의 傳記·記錄映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金正日 동지의 指導力과 崇高한 미덕을 담은 만대에 길이 빛나는 記錄映画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여러 劇場에서 상영되고 있다. 경애하는 金正日 指導者동지가 社會主義建設 戰線現場에서 지시하는 장면을 기록한 기록영화는 1984년 社會主義建設을 勝利로 이끈 그의 賢明한 指導力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해 金正日 동지는 위대한 지도자 金日成 首領의 崇高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불굴의 업적을 방방곡

곡에 남겼다.”

“金正日 동지의 정력적인 불굴의 업적을 담은 기록영화는 크나큰 매력이 담고있다.”

金日成과 金正日是 藝術作品을 다른 형태의 生産品과 同一視하고 있다. 年間 經濟計劃은 藝術作品 완성을 위한 할당량을 明示하고 있다. 작가들은 다른 勞動者처럼 그들의 할당량을 초과 제작하였을 때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고 완전하고 시대에 맞는 作品製作에 실패하면 징계를 받는다. 北韓에는 個人財産이나 藝術品에 대한 權利가 許容되지 않기 때문에 特許權, 著作權, 또는 特許權 사용료 등이 있을 수 없다.

第20章 國際秩序에 대한 權利

제 28 조 : 사람은 누구나 이 宣言에 提示된 權利와 自由가
완전하게 實現될 수 있는 社會的, 國際的 秩序를
누릴 權利를 가진다.

이 研究報告書의 대부분은 北韓 内部의 人權問題를 다
루었으나 이 상에서는 특히 世界人權宣言 제 28 조의 규정
에 근거를 두어 北韓이 해외에서 자행한 민간인 殺人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와 國際人權法과 人道主義法의 위
반 事例等を 다루었다.

平壤 외곽지대에 外國軍人을 위한 군사훈련장이 있다.
그중 하나를 구라과 企業人이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골에 있는 北韓과의 합영공사 現場에서 平壤으로 돌아
가는 길이었는데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었다.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여기 저기 헤매다가 中東과 기
타 地域에서 온 外國軍人이 訓練을 받는 訓練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現場을 目擊하자마자 잽
싸게 빠져 나왔다.

南韓의 소식통들은 1980년대까지 北韓이 10개의 遊擊
訓練場을 두고 있었고 外國 訓練兵만도 35개국 5,000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 訓練은 6~18개월 課程이 있고 內容은 납치, 암살, 매복, 처격, 독물사용, 테러, 선전, 및 선동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극적인 테러공격은 1983년 10월 9일 버마 랑군의 폭탄테러사건이다. 그때 南韓의 전두환 대통령과 각료 기타 관료들이 랑군 國立墓地의 記念行事에 참석하였는데, 폭탄이 터지면서 4명의 각료를 包含 21명이 死亡하였고 묘소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버마 警察이 사용된 폭약을 분석한 결과와 逮捕된 테러범들의 自白에 의해 北韓의 지령에 의거 전두환 대통령을 暗殺 試圖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事件으로 버마 당국은 北韓軍人 몇명을 犯人으로 起訴하였다. 현재 美國에 살고 있는 한 北韓 귀순자에 의하면 金正日이 個人的으로 그자에게 그 공작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했다고 한다. 서방 소식통들도 金正日이 모든 테러 活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北韓은 南韓과 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경고하고 있다. 北韓에서 南韓으로 귀순한 사람들은 北韓政府로 부터 여러가지 협박을 받고 있다. 덴마크 주재 北韓大使는 1983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의원연맹총회에 덴마크 의원들이 參加못하게 서울은 위험한 곳이라면서 여러번 警告한 사실이 있다.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전 北韓은 韓國에 폭동과 소요

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번 警告를 한 바있다. 게임 개최 직전에 김포공항의 쓰레기통에서 폭탄이 폭발하여 십수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事件을 北韓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없었고 日本 과격파 團體들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풍문이 돌기도 하였다.

그러나 韓國과 버마 搜查機關은 김포에서 사용되었던 폭발물이 버마랑군에서 사용하였던 것과 대구에서 발생하였던 폭탄사건에 사용되었던 폭탄과 그 内容物이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 폭약은 蘇聯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北韓 화기 부대에서 一般的으로 사용되고 있다. 北韓 매체는 1988년에 개최되었던 서울 올림픽 期間 동안 暴力과 妨害工作의 可能性을 警告하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에 發生한 事故는 1987년 11월 바그다드에 서 서울로 가는 南韓의 大韓航空 소속 여객기가 태국 방콕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하기전에 공중 暴發한 事件이다.

暴發의 원인은 아직 明確치 않으나, 유엔安保理事會에서 있었던 論議와 그 여객기가 바레린을 떠나기 전에 北韓人으로 推定되는 男女 한쌍이 여객기에 폭탄을 裝置한 것 같다는 물적 뒷받침이 있었다.

또한 北韓 外交官들은 그들의 신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嫌疑를 받고있다. 1970년대 중반 벨기움, 덴마크, 스웨덴을 包含한 유럽國家들은 北韓외교관들이 외교관 신분을 利用, 마약을 밀매한다고 비난하였다.

第21章 權利의 制限

제 29 조 :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人格의 자유스럽고 완전한 발전을 가능케 해주는 사회에 대해 義務를 진다.

(2) 사람은 누구나 權利와 自由의 행사에 있어서 다음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 제한이란, 주로 남의 權利와 自由에 대한 합당한 認定과 존경을 보장하고, 또 民主社會의 道德, 公共秩序, 一般福祉에 요청되는 공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마련된 法律上 制限을 말한다.

(3) 이러한 權利와 自由는 어떤 경우에도 國際聯合의 목적 및 원칙과 상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 이 선언의 어떤 規定도 특정 國家, 集團 또는 個人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權利 및 自由 中 어느 하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權利를 넘지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北韓 憲法 49 條는 “공민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

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다.

世界人權宣言 第 29 條와 30 條에 규정된 權利의 제한은 인권 선언의 나머지 조항에 규정된 權利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 研究에서 토론된 권리의 침해들은 “道德의 正當한 요구” “民主社會의 公共秩序나 一般福祉”라는 말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北韓 당국이 이 제한 규정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침해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하다. 더 나아가 北韓은 “民主社會”로 간주될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人權宣言 21 條의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라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人權宣言 29 條와 30 條는 인권선언의 제한 규정을 더 자세히 정의한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第 4 條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본 규약 제 4 조는 한 국가가 개인의 일정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즉 일정한 권리는 어떤 비상사태하에서도 무시될 수 없으며, 絶對的 不可侵인 이 권리는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 혹은 사회적 배경등에 의한 차별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 恣意的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고문·학대·비인도적 처우와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상태·강제노동으로 부터의 자유, 계약된 義務 不履行으로 인한 노력 종사나 그로 인한 投獄

에 응하지 않을 權利, 犯行에 대한 처벌의 소급 적용에 응하지 않을 권리, 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權利, 思想·意識 및 宗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등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北韓은 이러한 많은 權利를 蹂躪하고 있다.

동 4 조는 또한 국가 운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의 발생 및 기타 필요에 의거 非常 事態를 공식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일정한 人權의 制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한 일도 없고 동규약 4 조에 의거 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 일도 없다. 따라서, 世界人權 宣言 第 29 條와 30 條는 北韓의 人權 蹂躪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